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35-200034-14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발 간 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선거 관리 주무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첫발을 내디딘 이후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 취지에 따라 설치되어 2018년 12월 7일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나타났던 선거구 획정지연, 획정위원의 독립성 미흡 등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원회 출범 직후부터 국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등 준비작업을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획정기준 확정 지연이 이번에도 재현되었고, 이에 더해 비례대표제 변경 골자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장기간 계류됨으로써 획정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률안이 선거구획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공포된 후에도 국회가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졌고, 마침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고 선거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2020년 2월 28일 독자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자정을 넘기는 등 수차례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각 선거구에 대한 정밀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2020년 3월 3일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약 15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전국 229개 구·시·군의 지리, 교통, 역사 등 기초자료를 면밀히 조사·작성하였고, 인구수, 지리정보 등이 반영된 획정안을 실시간으로 처리·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부터 청취한 의견 및 추천 건의 민원사항을 분석·검토하여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선거구획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재제출 요구로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작성·제출하여 2020년 3월 7일에야 비로소 선거구가 확정되었지만,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함으로써 장기간 지연된 정치권의 획정기준 합의를 이끌어 낸 점과 획정위원이 정치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활동하여 독립성을 제고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도 선거구획정 지연 관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기한을 훨씬 넘겨 선거일을 불과 39일을 앞두고 선거구가 확정된 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선거구획정의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백서가 선거구획정 연구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다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업무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정당, 국회의원,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및 사무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김 세 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백서





화보

사진으로 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1. 획정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2018. 1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획정위원회 출범
(2018. 12. 7. 획정위원회 청사)

김세환 위원 확정위원장에 호선(2018. 12. 7.)



우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2. 신속 · 정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사전준비



전임 획정위 직원의 경험 전수 등 업무연찬 (2019. 1. 16.)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2019. 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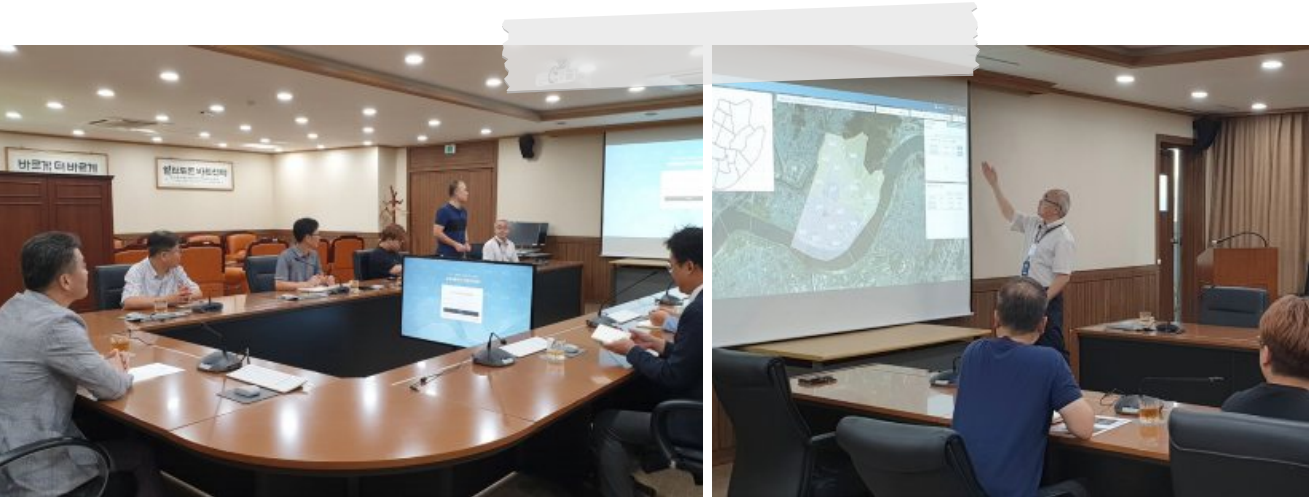


행정안전부의 인구·행정구역 현황 보고 (2019. 1. 21.)



행정안전부의 인구·행정구역 현황 보고 청취 (2019. 1. 21.)

2. 신속 · 정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사전준비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개발 시연 (2019. 8. 29.)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위원회의 보고 (2019. 9. 20.)



윤광일 위원 국회방송 인터뷰(2020. 1. 23.)

“시간에 쫓겨서 졸속으로 경계를 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늦었지만,
국회가 기준을 빨리 확정해줘야 선거구획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송광근 관리팀장 한국선거방송 인터뷰 (2019. 3. 29.)

—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19. 1. 31. 국회본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여망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지리학회 전문가 초청 의견청취(2019. 3. 11.)



지역 현지 의견청취/강원
(2019. 10. 14. 춘천세종호텔 세종홀)



지역 현지 의견청취/ 충남 (2019. 10. 16.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3.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지역 현지 의견청취/ 전남
(2019. 10. 21.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



지역 현지 의견청취/전북 (2019. 10. 23.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



지역 현지 의견청취/경북
(2019. 10. 25.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



지역 현지 의견청취/경남
(2019. 10. 28. 경남도청 본관 도정회의실)



지역 현지 의견청취/충북 (2019. 10. 30.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

3.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지역 주민 집단민원/경북(2020. 2. 3.)



지역 주민 집단민원/인천 서구 (2020. 3. 5.)



지역 주민 집단민원/강원(2020. 3. 5.)



강원 지역 주민 건의서 접수(2020. 3. 5.)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의견청취(2020. 1. 10.)



4.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구획정안 마련



선거가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현재까지도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는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회의 참석
(2020. 2. 13.)



여야 원내대표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회의 참석
(2020. 2. 21.)



국회 선거구획정기준 미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2020. 2. 28.)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선거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자체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 논의
 (2020. 2. 29.)

4.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구획정안 마련



자체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 논의(2020. 3. 1.)



자체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 논의(2020. 3. 3.)



자체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
(2020. 3. 3.)



자체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 채택 후 언론 브리핑
(2020. 3. 3.)



언론 취재 열기(2020. 3. 3.)

4.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구획정안 마련



선거구획정기준을 국회에서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 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상황에 직면해
우리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체 기준에 따른 선거구획정안을 설명하는 위원장(2020. 3. 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2020. 3. 4.)

4. 국민이 신뢰하는 선거구획정안 마련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에 따른 논의
(2020.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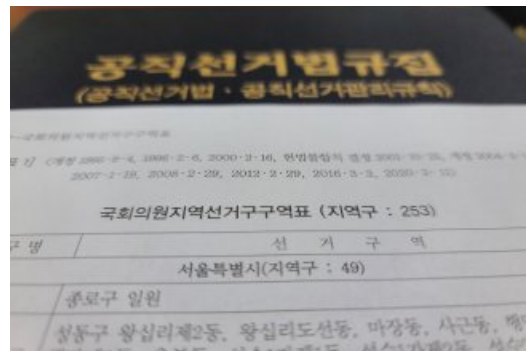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논의
(2020. 3. 5.)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2020. 3. 6.)



선거구법률안 본회의 통과(2020. 3. 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2020. 3. 11.)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461일' 간의 여정

2018

2018.9.15.

- ▶ 획정위원회 사무국 설치(1단계)

2018.12.7.(제1차 위원회의)

- ▶ 획정위원회 출범
- ▶ 획정위원장(김세환)호선



2018.11.30.

- ▶ 획정위원회 위원 위촉



2018.12.10.

- ▶ 정개특위에 「선거구제 개편안 확정 촉구」

2019

2019.1.31.(제5차 위원회의)

- ▶ 선거구획정안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9.1.1.

- ▶ 획정위원회 사무국 설치(2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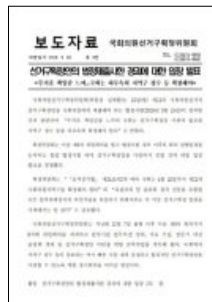
2019.2.25.(제7차 위원회의)

- ▶ 국회의지역구 정수 등 미통보에 대한 대책 논의
- ▶ 입장발표



2019.3.18.

- ▶ 선거구획정안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9.4.30.

-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정개특위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 (지역구 225, 비례 75)

2019.4월부터

- ▶ 구·시·군별 기초자료 작성
- ▶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개발



2019.12.27.

- ▶ 공식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지역구 253, 비례 47)



2019.10.14.~30.

- ▶ 지역의견청취[7개도(道)지역]



2019.12.30.

- ▶ 행안위에 「시·도별정수 확정 및 위원선정재요청」

2019.12.31.

- ▶ 국회의장에 「시·도별정수 등 확정 요청」



2020

2020.1.10.(제17차 위원회의)

-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견 청취



2020.2.28.(제21차 위원회의)

- ▶ 자체 선거구획정안마련 결정
- ▶ 국회의획정기준 미통보에 따른 입장 발표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461일' 간의 여정

2020.2.29.~3.2.(제22~24차 위원회의)

- ▶ 자체선거구획정기준 마련
- ▶ 선거구획정세부방안 논의



2020.3.4.

- ▶ 행안위, 「선거구획정안재획정 요구」



2020.3.4.

- ▶ 국회의장, 정치권 합의에 따른 획정기준 송부



2020.3.11.

-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법률17070호) 공포

2020.3.3.(제25차 위원회의)

- ▶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제출



2020.3.4.(제26차 위원회의)

- ▶ 재제출 요구에 따른 대책 논의



2020.3.6.(제28차 위원회의)

- ▶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제출



2020.3.7.

- ▶ 국회본회의 선거구법률안 통과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목 차

| 발 간 사

| 사진으로 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

| 일람표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한 '461일' 간의 여정)

제 1 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개관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이해	36
	1. 선거구획정의 개념	36
	2. 선거구획정 기구	37
	3. 선거구획정기준	39
	4. 선거구획정 절차	39
제2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주요 활동 경과	41
제3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주요 결과	47

제 2 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제1절	획정위원회 활동 개요	50
제2절	획정위원회 구성·운영	51
	1. 위원 구성	51
	2. 획정위원회 운영	53
제3절	사무국 구성·운영	56
	1. 사무국 구성	56
	2. 사무국 직무 및 운영	57

제 3 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준비과정

제1절	선거구획정 준비	62
	1. 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	62
	2. 사무국의 실무적 준비과정	64

제2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70
1. 공청회 개최	70
2. 지역 현지 의견청취	73
3. 정당 의견청취	76
4. 청원·건의서 등 민원 수렴	78

제4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착수와 결과

제1절 선거구획정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	82
1. 선거구획정기준의 필요성	82
2. 선거구획정기준의 결정 지연	83
3.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논의	84
4.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미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85
제2절 선거구획정안 제출	87
1. 선거구획정기준	87
2. 선거구획정안 작성·제출	89
제3절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99
1. 선거구획정기준	99
2. 선거구획정안 작성·제출	100
3. 지역선거구 법률안 심사	104
4.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경과조치	105

제5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제1절 내부평가	108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의의	108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문제점	109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제도 개선방안	112
제2절 외부평가(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구분상 교수)	114

|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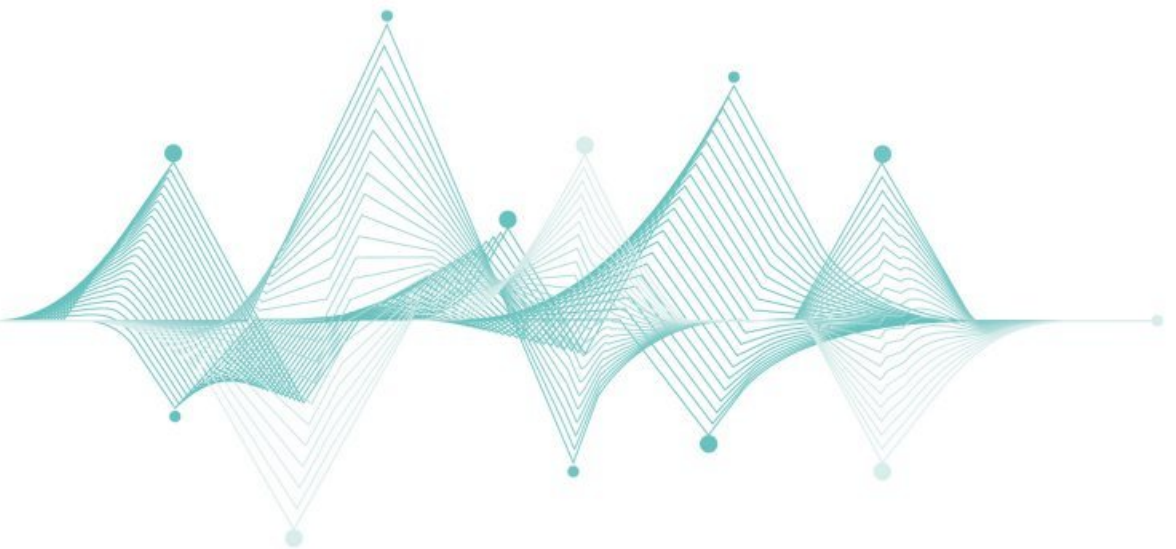
부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42
부록 2. 구·시·군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샘플	206
부록 3.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소개	220
부록 4.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228
부록 5.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296
부록 6. 헌법재판소 결정문(2014. 10. 30. 선고)	316
부록 7.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기준	342



선거구획정
백서
7

이 책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약기함

• 공직선거법	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운영규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위원회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획정)위원
•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개특위
•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제 1 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개관

-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이해
- 제2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주요 활동 경과
- 제3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주요 결과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제1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활동 개관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에 대한 이해

1. 선거구획정의 개념

선거구획정은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인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은 전국적인 인구조사 후 의회의석을 정치적 단위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재분배하는 의석재분배와 재분배된 의석수에 따라 그 단위지역 안에서 새로운 선거구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¹⁾

오늘날 민주적 선거제도에서 선거구획정은 선거를 통한 유권자 대표성 충족의 출발점이자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선거구획정을 통해 한 표의 가치를 동등하고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절차적, 내용적 효능감을 제고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²⁾

이렇듯 선거구획정은 단순히 그 구역을 정하는 의미를 넘어 공정한 선거와 평등선거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획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구획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강휘원(2001). 투표의 등가성을 위한 선거구획정의 정치와 기법. 한국정치학회보, 35(2), 89-112

2) 윤종빈(2017).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쟁점과 개선방안, 현대정치연구. 10(2), 131-156

2. 선거구획정 기구

가. 획정위원회

1) 설치 배경

획정위원회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 시 처음 국회에 설치되었으며,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때에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선언적 규정만 있었다.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안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불합리하게 조정되는 일이 빈번하였고, 매년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상하 33⅓%(인구비례 2:1)로 결정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정치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서 선거구획정제도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2015년 6월 9일 획정위원회를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선거관리 주무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법률 제13334호, 2015. 6. 19. 시행)이 개정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획정위원회는 2015년 7월 1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2) 임무 및 권한³⁾

획정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선거구획정 보고서'라 함)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3) 법 제24조제9항 및 제11항 참조

3) 운영기간⁴⁾

확정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4) 위원 구성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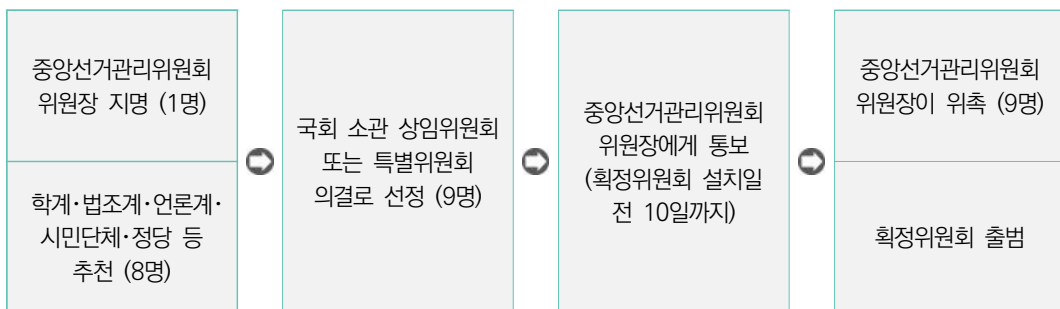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통보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의 당원은 확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위원은 확정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활동하며,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표 1-1〉 위원 위촉 절차



4) 법 제24조제1항 참조

5) 법 제24조 및 규칙 제7조 참조

나. 사무국⁶⁾

사무국은 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도 위원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3. 선거구획정기준

선거구획정기준은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구기준일, 인구범위, 시·도별 의석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 제25조에는 인구기준일과 인구범위(인구비례 2:1),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예외적으로 허용) 등의 획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시·도 관할구역 안의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획정하여야 하므로 시·도별 의석수 등도 획정기준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이 획정기준을 결정할 주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선거구획정 절차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준비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및 지역 현지의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한다.

획정위원회는 실무적 준비과정과 함께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종 안건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다. 특히 선거구획정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위원회의에서는 획정기준을 토대로 한 선거구 조정지역 선정과 선거구 조정방안에 대해 합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획정위원회는 최종 합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작성한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위원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법상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⁷⁾

6) 법 제24조제12항 및 제13항 참조

7) 법 제24조제11항 참조

국회의장은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회부 받은 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한다. 이 경우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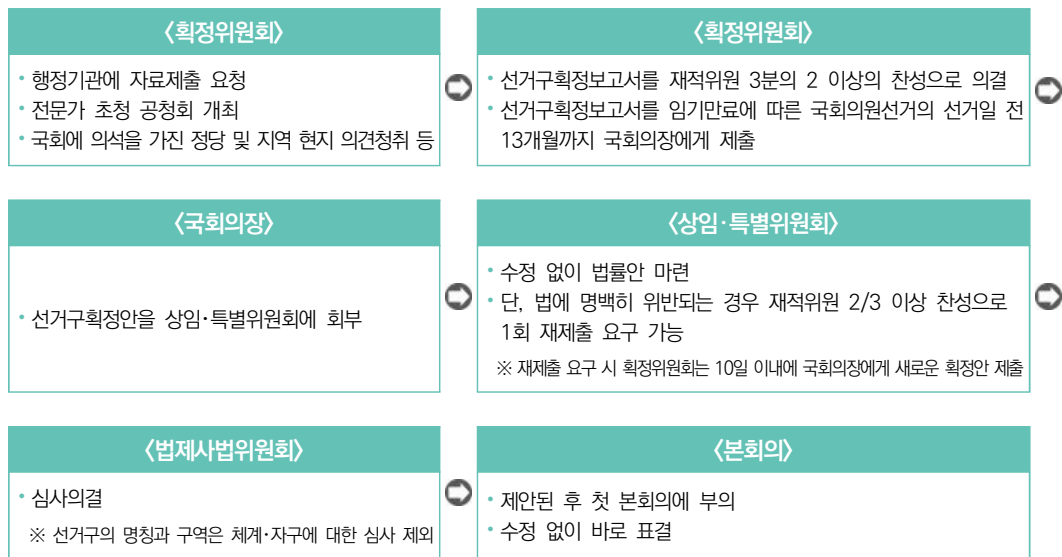
재제출 요구를 받은 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⁹⁾

제안된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 법사위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¹⁰⁾,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 수정 없이 표결한다.¹¹⁾

이후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포함된 선거구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획정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다.¹²⁾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안 마련부터 선거구 개정 법률 시행까지 일련의 선거구획정 절차는 선거일 전 1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¹³⁾

〈표 1-2〉 선거구획정 주요절차



8) 법 제24조의2제3항 참조

9) 법 제24조의2제4항 참조

10) 법 제24조의2제5항 참조

11) 법 제24조의2제6항 참조

12) 법 제24조제1항 참조

13) 법 제24조의2제1항 참조

제2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주요 활동 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018년 11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통보받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그러나 유진숙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여 2018년 12월 5일 해촉하였고,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위촉 대상자를 선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선정해 주지 않아 결국 8명의 획정위원이 활동하였다.

획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2018년 12월 7일 제1차 위원회의에서는 김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지난 선거의 선거구획정 지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개특위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0일 정개특위에 선거구제 개편안의 조속한 확정을 요청하였다.

한편 획정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은 2018년 9월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법제과 직원 12명이 겸임하여 운영되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0명으로 새로이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제3차 위원회의(2019. 1. 14.)에서는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을 감안하여 정개특위에 지역구 정수 등 획정기준을 2019년 2월 15일까지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정하고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제4차 위원회의(2019. 1. 21.)에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지난 선거의 선거구획정 기준일 이후 선거구별 인구·행정구역 변동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5차 위원회의(2019. 1. 31.)에서는 정당과 학계 등의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로 진행하였다.

이렇듯 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지만, 정개특위가 획정기준 등을 2019년 2월 15일까지 확정해 주지 않아 제7차 위원회의(2019. 2. 25.)를 열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획정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결국 획정위원회의 수차례 촉구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 개편 법률안 등의 논의만 계속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기한(2019. 3. 15.)이 경과하게 되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제9차 위원회의(2019. 3. 18.)에서 유권자의 알권리와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구획정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을 통보받는 즉시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30일 지역구 총 정수 225석과 비례대표제 변경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이하 '신속처리안건'이라 함)으로 지정되면서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는 상황이 되었다. 획정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획정위원회는 계류 중인 법률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하였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무국은 국회에서 획정기준이 통보되는 즉시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거구 조정 예상지역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229개 구·시·군의 지리, 교통, 역사, 인접 구·시·군과의 연관성, 선거구 연혁, 인구 변화 추이, 지역개발 사업계획 등을 총망라하여 선거구획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작성하였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 인구수, 지리정보 등을 통합하여 실시간 시각적으로 선거구획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다.

이와 함께 획정위원회는 농산어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7개 도(道)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의견 청취 종료 이후 제14차 위원회의(2019. 11. 22.)에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획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어 예비후보자 등록 및 재외선거 등의 사무가 이미 개시된 후인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역구 총 정수 253석 등으로 수정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제15차 위원회의(2019. 12. 30.)를 개최하여 행안위와 국회의장에게 시·도별 의원정수 등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하는 등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다.

제17차 위원회의(2020. 1. 10.)에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각 정당의 견해를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통해 획정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재요청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및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한 7개 도(道)지역의 의견과 수천 건의 민원사항은 위원회의에 모두 보고하여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참고하였다.

한편 획정기준에 대한 정치권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행안위는 2020년 2월 중순 획정위원회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야 간사 회동에 위원장과 실무자 참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획정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여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선거구획정 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일(2020. 3. 6.)과 국회 본회의 예정 일정(2020. 3. 5.)을 감안하여 획정기준을 반드시 2020년 2월 24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에도 국회는 여전히 획정기준을 정해주지 못하였다.

획정위원회는 2020년 2월 28일 제21차 위원회의를 열고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마지막 날인 2020년 3월 6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선거사무의 정상적인 진행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므로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시·도별 의석수 등 획정기준을 정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획정위원회는 제22차 위원회의(2020. 2. 29.)부터 인구기준¹⁴⁾과 시·도별 의석수¹⁵⁾를 정하는 등 매일 위원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선거구의 정밀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이어나갔다.

자정을 넘기는 등 수차례의 마라톤 회의 끝에 제25차 위원회의(2020. 3. 3.)에서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같은 날 위원장이 선거구획정안 제출 배경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다음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하지만 행안위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된 다음날인 2020년 3월 4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미흡,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내용 미반영 등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선거사상 초유의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라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같은 날 제26차 위원회의(2020. 3. 4.)를 신속히 개최하여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여부 등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제26차 위원회의 도중 국회의장으로부터 인구편차 허용범위,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예외지역, 시·도별 의석수 등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도 뒤늦게 통보받았다.

논의 결과, 획정위원회는 앞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법 제24조의2에 따라 행안위가 요구하면 새로이

14)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14. 10. 30. 선고)를 적용,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한다.

15)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시·별 의석수 대비 서울 -1(49석 → 48석), 세종 +1(1석 → 2석)로 결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앞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의 어느 부분에 명백히 위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줄 것을 행안위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없었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하여 연일 새벽까지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논의자료를 준비하였고, 두 차례의 위원회의에서 선거구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가로 제기된 집단 민원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하는 등 치열한 논의 끝에 제28차 위원회의(2020. 3. 6.)에서 국회의 획정기준을 반영한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

이날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2020년 3월 7일 행안위에서 심사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의결되었고, 같은 날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020년 3월 1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0호)이 공포되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획정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표 1-3〉 선거구획정 주요일지

일 자	주요 내용
2018. 9. 15.	· 사무국 설치(1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12명 겸임
2018. 11. 14.	· 정개특위, 위원 위촉 대상자 통보 ※ 강재호 위촉 대상자의 위촉의사 철회에 따른 1명 재통보(2018. 11. 29.)
2018. 11. 30.	· 획정위원회 위원 위촉(9명) ※ 유진숙 위원 해촉(2018. 12. 5.) : 사의 표명
2018. 12. 7. (제1차 위원회의)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원회 출범 · 위원장 호선 : 김세환 · 운영규정 제정
2018. 12. 10.	· 정개특위에 「선거구제 개편안 확정 촉구」
2019. 1. 1.	· 사무국 설치(2단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0명
2019. 1. 14.	· 정개특위에 「지역구 정수 등 확정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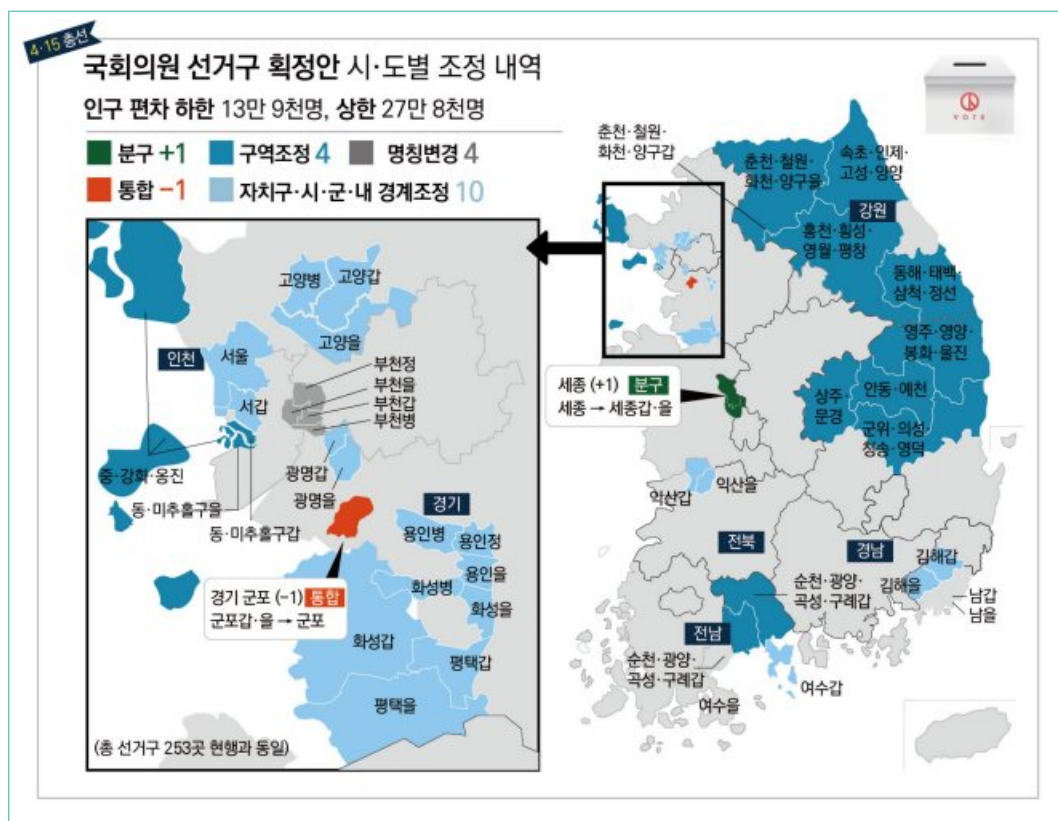
일 자	주요 내용
2019. 1. 21. (제4차 위원회의)	• 행정안전부의 인구·행정구역 현황 보고
2019. 1. 31. (제5차 위원회의)	•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2019. 2. 13.~ 2. 20.	• 선거구획정 관련 현지실사
2019. 2. 25.	• 국회의 지역구 정수 등 미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2019. 3. 11. (제8차 위원회의)	• 전문가 초청 의견청취
2019. 3. 18.	•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2019. 4. ~	• 선거구획정을 위한 구·시·군별 획정 기초자료 수집 •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개발
2019. 4. 30.	•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 ※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2019. 10. 1.	• 행안위에 「위원 선정 요청」
2019. 10. 14. ~ 10. 30.	• 지역 의견청취 [7개 도(道)지역]
2019. 11. 25. ~ 12. 20.	• 선거구획정 관련 현지실사
2019. 12. 27.	• 선거제 개편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64호) 2020. 1. 14. 공포
2019. 12. 30.	• 행안위에 「시·도별 정수 등 확정 및 위원 선정 재요청」
2019. 12. 31.	• 국회의장에 「시·도별 정수 등 확정 요청」
2020. 1. 10. (제17차 위원회의)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의견청취
2020. 2. 13.	• 행안위의 간사 회동 참석 요청 → 위원장·사무국장·관리팀장 참석
2020. 2. 21.	• 행안위의 여야 원내대표 및 행안위 간사 회동 참석 요청 → 위원장·사무국장·관리팀장 참석

일 자	주요 내용
2020. 2.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위의 선거구획정 관련 설명 요청 → 사무국장·관리팀장 참석
2020. 2. 28. (제21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 자체 획정기준 및 선거구획정안 마련 추진 결정 •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미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2020. 2. 29. ~ 3. 2. (제22차 ~ 제24차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획정기준(인구 상·하한수, 시·도별 의석수) 마련 •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020. 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위, 「간사·원내대표 회동 참석 및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안 제출 요청」 → 사무국장·운영팀장 참석
2020. 3. 3. (제25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제출(획정위원회 획정기준 적용) • 위원장,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20. 3.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행안위 전체회의 참석 • 행안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 (3. 5. 09:00까지 제출) •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여부 등 논의(제26차 위원회의) • 국회의장, 「정치권 합의에 따른 선거구획정기준 송부」 (3. 5. 12:00까지 제출) • 획정위원회, 행안위에 「선거구 재획정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 법 제25조제1항에 위반되는 부분 특정 요청 • 획정위원회, 국회의장에 「선거구획정안 제출 지연 통지」 ※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 분석 및 논의 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여 제출요구시한까지 제출할 수 없음을 통지
2020. 3. 5. (제27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세부방안 논의
2020. 3. 6. (제28차 위원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선거구획정안 세부방안 논의 •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제출(국회 획정기준 적용)
2020. 3.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본회의 선거구법률안 통과
2020. 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7070호) 공포

제3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주요 결과¹⁶⁾

2020년 3월 6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서 통보한 획정기준인 인구범위(하한 139,000명, 상한 278,000명), 시 및 읍 일부분할(춘천시, 순천시, 화성시 분담읍), 경계조정¹⁷⁾ 과 구역조정¹⁸⁾ 최소화, 시·도별 의석수 증감(세종 1석 증가, 경기 1석 감소) 등을 적용하였다.

획정 결과, 세종 분구, 경기 군포시 통합, 인천·강원·전남·경북 구역조정, 부산·인천·경기·전북·전남·경남에서 총 10개 시·군 경계조정, 경기 부천시의 4개 선거구 명칭변경이 있었다.



16) 세부적인 획정결과와 제4장 제3절 선거구획정안 제제출 참조

17) 경계조정이란 하나의 자치구·시·군안에서 읍·면·동 단위로 선거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① A 자치구·시·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가 상한인구를 초과하여 읍·면·동단위로 갑선거구와 을선거구로 분구 조정하거나, ② 상한인구를 초과한 갑선거구 일부 읍·면·동을 인접한 을선거구의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거나, ③ 갑선거구와 을선거구가 모두 상한인구를 초과하여 읍·면·동단위로 갑선거구·을선거구 및 병선거구로 분구하는 등의 조정을 의미한다.

18) 구역조정이란 시·도안에서 자치구·시·군 단위로 선거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① A자치구·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선거구가 하한인구에 미달한 경우 인접한 B자치구·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선거구와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하거나, ② A자치구·시·군과 B자치구·시·군을 합하여 하나의 선거구로 된 AB선거구가 상한인구수를 초과한 경우 이를 A선거구와 B선거구로 분구하는 등의 조정을 의미한다.

제2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 제1절 획정위원회 활동 개요
- 제2절 획정위원회 구성·운영
- 제3절 사무국 구성·운영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제2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제1절 획정위원회 활동 개요

획정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선거관리 주무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그 취지에 따라 2018년 12월 7일 출범하였다.

법상 선거일 전 18개월인 2018년 10월 15일부터 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정개특위에서 설치·운영 개시일 후에 위원 위촉 대상자를 통보하여 획정위원회의 출범일이 법정 개시일보다 늦어졌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선거일 전 13개월(2019. 3. 15.)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소임을 부여받아 활동하였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선거구가 확정 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 2020년 3월 11일까지 운영되어 1년 이상의 최장 활동기간을 기록하였다.

〈표 2-1〉 역대 획정위원회 활동 현황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선 거 일	1996. 4. 11.	2000. 4. 3.	2004. 4. 15.	2008. 4. 9.	2012. 4. 11.	2016. 4. 13.	2020. 4. 15.
활동기간	1996. 3. 3. ~ 4. 10. (39일)	2000. 1. 22. ~ 1. 28. (7일)	2003. 5. 12. ~ 2004. 2. 27. (292일)	2008. 1. 18. ~ 2. 15. (29일)	2011. 9. 6. ~ 11. 25. (81일)	2015. 7. 15. ~ 2016. 3. 3. (233일)	2018. 12. 7. ~ 2020. 3. 11. (461일)
소 속	국회	국회	국회	국회	국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제2절 확정위원회 구성·운영

1. 위원 구성

지난 선거의 확정위원은 여·야가 자당과 같은 성향의 위원을 각자 동수(同數)로 선정하여 확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독립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의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위원 선정 의결권을 기존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의견¹⁹⁾을 2016년 6월 23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8년 10월 4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확정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위원 구성방식 등에 대한 입법개선을 국회에 재요청하였지만, 법이 개정되지 않아 종전 위원 구성방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였다.

가. 위원 위촉

정개특위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2018년 11월 14일자로 통보하였고, 이후 통보한 사람 중 1명(강재호)이 위촉 의사를 철회하여 2018년 11월 29일자로 위촉 대상자(한표환)를 교체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1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최종 통보된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이후 위원 1명(유진숙)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2018년 12월 5일 해촉하였다.

확정위원회는 국회에 결원된 위원 1명을 조속히 선정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위촉 대상자를 계속 통보해 주지 않아 확정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까지 8명의 위원으로 운영되었다.

19)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

나. 위원장 호선

획정위원회는 2018년 12월 7일 제1차 위원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김세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하였다.



▲ 김세환 위원장 호선(2018. 12. 7.)

다.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2018년 11월 30일부터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된 2020년 3월 11일까지였다.

〈표 2-2〉 위원 명단

(성명 가나다순)

구분	성명	경력	위촉일 (해촉일)	비고
위원장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2018. 1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지명
위원	손창열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2018. 11. 30.	국회 선정
위원	유진숙	배재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018. 11. 30. (2018. 12. 5.)	
위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2018. 11. 30.	
위원	이덕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8. 11. 30.	
위원	조숙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2018. 11. 30.	
위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2018. 11. 30.	
위원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8. 11. 30.	
위원	한표환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산학협력중점교수	2018. 11. 30.	

〈표 2-3〉 역대 획정위원회 위원 정·현원 현황

(현원/정원, 단위: 명)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7/7	7/7	9/9	11/11	11/11	9/9	8/9

2. 확정위원회 운영

가. 내부규정 제정

법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확정위원회에 적용하기 위한 운영규정을 제1차 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시행하였다.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 표결권, 위원회의 비공개 원칙, 공청회 등 의견수렴, 윤리강령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표 2-4〉 운영규정 주요 내용

- 위원회의 등 비공개 :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 가능함.
- 공청회 등 의견수렴 : 공청회나 관계 전문가 자문 및 연구 의뢰, 설문조사 실시 등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행할 수 있음.
- 윤리강령 : 정치적 중립, 청렴·공정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직무상 비밀 유지

나. 위원회의 운영²⁰⁾

1) 회의소집

위원회의는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실제 매 위원회의 산회 전에 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다음 위원회의 일정을 정하였다. 위원회의는 회의개최일 3~4일 전까지 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통지하고, 위원 개인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하였다.

다만 선거구획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21차 위원회의부터는 회의가 매일 개최됨에 따라 공문을 생략하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만 안내하였다.

20) 규칙 제8조 및 제9조 참조

2) 의결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다만, 표결보다는 최대한 합의로 결정하였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이 가능하였지만 실제 서면의결한 사항은 없었다.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의는 사안별 순서대로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으로써 최종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도 무난히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3) 의사 기록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로 기록하였고, 속기록을 첨부한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였다. 속기록은 매 위원회의마다 대한속기협회 소속 속기사를 고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언론전담제 운영

언론 대응의 통일성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변인 역할의 언론전담 위원 2명²¹⁾을 합의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한편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위원 결원 및 획정기준 확정 지연 장기화로 인해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결국 구성되지 않았다.



▲ 윤광일 위원 국회방송 인터뷰 (2020. 1. 23.)

5) 위원회의 개최

2018년 12월 7일 개최한 제1차 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최종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채택한 2020년 3월 6일 제28차 위원회의까지 총 28회의 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의는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나, 제5차 위원회의로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전 과정과 제17차 위원회의 시 정당 의견청취의 일부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 공개하였다.

21) 윤광일 위원, 조속현 위원

본격적으로 선거구획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위원회의에서는 자정을 넘기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고, 1일 1차 회의원칙에 따라 자정 전에 산회하고 자정 이후에 다음 차수로 회의를 개의²²⁾하여 진행하였다.

〈표 2-5〉 역대 위원회의 개최 현황

(단위: 회)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11	6	14	9	9	30	28

〈표 2-6〉 위원회의 운영 현황

차수	운영 일시	주요 안건
1	2018. 12. 7. 11:18~13:10	위원장 호선 및 운영규정 의결
2	2018. 12. 24. 10:38~12:09	위원 언론전담제 운영
3	2019. 1. 14. 10:35~12:37	지역구 정수 등에 대한 확정 촉구문 발송 방안 논의
4	2019. 1. 21. 10:41~11:10	행정안전부, 인구·행정구역 현황 보고
5	2019. 1. 31. 14:02~16:31	공청회 개최
6	2019. 2. 18. 10:34~12:08	인구기준일 현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분석
7	2019. 2. 25. 10:54~12:36	국회의 지역구 정수 등 미통보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
8	2019. 3. 11. 09:38~11:15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9	2019. 3. 18. 10:37~11:49	확정안 제출기한 경과에 대한 입장문 작성 및 향후 위원회의 진행일정 논의
10	2019. 4. 22. 10:44~12:10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주요 쟁점지역 사례 분석
11	2019. 5. 24. 10:47~11:49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시 생활문화권 고려사례 분석
12	2019. 8. 16. 10:43~11:28	선거구획정기준 고려요소 간 우선순위 적용여부 검토
13	2019. 9. 20. 10:40~11:34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청취 계획 논의
14	2019. 11. 22. 10:40~11:28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청취 결과 논의
15	2019. 12. 30. 10:38~11:39	국회에 시·도별 정수 등 확정 및 위원 선정 요청 논의
16	2020. 1. 7. 10:37~11:25	정당 의견청취 관련 논의
17	2020. 1. 10. 10:04~12:17	정당 의견청취
18	2020. 1. 21. 10:40~11:50	선거구획정 대상 논의
19	2020. 2. 3. 16:54~17:24	수도권 의원정수 변동 시 선거구 조정방안 검토
20	2020. 2. 21. 10:15~11:31	선거구획정 대상 논의
21	2020. 2. 28. 15:22~17:16	시·도별 정수 등 획정기준 미통보 시 대책 논의
22	2020. 2. 29. 15:15~23:54	자체 획정기준 마련 등 논의
23	2020. 3. 1. 00:05~22:12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4	2020. 3. 2. 11:36~23:45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5	2020. 3. 3. 00:20~16:26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
26	2020. 3. 4. 20:20~22:08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에 따른 대책 논의
27	2020. 3. 5. 15:37~21:53	새로운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8	2020. 3. 6. 10:18~22:30	새로운 선거구획정보고서 채택

22) 제22차~제23차, 제24차~제25차 위원회의(총 2회)

제3절 사무국 구성·운영

1. 사무국 구성

가. 1단계

사무국은 획정위원회 설치일 30일 전부터 둘 수 있어 2018년 9월 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직원 12명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였다.

법제과를 중심으로 출범한 사무국은 연말까지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격적인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까지 사무실 설비 및 예산확보,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수집 등 획정위원회 출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단계

2019년 1월 1일부터 획정위원회 존속기한까지 선거구획정사무를 전담할 직원으로 구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사무국에는 기획팀, 관리팀, 운영팀을 두었으며,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팀원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2-7〉 사무국 직원 현황

(2020. 3. 6. 기준)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사무국장	김 인 수	서 기 관	
기획팀장	고 유 나	행정사무관	
기 획 팀	신 우 석	행정주사	
기 획 팀	이 서 화	행정주사보	
관리팀장	송 광 근	서 기 관	
관 리 팀	곽 진 경	행정주사	
관 리 팀	오 병 석	전산주사	
운영팀장	서 갑 중	서 기 관	
운 영 팀	이 종 은	행정주사	
운 영 팀	최 일 식	행정주사보	

〈표 2-8〉 역대 사무국(지원조직) 운영 인원 현황

(단위: 명)

제15대	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10	15	13	23	18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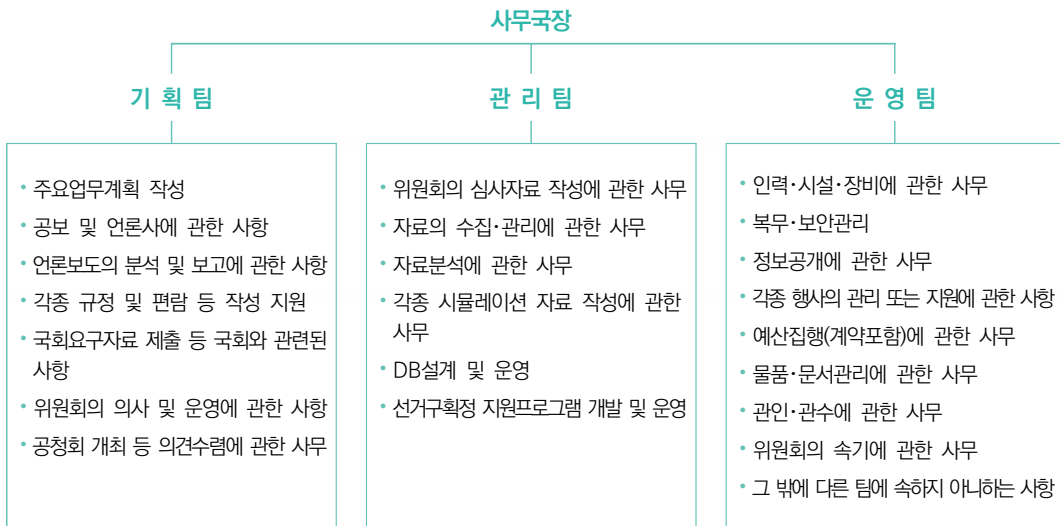
2. 사무국 직무 및 운영

가. 사무국 직무

사무국은 획정위원회 회의 진행 보좌, 회의결과 정리, 선거구획정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등 획정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였다.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2-9〉 사무국 사무분장



나. 사무국 운영

1) 권한과 책임의 배분

획정위원회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을 제정하였다.

위원회의 의결사항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기본계획 등은 위원장 결재로 하고, 그 외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국장과 팀장을 전결권자로 하였다.

2)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이해관계자 등의 집단 항의 방문·시위와 청사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정보유출 등 보안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였다.

특히 본격적인 획정업무 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소란·난동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관악경찰서 및 남현파출소, 관악소방서, KT텔레캅과 비상연락망을 편성하고, 집회 때마다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면서 협력·대응하였다.

실제로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시 집단항의 방문이 빈번하였으나, 사전에 준비된 행동요령과 대처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여 수차례의 집회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의 충돌이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 원활한 청사방호 및 보안관리



선거구획정
백서

제3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준비과정

- 제1절 선거구획정 준비
- 제2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제3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준비과정



제1절 선거구획정 준비

획정위원회 출범 직후인 2018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편에 합의하였다.

선거제가 개편되면 선거구획정의 전제가 되는 국회의원지역구 총 정수가 달라질 수 있어 획정위원회는 국회의 논의 추이를 예의주시하였으나, 선거구획정보고서 제출기한인 2019년 3월 15일까지도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진척이 없었다. 게다가 선거제 개편안이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선거구획정 논의는 연말까지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언제라도 구체적 획정기준이 송부되면 지체 없이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획정을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1. 획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

가. 제20대 선거구획정 시 쟁점지역 사례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제20대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강원·경북 구역조정, 인천 남동구·경남 양산시 경계조정 사례를 분석·연구하였다. 당시 회의록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안 작성 방법과 획정기준 적용 사례 등을 확인하고 향후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도출하였다.

특히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획정 고려요소에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어떤 요소를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나. 획정 고려요소 검토

1) 생활문화권 개념 정립

획정위원회는 제20대 선거구획정 사례연구를 통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생긴 이견은 주로 생활문화권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생활문화권에 관한 개념 정립과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생활문화권은 2016년 3월 3일 법 개정 시 획정의 고려요소로 명문화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부터 생활권은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과 더불어 하나의 요소로 고려되었다.

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범위를 말하며, 공간적 범위와 규모에 따라 소생활권, 중생활권, 대생활권으로 분류된다.²³⁾ 또한 문화권은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지닌 일정한 지리적 범위의 문화복합을 뜻하며 일정한 지리적 범위란 대체로 국가 규모 이상의 스케일을 말한다.²⁴⁾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생활문화권은 정개특위 논의과정, 문화권의 개념 및 현재 결정례 등을 고려해볼 때 생활권과 문화권이 단순히 병렬적으로 결합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생활권에 문화적 요소(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를 가미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제20대 선거구획정 사례분석을 통해 생활문화권은 도시연혁, 자연 및 인공경계, 교통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도시지역을 분구하는 경우와 농산어촌지역을 구역조정 하는 경우 생활권의 범위와 구분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에 따른 생활권 구분의 논거를 제시하고 도시계획상의 생활권 분류기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3) 오병록(2014). 경기도에서 통행거리 및 통행특성 분석과 지역 중심의 생활권 설정. GRI연구노총, 16(3), 125-150

24) 전중환(2007). 중원문화권의 정체성에 관한 대안적 관점 모색. 충북학, 9, 7-18

2) 획정 고려요소 간 우선순위 논의

법은 선거구획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자의적 획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다양한 고려요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0대 선거구획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실제 획정과정에서는 이 중 어느 것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획정의 고려요소 간 우선순위 적용여부를 헌법재판소 결정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구기준과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 외 비인구적 요소인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은 각각을 독립변수로 보기보다는 우선순위 없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표 3-1〉 획정기준 간 우선순위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법례

국가	입 법 례
일본	· 법에 명시적으로 인구 기준을 우선으로 하되, 비인구적 요소는 우선순위 없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제3조)
독일	· 획정기준 간 우선순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으나 주 경계 내 획정과 인구편차 규정은 준수 사항이며, 상호 긴밀히 연결된 지역(우리의 생활문화권에 해당)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코문·자치구 존중은 고려 사항으로 해석 가능(연방선거법 제3조)
영국	· 주 경계, 인구 기준과 선거구의 크기(13,000km ²)를 우선 규정하고, 나머지 요소는 획정위원회가 고려할 사항으로 규정(의회투표제도 및 선거구법 2011)
미국	· 2016년 양원합동으로 결의한 공정 선거구 조항(Fair Districts Amendment, 연방헌법 수정안)에서 획정기준 간 우선순위가 없음을 명시하였으나 동 수정안은 회기종료로 폐기

2. 사무국의 실무적 준비과정

가. 인구수 및 행정구역 현황

법은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21대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일은 2019년 1월 31일이다.

획정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의(2019. 1. 21.) 시 획정의 사전 작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현재의 행정구역과 인구수 자료 및 제20대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일(2015. 10. 31.) 이후 인구변동과 행정구역 변경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2015년 10월 31일 대비 325,073명이 증가하였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7개 시·도는 증가하였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감소하였다. 선거구별로는 253개 선거구 중 98개 선거구의 인구가 증가하였고 나머지 155개 선거구의 인구는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6년 3월 3일 공직선거법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개정 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총 40개 선거구에서 65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획정위원회는 이 자료를 기초로 변경된 행정구역을 반영한 선거구구역표와 선거구별 인구수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후 인구기준일인 2019년 1월 31일 현재 읍·면·동별 인구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선거구별 인구수 및 불부합선거구 현황 자료를 작성하여 선거구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인구기준일 이후 변경된 행정구역 관련 자료도 수시로 제공받아 선거구획정 시 변경된 행정구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구획정의 인구기준을 인구범위 2:1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획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하여 평균인구수에 상하 33⅓%를 가감하여 인구범위(상·하한 인구수)를 정하고, 이를 선거구획정의 잠정적인 인구기준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2〉 평균 및 상·하한 인구수 (인구기준일: 2019. 1. 31.)

총인구수	선거구수	평균인구수	하한인구수	상한인구수
51,826,287명	253개	204,847명	136,565명	273,129명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지역구 총 정수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의석수별 인구기준 및 불부합선거구 현황을 작성·관리하여 선거구획정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비하였다.

나.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2019년 1월 16일 사무국은 제20대 획정위원회의 경험사례 공유 및 토의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경험사례 발표자로 직전 획정위원회 사무국의 기획팀장(최관용 서기관), 관리팀장(조봉기 서기관), 운영팀장(강석태 서기관)을 획정위원회로 초청하여 노하우를 전수 받았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 선거구 자료 수집·분석 등 시뮬레이션 자료 작성, 언론대응, 집단민원 대처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직원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 직원 역량강화 업무연찬(2019. 1. 16.)

다. 구·시·군별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작성

2019년 2월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00석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선거구획정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에 대규모 선거구 조정을 대비한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준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획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자치구·시·군(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별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선거구획정의 고려요소에 해당하는 사항과 도시 및 선거구 연혁, 인구 변화 추이 등 선거구획정 시 참고사항을 포함하는 선거구획정 기초자료를 준비하였다.

기초자료는 최종 확정본 기준 2,000쪽이 넘을 정도로 작성 분량이 방대하였기 때문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시·도 및 기능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작성하였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 공공기관 발간자료를 참고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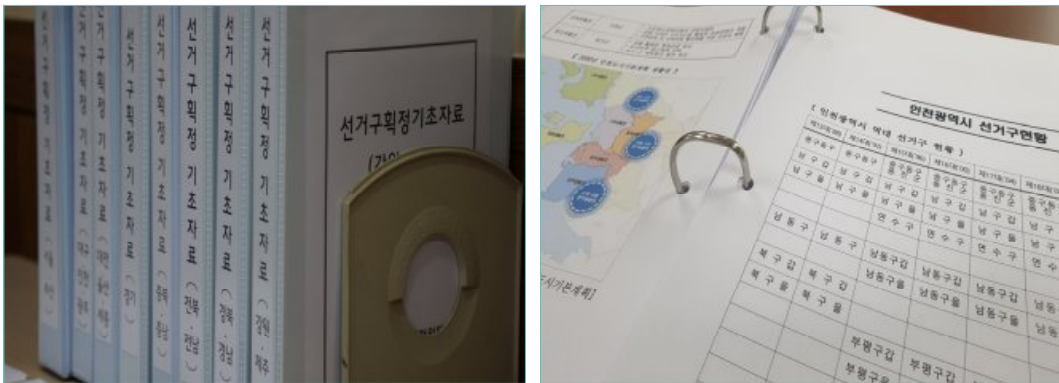
〈표 3-3〉 기초자료 주요 수록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역구분	· 지리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른 지역구분
기초자료	· 면적, 인구수, 행정구역, 주요 관공서 현황
연혁자료	· 도시 및 선거구(국회의원, 광역의원) 연혁, 시기별 인구 변화 추이
분석자료	· 지리·교통여건, 인구 변화, 도시세력권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 실사를 통하여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공청회, 지역 의견수렴, 민원사항 등도 자료에 반영하여 다양한 의견이 확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선거구획정 기초자료는 촉박한 선거구획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논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또한 위원회의 시 선거구획정 기초 자료를 비치하여 위원 간 의견이 대립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이번 선거구획정 준비과정에서 작성한 기초자료는 다음 획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기록보존소에 인계·보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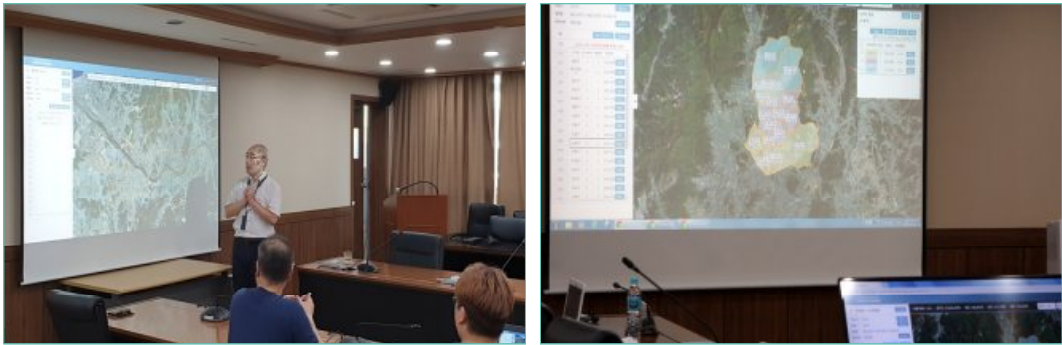
▲ 구·시·군별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라.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개발

선거구획정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인구현황과 지도정보이다. 지난 제20대 선거구획정 시에는 이들 기초정보를 엑셀, 전자지도 등 단순 프로그램을 통해 활용하였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위원회의 시 실시간 시뮬레이션에도 한계가 있었다.

사무국에서는 선거구획정의 신속·정확성을 확보하고 실시간으로 선거구획정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2019년 4월부터 IT기반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인구기준일(2019. 1. 31.) 현재 전국의 읍·면·동별 인구수와 최신의 행정동 지도 및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전자지도를 탑재하여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 등 선거구획정의 객관적 고려요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개발

사무국에서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안을 시뮬레이션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위원회의 시 위원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인구수와 지도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선거구획정안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갑·을선거구 간 경계조정 시, 각각의 안에 대하여 인구편차, 도심과의 거리, 교통상황, 자연 경계의 존재여부 등 인구 및 지도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논의함으로써 객관화되지 않은 주장이 대두되는 것을 방지하고, 위원들이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원안과 새로운 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적의 선거구획정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이번 획정 시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과 구·시·군별 획정 기초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짧은 기간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사무국에서 준비한 선거구획정안이 위원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된 비율도 지난 제20대 획정위원회와 비교 시 확연히 높게 나타났다.

〈표 3-4〉 위원회의 상정 획정안의 원안 통과 비율

(단위: 건, %)

구분	구역조정			경계조정		
	사무국 준비안		위원 수정안	사무국 준비안		위원 수정안
	원안	대안		원안	대안	
제20대	12(100)	-	-	18(60.0)	2(6.7)	10(33.3)
제21대 (1차)	4(100)	-	-	14(77.8)	1(5.5)	3(16.7)
제21대 (2차)	4(100)	-	-	9(64.3)	1(7.1)	4(28.6)

마. 선거구획정을 위한 현지 실사

사무국은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2019. 3. 15.)이 임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한 인구수를 산출하고, 이에 따라 분구 또는 구역조정이 예상되는 선거구에 대해 2019년 2월 13일부터 일주일간 현지 실사를 실시하였다.

구역조정 예상 지역인 인천, 강원, 전남은 생활권, 교통·지리 여건과 관계된 내용을, 분구 예상 지역인 세종과 춘천시, 순천시는 생활권, 도로·하천·산 등 교통·지리 여건, 개발지구 및 도시계획 등 인구변화 요인과 관계된 내용을 주로 수집하였다.

이후 2019년 11월 25일부터는 한 달여 동안 인구기준 불부합선거구 중 경계조정 예상 지역, 지역의견 수렴 시 진술인 간 의견대립 지역, 청원·민원 접수 지역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현지 실사를 추가 실시하였다.

경계조정이 예상되는 부산 남구를 비롯한 12개 자치구·시·군에 대하여는 생활권, 도로·하천·산 등 교통·지리여건, 인구 변화요인 등을 확인하였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북 김제시, 완주시, 경북 영천시와 인근 지역은 지역 의견청취 속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지실사 결과는 구·시·군별 선거구획정 기초자료에 반영하여 선거구획정안 작성에 참고하였으며, 위원회의 시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실사반이 구체적으로 현지 사정을 진술하여 선거구획정안 논의에 도움을 주었다.

바.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선거구획정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였다.

먼저 선거구획정기준에 해당하는 인구, 행정구역 등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역정보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또한 선거구획정 관련 집단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악경찰서 및 관악소방서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

제2절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

획정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당, 각계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당과 각계 전문가를 초청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대부분 농산어촌으로 이루어진 도(道)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 등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인터넷,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된 민원은 제출 기한이나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접수하여 위원회의에 보고하였다.

1. 공청회 개최

선거구획정에 관한 정당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2019년 1월 31일 국회 본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먼저 진술인을 추천할 단체 등은 지난 획정위원회 당시의 공청회를 참고하여 정당과 학계의 관련 전문가를 추천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대한지리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여 총 11명의 진술인이 참석하였다.

공청회는 10분 이내의 진술인 발표와 전체 진술인 발표 이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답변, 방청인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였다.

한편 선거구획정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관심 유도를 위해 공청회 개최 사실을 보도자료, 국회 구내방송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였고, 공청회의 전 과정도 국회방송(NATV)과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공개하였다.

아울러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회 소관부서에 질서유지 협조를 요청하였고,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청회는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선거구획정기준이라는 주제를 벗어난 비례대표제 변경 등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선거구획정안 지연 제출 등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지역구 정수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임을 참석자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였다.



▲ 공청회 (2019. 1. 31.)

〈표 3-5〉 공청회 주요 진술내용

추천	진술인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조성대 (한신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정개특위와 주기적인 소통 채널 필요 •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재적위원 2/3 이상 찬성) 변경 필요 • 시민사회의 의견청취 통로 마련
자유한국당	정승윤 (부산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편차 상하 $\pm 33\frac{1}{3}\%$(2:1)를 기준으로 확정 • 농산어촌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대표성 반영이 어려우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방안 고려
바른미래당	최원식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의사 반영을 위한 사표 방지 방안 강구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대표 의석할당 시 전국 정당득표율로 우선 배분하되, 배분된 의석을 권역별로 재배분하는 방식이 합리적임.
민주평화당	안용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크기 이상의 선거구는 인구편차기준을 미적용 → 선거구간 지역불균형 완화 • 현재의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 기준을 유지하면서 가중다수결방식에 선호투표 적용 → 위원들의 정당 유불리만을 고려하는 부작용 해소 • 영호남지역은 선거구조조정 최소화 • 선거구획정 대상지역 면밀한 현장조사 필요
정의당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따른 지역구수 축소는 유권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음. • 국회의원 수당 등 동결을 전제로 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민중당	정태홍 (민중당 정책연구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선거제도는 다수의 사표 발생하고, 정당 득표수와 실제 의석수 사이의 불일치 심각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천	진술인	주요내용
대한애국당	박태우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0대 선거구획정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 간 이질감과 불균형이 나타남.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기반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
대한지리학회	이정섭 (경상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 총 정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마련이 시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권역별보다는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전국 단위가 적합함. 광역자치단체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100석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 국회의원 총 정수 확대가 현실적인 방안이라 판단됨.
한국공법학회	송기춘 (전북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득표제에 기초한 지역선거구제도가 기본이 되는 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의 구성에 반영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인구비례성을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구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임.
한국정치학회	박명호 (동국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 조정대상 선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여야 간 등 거래와 타협의 산물로 선거구 조정이 인식되어 정치적 논란과 불신을 야기 획정위원회의 상설화 위원은 국회 선정 대상자를 줄이고, 중앙선관위위원장 선정 대상자를 확대
한국행정학회	김동욱 (서울대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선관위위원장 지명 위원 3명, 국회 소관위원회 선정 위원 6명으로 법 개정 필요 시·도별 중심도시를 현지 방문하여 지역 주민 의견경청

2. 지역 현지 의견청취

획정위원회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을 시작으로 충남,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충북까지 7개 도(道)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지 의견을 청취하였다.

위원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위해 가급적 모든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으며, 진술인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지방자치학회, 지역 시민단체 등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지역 의견청취의 진행방법은 위원 중 연장자가 진행하되, 모든 진술인이 의견을 발표한 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였고, 참석한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부여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또한 속기사를 고용하여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였다.



▲ 지역 의견청취 (2019. 10. 14. ~ 30.)

지역의견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방안보다는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세부적으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에 지역면적도 고려하자는 의견, 광대한 농산어촌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선거구별 지방자치단체수와 면적에 대한 상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인구비례 범위를 완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그 밖에 선거구획정기준을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진술인을 통해 실질적인 현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지역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형식적인 의견이 제시되거나 지역 주민과 언론의 관심이 저조하였다.

〈표 3-6〉 지역 의견청취 실시 현황

지역	일시	장소	참석위원
강원	2019. 10. 14.(월) 14:00	춘천세종호텔 세종홀	손창열, 이덕로, 조영숙, 한표환
충남	2019. 10. 16.(수) 14:0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윤광일, 이덕로, 한표환
전남	2019. 10. 21.(월) 14:00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	손창열, 윤광일, 이덕로, 조숙현, 조영숙, 지병근, 한표환
전북	2019. 10. 23.(수) 14:00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	손창열, 윤광일, 이덕로, 조숙현, 지병근
경북	2019. 10. 25.(금) 14:00	경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	손창열, 윤광일, 조숙현, 지병근, 한표환
경남	2019. 10. 28.(월) 14:00	경남도청 회의실 본관	윤광일, 조숙현, 한표환
충북	2019. 10. 30.(수) 14:00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	손창열, 윤광일, 조영숙, 한표환

〈표 3-7〉 지역 의견청취 진술인 명단

지역	구분	추천	소속	직위	성명
강원 (6명)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조직국장	김완규
		자유한국당	경동대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	최철재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이석규
		정의당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윤민섭
		민중당	민중당 강원도당	위원장	이승재
	학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윤도현
충남 (6명)	정당	더불어민주당	여기구 국회의원실	보좌관	구본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조철희
		정의당	정의당 충남도당	정책위원장	이지훈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김진욱
	시민 단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유태
		대전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승현
전남 (7명)	정당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차용석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정욱기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조직국장	정일권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병록

지역	구분	추천	소속	직위	성명
	시민 단체	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	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	정임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태성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신규
전북 (8명)	정당	더불어민주당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성진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전 전북도의원	허남주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민중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조형철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상현
	시민 단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정대전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고종윤
경북 (6명)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자치분권위원장	김위한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교수	김상봉
	시민 단체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윤병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조광현
		대구경북기자협회	경북매일	부국장	김영태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정책부회장	황보경
경남 (8명)	정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조직국장	민호영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김해시감당협위원회	위원장	홍태용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위원장직무대행	정규현
		민중당	민중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박봉렬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송광태
	시민 단체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경남도지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경남도지회	도회장	권순옥
		지방분권운동 경남연대	지방분권운동 경남연대	공동대표	안권옥
		경남시민주권연합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진철
충북 (7명)	정당	더불어민주당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정상호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최진현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	김현문
	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충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형서
	시민 단체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두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남기헌
		충북지방자치포럼	충북지방자치포럼	기획위원장	강광선

3. 정당 의견청취

2020년 1월 10일 개최한 제17차 위원회의에서는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7개)으로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의견청취에 참석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이었고, 우리공화당은 참석하는 대신 서면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정당 의견청취는 각 정당별 진술인 1명이 국회 의석 순으로 발표하고, 모든 진술인이 발표한 후 위원과 진술인 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다.

이날 위원회의는 위원장 모두 발언과 각 정당의 진술인 소개까지 언론에 공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여 진행하였다. 정당 의견청취가 종료된 후 일부 진술인은 기자의 질문에 비공개 진술내용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각 정당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시·도별 의석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커야야 합의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정당 의견청취 (2020. 1. 10.)

〈표 3-8〉 진술인 명단 및 주요 진술내용

정당명	진술인 명단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지역특성,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지역적 차이, 국가 균형발전, 지역적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된 이후 정당 및 각계의 의견을 재차 수렴할 필요가 있음.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균 인구가 적은 시·도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정수를 줄이는 게 헌법 원칙에 부합함. 농산어촌지역 선거구 통·폐합 최소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 변경 최소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조항의 예외는 게리맨더링이 우려되므로 허용 불가
바른미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수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정책적·기술적 요소도 고려 현행 선거제도에서 인구대표성의 기계적 적용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대한 정치적인 대표성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농산 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 필요 게리맨더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금지 및 예외 조항을 엄격히 지켜야 함.
민주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거구획정기준 인구편차 범위(하한 13만9천명, 상한 27만8천명) 제시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 구·시·군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정 농산어촌지역 지역구 감소를 최대한 지양
정의당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별 의석수, 인구 상·하한선은 획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역구수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예산편성과 행정행위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이뤄지므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역 간의 불일치 최소화 일반 행정구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금지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 이상의 선거구에 걸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정 경계조정 시 광역·기초의원선거구의 분할이 최소화 되도록 확정
우리공화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적용할 예외 지역을 확대하고, 게리맨더링 방지책 마련 영국, 독일 등과 같이 선거구획정기준을 입법화
민중당	최기영 민중정책연구원 부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지역 대표성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 유지, 생태계보전 등의 농산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농업이 미래인 국가를 구성하는 것임. 인구 상·하한수는 특정선거구(김제부안선거구)를 기준으로 함. 향후 농산어촌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 의석수 증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은 불가피할 것임.

4. 청원·건의서 등 민원 수렴

획정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수천 건의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한 집단 민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민원은 국민신문고나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찾아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청원·건의서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특히 2020년 3월 3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언론에 공개되고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후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지역 주민들은 선거구획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인터넷,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연일 거세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큰 지장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수천 건의 접수 민원 중 내용이 중복된 민원은 1건으로 처리하여 순수하게 내용별로 분류하면 총 37건으로 집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선거구 구역조정과 경계조정에 관한 사항이 대다수이며, 그 외 민원제기 지역의 지역구수 증가나 행정구와 선거구를 일치시키자는 의견 등이 있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3건(35.1%)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주체별로는 지역 주민 등 개인이 21건의 민원을 제기하여 56.7%를 차지하였다.

한편 제기된 모든 민원은 위원회의에 보고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참고하였다.



▲ 집단방문을 통한 의견서 제출

〈표 3-9〉 주체별 민원 현황

(단위: 건)

계	국회의원	정당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학회 포함)	개인
37	2	1	5	8	21

〈표 3-10〉 지역별·내용별 민원 현황

(단위: 건)

시·도명	구분	구역조정(A)	경계조정(B)	기타(C)	계(A+B+C)
서울		2	1	-	3
인천		1	4	-	5
세종		-	1	-	1
경기		-	9	4	13
강원		5	1	-	6
경북		3	-	3	6
경남		-	3	-	3
계		11	19	7	37

※ 기타(C) : 지역 주민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행정구와 선거구 일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명칭 변경, 지역구수 증가에 관한 사항 등

제4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착수와 결과

- 제1절 선거구획정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
- 제2절 선거구획정안 제출
- 제3절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제4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착수와 결과



제1절 선거구획정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

1. 선거구획정기준의 필요성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지역구 총 정수와 시·도별 정수, 그리고 인구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획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법에는 국회의원 총 정수(300명)와 인구범위(2:1)만 규정되어 있을 뿐 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인구범위 결정 방법 및 주체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²⁵⁾

따라서 획정기준의 결정 방법 및 주체에 대해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획정위원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회에서 시·도별 의석수 등을 정한 전례에 따라 국회에 획정기준 송부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선거사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도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획정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엄중한 판단 하에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25) 2020. 1. 1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법은 국회의원 총 정수(300명)와 지역구국회의원 총 정수(253명), 비례대표국회의원 총 정수(47명)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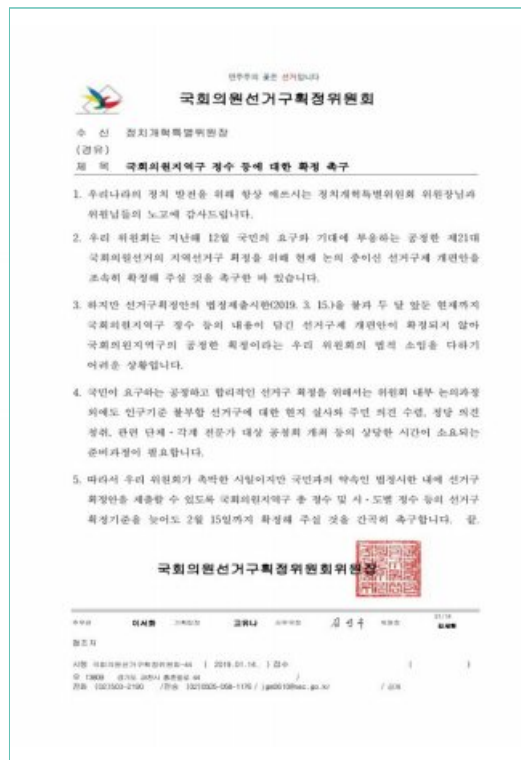
2. 선거구획정기준의 결정 지연

2018년 12월 7일 획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정치권에서는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등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2018년 12월 15일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듬해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를 개혁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도입될 경우 국회의원 총 정수 및 지역구 총 정수의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이에 획정위원회는 2018년 12월 10일, 2019년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제 개편안 확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정개특위위원장에게 송부하였다. 특히 2019년 1월 14일에는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획정기준을 2019년 2월 15일까지 확정하여 줄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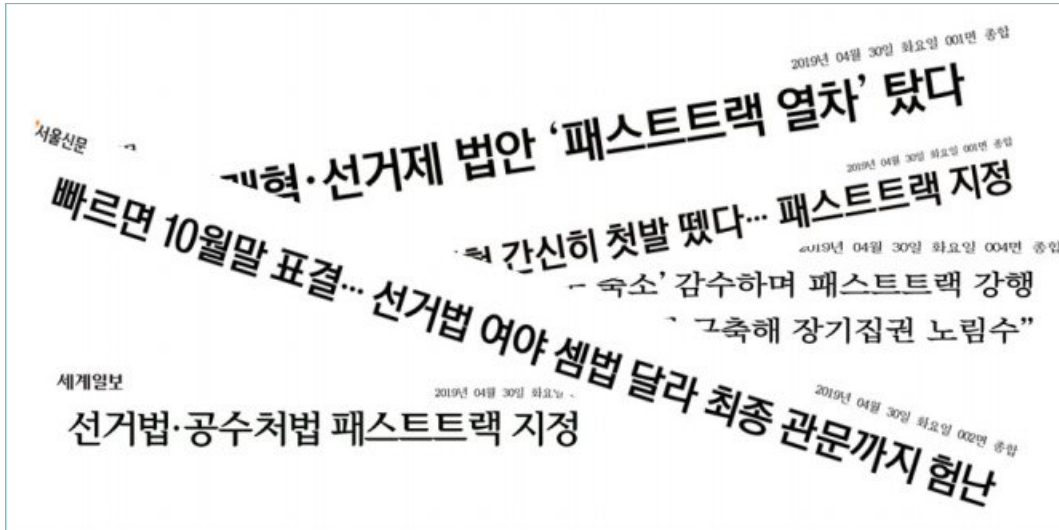


▲ 개편안 확정 촉구 공문 (2018. 12. 10.)



▲ 지역구 정수 등에 대한 확정 촉구 (2019. 1. 14.)

그러나 선거제 개편에 관한 정치권의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 전 13개월인 2019년 3월 15일에 이르러서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2019년 4월 30일 사법개혁법안과 함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으로써 연말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따른 언론보도

3.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마련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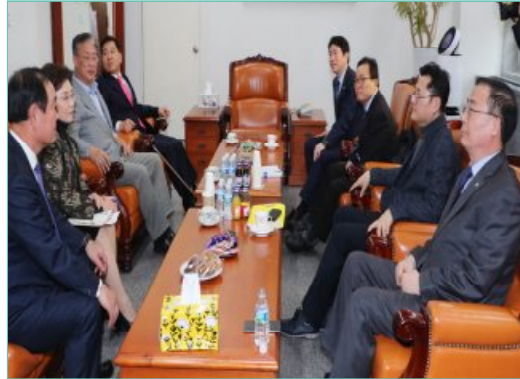
2019년 12월 27일 마침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당초 상정된 지역구 총 정수 225석에서 현행 253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획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 제15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하였다. 국회의장 및 행안위 위원장에게 시·도별 지역구 정수 등의 확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하는 한편, 정당 의견청취 일정 등을 결정하며 획정작업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획정위원회의 기대와는 달리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는 쉽게 진척되지 않았다. 2020년 2월 1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선거구획정에 대해서는 행안위 간사 간 협의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후 행안위 간사 회동과 여야 원내대표 및 간사 회동이 있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획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2020년 2월 13일 행안위 간사 회동에 참석하여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만료(2020. 3. 6.) 전까지는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2020년 2월 24일까지는 선거구획정 기준이 통보되어야 한다고 엄중히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정당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고 결국 요청한 기간 내에 획정기준을 정하지 못하였다.



▲ 행안위 여야 간사회의 참석 (2020. 2. 13.)



▲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 간사회의 (2020. 2. 21.)

4.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미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획정위원회는 2020년 2월 28일 제2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9일부터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하고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획정기준을 기다려왔지만, 재외선거인명부작성 마지막 날인 2020년 3월 6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하지 않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향후 이어질 선거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획정위원회는 2020년 3월 3일까지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획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입 장 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이라는 소임을 부여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국회에 시도별 지역구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국회에서는 현재까지도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의 지연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과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 등 선거사무가 이미 개시되었으나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은 3월 6일에 완료됨에 따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향후 이어질 선거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월 29일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마련 입장문 (2020. 2. 28.)

제2절 선거구획정안 제출

1. 선거구획정기준

가. 인구기준 결정

선거구획정기준 마련을 위해 먼저 인구범위 결정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바와 같이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33⅓%를 가감한 인구범위를 기본안으로 하여, 기본안으로부터 인구범위를 일정하게 상향하여 설정하되 ▲최초로 선거구 변동이 생기는 상·하한 인구수를 「상향1안」으로 하였으며, ▲이후 선거구 조정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 「상향1안」에서 하한 인구수를 500명씩 높여가는 방법으로 설정한 「상향2안」에서 「상향4안」까지 총 5개 안으로 논의하였다.

〈표 4-1〉 인구기준으로 제시된 5개의 안

(단위: 명)

구 분	인구하한	인구상한	비 고
평균인구수 기준안	136,565	273,129	
인구 기준 상향	제1안	139,000	278,000
	제2안	139,500	279,000
	제3안	140,000	280,000
	제4안	140,500	281,000

「상향1안」은 군포시갑·을 통합으로 경기에서 1석의 여유 의석이 발생하고, 「상향2안」은 「상향1안」에 추가하여 김제시·부안군과 인접 선거구의 구역조정으로 경기와 전북에서 총 2석의, 「상향3안」은 「상향2안」에 추가하여 부산 남구갑·을 통합으로 경기·전북·부산에서 총 3석의 여유 의석이 발생하며, 「상향4안」의 경우 여유 의석은 「상향3안」과 같으나 분구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강원 춘천시와 전남 순천시가 분구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인구기준 상향은 각 시·도에서 선거구 조정을 통해 발생하는 의석의 여유분을 분구가 불가피한 시·도에 얼마나 배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인구기준을 상향할수록 여유 의석은 늘고 분구대상은 줄어들어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

획정위원회는 선거구 변동폭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존중하기 위한 각각의 상향안과 가치중립적인 기본안을 두고 자정을 넘는 시간까지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가 1995년부터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허용 인구편차의 논거로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33⅓%를 가감한 수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를 인구기준으로 결정하였다.

평균인구수 기준안을 선택할 경우 선거구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어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상향된 기준 적용 시 인위적으로 인구 기준과 선거구를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나. 시·도별 의석수 결정

다음으로는 시·도별 의석수를 결정하였다. 획정위원회는 기존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필요한 시·도의 의석수를 증감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인구기준 상한초과로 분구가 불가피한 세종의 정수 증가로 의석수를 감소시킬 시·도를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인구비율에 따른 적정의석수에 대비하여 과다 대표된 시·도인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북, 전남 중 구역조정 없이 의석수 감소가 가능한 서울에서 1석을 줄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 4-2〉 인구비율에 따른 시·도별 적정 의석수 및 현행 의석수 현황²⁶⁾

(2019. 1. 31. 기준)

시·도명	인구수	적 정 의석수 (a)	현 행 의석수 (b)	과 다 대표수 (c=b-a)	시·도명	인구수	적 정 의석수 (a)	현 행 의석수 (b)	과 다 대표수 (c=b-a)
계	51,826,287	253	253		경기	13,090,648 (25.26%)	64	60	-4
서울	9,766,288 (18.84%)	48	49	+1	강원	1,541,693 (2.97%)	8	8	-
부산	3,438,259 (6.63%)	17	18	+1	충북	1,599,155 (3.09%)	8	8	-
대구	2,460,382 (4.75%)	12	12	-	충남	2,125,797 (4.10%)	10	11	+1
인천	2,955,916 (5.70%)	14	13	-1	전북	1,834,532 (3.54%)	9	10	+1
광주	1,459,832 (2.82%)	7	8	+1	전남	1,878,904 (3.63%)	9	10	+1
대전	1,488,725 (2.87%)	7	7	-	경북	2,674,005 (5.16%)	13	13	-

26) 적정의석수 산정을 위한 의석배분 기본원칙은 의원정수를 각 시·도의 인구비율로 나누어 정수부분 우선 배정 후, 잔여의석을 소수부분 최대순으로 배분하는 헤어/니마이어(Hare/Niemeyer)방식을 따랐다.

시·도명	인구수	적 정 의석수 (a)	현 행 의석수 (b)	과 다 대표수 (c=b-a)	시·도명	인구수	적 정 의석수 (a)	현 행 의석수 (b)	과 다 대표수 (c=b-a)
울산	1,154,786 (2.23%)	6	6	-	경남	3,373,214 (6.51%)	16	16	-
세종	316,814 (0.61%)	2	1	-1	제주	667,337 (1.29%)	3	3	-

한편 춘천시, 순천시가 인구상한을 초과하여 분구가 불가피함에 따라 강원, 전남이 현행 의석수를 유지할 경우 도내 다른 지역의 구역조정을 통해 각각 1석씩 감소가 필요하였다. 전남은 선거구를 조정하여도 최대 4개 시·군이 통합되나, 문제는 6개 시·군 통합이 불가피한 강원이었다. 제20대 확정 시 5개 시·군 통합으로 이른바 ‘거대선거구’, ‘공룡 선거구’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강원도의 의석수 결정에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강원의 의석수를 증가시킬 경우 감소시킬 시·도를 정해야 하는데, 이미 1개 선거구의 감소가 확정된 서울에서 더 줄이기 어렵다는 점과 강원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다른 지역(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의석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세종과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 선거구획정안 작성·제출

가. 획정대상 선정

획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정한 인구기준과 시·도별 의석수를 가지고 2020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획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선거구획정안 작성에 앞서 획정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8개(하한 미달 3개, 상한 초과 15개) 선거구를 포함하여 서울의 정수 조정에 따라 선거구를 감소시킬 1개 자치구와 민원 등이 제기된 지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거구를 획정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서울에서 선거구 감소가 가능한 자치구는 인구가 상한 인구기준의 2배수를 넘지 않지만 3개 선거구로 구성된 노원구와 강남구가 있었다. 인구기준일(2019. 1. 31.) 현재 노원구의 인구가 강남구에 비해 590명 많았으나, 같은 해 12월 인구통계에 따르면 강남구가 노원구를 역전하였으며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인구가 감소한

강남구와 달리 노원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 획정위원회는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원구를 선거구 감소 자치구로 결정하였다.²⁷⁾

경기는 지역구 정수에 변동이 없었으나 화성시의 경우 시의 중심부에 위치한 봉담읍과 향남읍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 읍·면·동을 분할하지 않고는 기존의 3개 선거구로 획정이 불가능하였다.

앞서 국회로부터 행정동 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구·시·군을 분할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상 행정동 분할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화성시를 3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조정하고, 화성시의 선거구 증가분은 안산시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안산시의 인구는 상한 인구 기준의 3배수를 넘지 않지만 4개 선거구로 구성되어 있어 선거구 감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안산시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기준일 현재 이미 화성시의 인구가 안산시를 앞질렀다는 점도 고려요인이었다.²⁸⁾

인구기준에 부합하나 민원 등의 제기로 검토가 필요한 선거구로는 경북 전 지역(구역 조정)과 경기 파주시, 충북 천안시(경계조정) 등이 거론되었으나 민원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경북 지역만 구역조정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나. 획정 시 주요 쟁점

이번 선거구획정에서는 인구기준과 시·도별 의석수 결정 시 서로 갈등관계에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중 어떤 것에 우위를 둘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인구기준과 시·도별 의석수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므로 이 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세종이 분구되어 1석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의석수를 어느 시·도에서 가져올 것인지, 강원 춘천시가 분구하는 경우 이 여파로 6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거대 선거구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에 1석을 더 배정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이었다.

먼저 세종 분구에 따른 의석수 감소 대상 시·도는 과다 대표된 시·도현황과 의석수 감소가 가능한 복합선거구 현황²⁹⁾을 참조하여 서울의 의석수를 1석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27) 2019년 1월 31일 노원구와 강남구의 인구는 각각 542,744명, 542,154명으로 노원구의 인구가 590명 더 많았으나, 2019년 12월 31일 노원구 532,905명, 강남구 545,169명으로 역전되었다.

28) 2019년 1월 31일 화성시와 안산시의 인구는 각각 765,107명, 659,963명으로 3개 선거구로 이루어진 화성시의 인구가 4개 선거구인 안산시를 앞서 있으며, 2019년 12월 31일에는 화성시 815,396명, 안산시 650,918명으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다음으로 강원의 지역대표성을 위하여 1석을 더 배정할 것인지, 배정한다면 어느 시·도에서 1석을 감소시킬 것인지를 논의하였는데, 이는 곧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를 문제로 귀결되었다.

6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거대 선거구 출현을 막자는 의견에는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다. 그러나 이미 의석수가 감소한 서울을 제외하고 과다 대표된 지역인 광주, 충남, 전북, 전남³⁰⁾ 중 어느 지역의 의석을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었다. 인구대표성을 고려할 때 이들 지역의 의석을 줄여 강원을 늘리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강원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충청과 전라의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었다.

획정위원회는 과다 대표된 시·도는 물론 의석수 감소가 가능한 복합선거구를 포함한 시·도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정수 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고, 약 11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의석수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다음으로 쟁점이 된 것은 인구기준에는 부합하나 현재의 선거구가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원,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이 제기된 경북 북부권의 구역 조정이었다. 제20대 획정 시에도 경북 북부권의 선거구 조정은 난항을 겪었으며, 획정 후에도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선거구획정의 수용도가 극히 낮았다.

획정위원회에서는 획정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경북 북부권에 대하여 지리지, 논문 등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현지 실사를 통하여 생활권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안동시-예천군, 상주시-문경시는 각각 하나의 생활권임을 확인하였고,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현재의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경북의 울릉군을 어느 지역과 통합할 것인지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정치권에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되는 경우 포항시 남구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는 울릉군의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이는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획정이라는 울릉군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다.

획정위원회에서는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2016년 4월 울릉군과 울진군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취항함에 따라 자치구·시·군 일부분할로 이루어진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를 계속 일부분할의 예외로 둘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울릉군-포항시 간 여객선이 매일 1일 3회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데 반해 울릉군-울진군 간 여객선은 동계 휴항기간(1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에는 운행하지 않는 등 부정기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울릉군은 울진군과 지역적 연결성·일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29) 의석수 감소가 가능한 복합선거구로는 서울 노원구과 강남구, 경기 안산시, 경남 창원시가 있다.

30) 부산의 경우, 1석 과다 대표되어 있으나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을 하지 않고는 의석수 감소가 불가능하였다.

다. 선거구획정안 개요

1) 총괄

2020년 3월 3일 획정위원회는 자체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인구수 최다 선거구는 천안시을선거구로 273,124명이고, 최소 선거구는 여수시을선거구로 137,068명이다.

4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4개 선거구가 통합되었으며, 의석수 변경 없이 2개 도(道)의 구역이 조정되었고, 11개 선거구는 자치구·시·군 내에서 경계를 조정하였다. 명칭이 변경된 선거구는 행정구가 폐지된 부천시 4개 선거구이다.



▲ 선거구획정보고서 제출 입장 발표

선거구획정안 제출에 따른 입장

오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우리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래 공청회, 지역의견 수렴, 정당 의견 청취 그리고 민원 분석 등을 통해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나,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기한인 작년 3월 15일을 1년 가까이 지나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국회에 선거구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정수 등을 확정해 주기를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국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을 빚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어진 수일 내로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은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구 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하여 선거구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구획정에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격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인구 및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선거구획정 중에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하거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선거구획정기준의 확정 주체 및 기한 등을 법제화하여 선거구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020년 3월 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 시·도별 선거구 조정내역

모든 선거구가 인구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7개 시·도를 제외한 10개 시·도의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세종의 의석이 1석 증가하였고, 서울의 의석이 1석 감소하였으며, 그 외 시·도는 의석수에 변동이 없었다.

〈표 4-3〉 시·도별 선거구 조정내역

시·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계	±0	253	253	
서울	△1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통 합
부산	±0	남구갑·을	남구갑·을	경계조정
인천	±0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구역조정
		남동구갑·을	남동구갑·을	경계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	경계조정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을	분 구
경기	±0	수원시병·무	수원시병·무	경계조정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갑·을·병·정	명칭변경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	경계조정
		안산시상록구갑 안산시상록구을 안산시단원구갑 안산시단원구을	안산시갑·을·병	통 합
		고양시갑·을·병·정	고양시갑·을·병·정	경계조정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분 구
		강원	±0	춘천시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통 합
전북	±0	전주시갑·병	전주시갑·병	경계조정

시·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전 남	±0	여수시갑·을	여수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	순천시갑·을	분 구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통 합
경 북	±0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구역조정
경 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라. 선거구획정안 심사 및 재제출 요구

2020년 3월 4일 행안위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020년 3월 5일 09:00까지 재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같은 날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제21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기준을 송부하며 2020년 3월 5일 12:00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수 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경유)
제 목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재획정 요구

1. 제21대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제376회국회(임사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0. 3. 4.)는 귀 위원회에서 2020. 3. 3.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불합과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이에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재획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오니 2020. 3. 5. 09: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재획정요구서, 끝.



행정안전위원장

주무관	김삼문	입법조사관(4급) 이상준	전문위원	김승희	수석전문위원	조영
	03/04					
위원장						
협조자						
시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실-391	(2020.03.04.) 접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	(2020.03.04.)	회-340
우		/				
전화	2834	/전송		/ ksy0529@assembly.go.kr		/ 공개

▲ 행안위, 재획정 요구 공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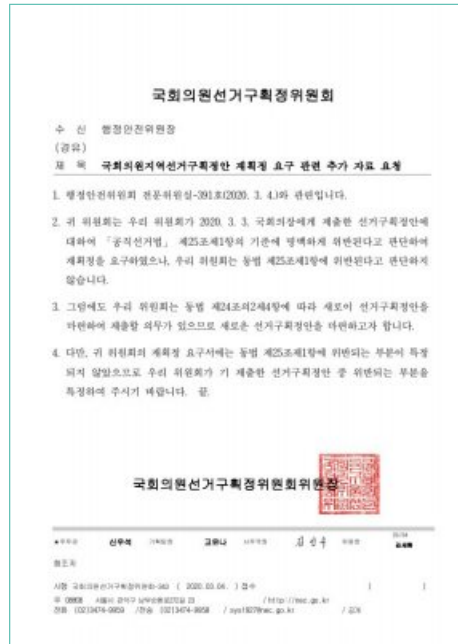
마. 위원회의 대응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획정위원회는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는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³¹⁾함에도 국회의 재획정 요구서에는 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여 위반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획정위원회는 위반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줄 것을 행안위에 요청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획정위원회는 앞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법 제24조의2에 따라 행안위가 요구하면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치권이 합의한 획정기준을 적용한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새로 송부된 선거구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획정 대상 선정, 대상 선거구 분석, 구체적 선거구획정안 논의 등의 과정이 필요했고 국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재제출하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2020년 3월 5일 12:00까지 제출할 수 없음을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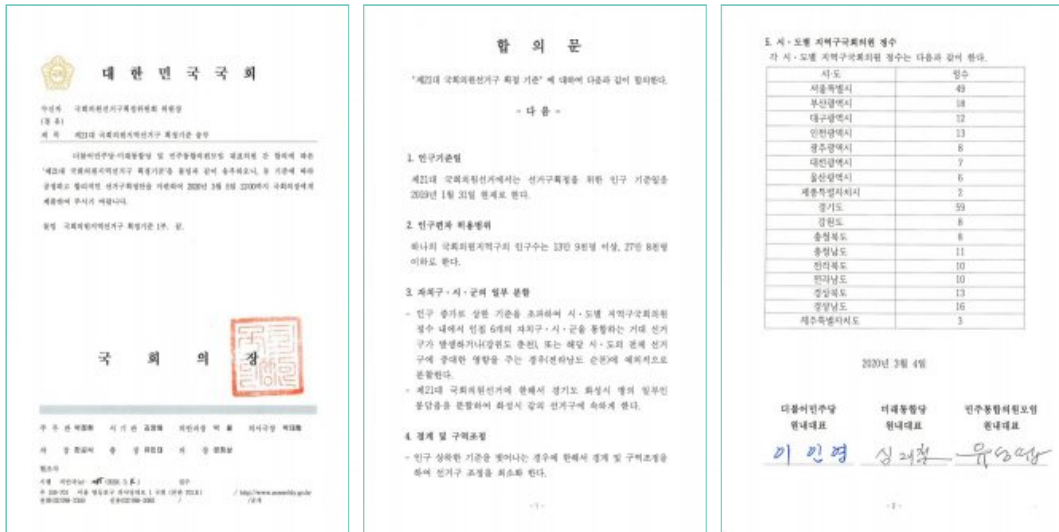
▲ 재획정 요구 관련 추가자료 요청

31)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은 동항 각호에 규정된 인구기준(인구기준일, 인구비례 2:1의 범위 포함)과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 원칙을 의미하며,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은 획정의 고려요소이다.

제3절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1. 선거구획정기준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및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구획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국회의장, 획정기준 송부 공문

▲인구기준일은 2019. 1. 31. 현재로 하고,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 9천명 이상, 27만 8천명 이하로 하며, ▲인구증가로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정수 내에서 인접 6개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 (강원 춘천시), 또는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남 순천시)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을 허용하는 것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 경기 화성시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하여 화성시갑의 선거구에 속하게 하며, ▲인구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경계 및 구역조정을 하여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시·도별 의석수는 서울 49,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59,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세종이 1석 증가한 반면 경기가 1석 감소하였다.

국회가 제시한 인구기준은 자체 획정기준 논의 시 제시된 「상향1안」과 동일한 것으로 군포시가 통합되어 경기에서 1석이 감소하고, 감소분을 세종으로 조정하여 선거구 변동 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화성시의 경우 행정동(봉담읍) 분할로 분구를 억제하였으며, 거대선거구 출현 및 대규모 구역조정이 불가피했던 강원과 전남은 춘천시와 순천시의 일부분할을 허용함으로써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하였다.

2. 선거구획정안 작성·제출

가. 획정대상 선정

국회에서 선거구획정기준이 송부됨에 따라 획정위원회는 기준에 맞는 획정대상 선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하한미달 선거구가 8개로 당초 획정에 비해 5개가 증가하였으며³²⁾, 상한초과 선거구는 4개가 줄어든³³⁾ 11개가 획정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중 당초 획정결과가 인구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2개 선거구(부산 남구, 전남 여수시)³⁴⁾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기존 획정 결과가 새로운 인구기준에도 부합하는 12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당초 선거구획정안과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안을 비교·검토하여 획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민원 등이 제기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초 획정의 결과를 존중하되, 영양군 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경북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다시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2) 인구하한 미달로 새롭게 획정대상이 된 선거구는 경기 군포시갑(138,410명)·을(138,235명),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136,942명), 전북 익산시갑(137,710명),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137,992명)의 5개 선거구이다. 이중 군포시갑·을선거구는 단순 통합대상이고 강원과 경북은 기 구역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새롭게 획정대상이 된 선거구는 전북 익산시갑선거구 뿐이다.

33) 인구기준상향으로 인천 남동구을(275,461명), 경기 수원시무(276,061명), 고양시정(277,912명), 전북 전주시병(273,429명) 선거구는 인구기준(139,000명~278,000명)을 충족하게 되어 불부합선거구에 제외되었다.

34) 획정위원회가 당초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획정 후 부산 남구갑은 138,935명, 전남 여수시을은 137,068명으로 새로운 인구기준(139,000명~278,000명)에 미달한다.

나. 선거구획정안 작성·제출

구역조정 대상 4개 시·도 중 인천, 경계조정대상 10개 구·시·군 중 세종과 광명시, 평택시, 용인시, 김해시는 당초 획정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인구기준 변동으로 재획정이 필요했던 부산 남구, 전남 여수시 및 새롭게 경계조정대상이 된 전북 익산시 역시 비교적 무난하게 합의에 도달하였다.

행정동을 분할해야 하는 경기 화성시의 경우 이미 선거절차사무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 투표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정을 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문제는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을 포함한 구역조정 대상인 강원과 전남, 민원 발생지역인 경북 등 3개 도(道)와 일부 선거구 인구기준 충족으로 재조정이 필요한 경기 고양시, 그리고 당초 획정 전후로 집단민원이 제기된 인천 서구 지역이었다. 특히 강원 지역은 속초시 고성군양양군선거구가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문제도 동시에 해결해야 했다.

획정위원회는 강원 의 흥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를 분리하여 인제군은 인구하한에 미달한 속초시고성군양양군에 통합하고,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은 춘천시를 일부분할하여 그 지역과 통합하며, 흥천군은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통합한 후 거대선거구를 방지하기 위해 태백시와 정선군은 동해시삼척시와 통합하였다.

전남은 순천시를 제외한 모든 선거구가 인구기준을 충족하여 순천시를 일부분할하여 그 지역을 인접한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에 통합하였다. 순천시의 일부분할은 변동폭을 최소화하되, 분할된 지역으로 하나의 도(道)의원선거구획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경북은 당초 획정과 마찬가지로 생활권을 존중한 구역조정을 실시하였고, 경기 고양시와 인천 서구에 대해서도 치열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면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다. 획정 시 주요 쟁점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언론에 공개되면서 재획정 기간 내내 선거구획정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주요 민원내용은 인천 서구 경계조정 의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리 반대, 강원 거대 선거구 문제 해결, 경북 북부권 4개 선거구 조정,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유지 등의 내용이었다.

집단민원 중 쟁점이 된 것은 인천 서구 경계조정이었으며, 인천 서구의 경계조정 시 갑 선거구에서 을선거구로 청라3동을 조정하자는 민원과 가정동을 조정하자는 민원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 청라3동을 조정하였으나 인구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가정동을 조정하는 안도 가능했으므로 양 지역에서 세를 과시하듯 폭발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이 두 안을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하였으며, 생활권, 도심구조, 을선거구와의 교통여건, 선거구 조정 후 인구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선거구획정안과 같이 청라3동을 을선거구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라. 선거구획정안 개요

1) 총괄

2020년 3월 6일 획정위원회는 국회에서 송부한 획정기준에 맞춰 다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인구수 최다 선거구는 고양시정선거구로 277,912명이고 인구수 최소 선거구는 여수시갑선거구로 139,027명이다.

1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1개 선거구가 통합되었다. 4개 선거구의 구역이 의석수의 변경 없이 조정되었고, 10개 자치구·시·군의 선거구 경계가 조정되었으며, 4개 선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시·도별 선거구조정 내역

모든 선거구가 인구기준을 충족하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제주 등 8개 시·도를 제외한 9개 시·도의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의석수가 증가한 시·도는 세종(1석)이고, 감소한 시·도는 경기(1석)이며, 그 외 시·도는 의석수에 변동이 없었다.

〈표 4-4〉 시·도별 선거구조조정 내역

시·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계	±0	253	253	
부 산	±0	남구갑·을	남구갑·을	경계조정
인 천	±0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구역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	경계조정
세 종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을	분 구
경 기	△1	부천시원미구갑·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갑·을·병·정	명칭변경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	경계조정
		고양시갑·을·병	고양시갑·을·병	경계조정
		군포시갑·을	군포시	통 합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	경계조정
강 원	±0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구역조정
전 북	±0	익산시갑·을	익산시갑·을	경계조정
전 남	±0	여주시갑·을	여주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구역조정
경 북	±0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안동시에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구역조정
경 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3) 당초 선거구획정안과의 차이

당초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획정기준과 비교하여 인구기준이 상향되고 시·도별 의석수가 조정되면서 선거구획정안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세종시 정수 증가로 인한 선거구 감소 시·도가 서울에서 경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는 기존대로 3개 선거구를 유지하게 되었고, 경기 군포시는 갑·을 선거구가 통합되어 단독선거구가 되었다.

강원 춘천시와 전남 순천시의 인구상한 초과문제 해결을 위해 당초 선거구획정안에서는 해당 시 분구(+1석) 후, 다른 지역 구역조정(-1석)으로 의석수를 유지하였으나 새로운 획정안에서는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을 허용함으로써 의석수를 유지한 것도 주요 변화 중 하나이다. 다만, 이로 인해 전남은 순천시와 광양시구례군곡성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강원은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거대선거구의 출현은 방지하였으나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이 인구하한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반적인 구역조정을 피할 수 없었다.

3. 지역선거구 법률안 심사

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제출 다음날인 2020년 3월 7일 행안위의 심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제안·의결되었고, 같은 날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1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7070호)이 공포되어 국회 의원지역선거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표 4-5〉 역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 일정

국회의원선거	인구기준일	획정위 보고서제출	국회 본회의의결	공직선거법 시행일	선거일
제17대	2003. 12. 31.	2004. 2. 27.	2004. 3. 9.	2004. 3. 12.	2004. 4. 15.
제18대	2007. 12. 31.	2008. 2. 25.	2008. 2. 22.	2008. 2. 29.	2008. 4. 9.
제19대	2011. 10. 31.	2011. 11. 25.	2012. 2. 27.	2012. 2. 29.	2012. 4. 11.
제20대	2015. 10. 31.	2016. 2. 28.	2016. 3. 2.	2016. 3. 3.	2016. 4. 13.
제21대	2019. 1. 31.	2020. 3. 6.	2020. 3. 7.	2020. 3. 11.	2020. 4. 15.

4.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경과조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것은 2019년 12월 17일이었다. 그리고 선거구구역표가 개정된 것은 이로부터 약 3개월 뒤인 2020년 3월 11일로 기존 선거구 구역표에 의해 등록한 예비후보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와 지역구 변경에 따른 선거사무소 이전, 선거비용 지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구역표 개정 시 부칙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선거구획정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경과조치의 주요 내용은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 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예비후보자 등록·홍보물 발송·선거사무소 설치·정당선거사무소 설치·선거 사무원 선임·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등이다.

제 5 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 제1절 내부평가
- 제2절 외부평가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제5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제1절 내부평가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의의

2018년 12월 7일 획정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고,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등이 확정되어야 획정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획정위원회로서는 첫 관문부터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획정 준비작업에 착수하였고 우선 구·시·군별 선거구획정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및 지원 프로그램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실시간으로 획정안을 비교·평가할 수 있어 선거구획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전문가 공청회, 정당 및 지역 의견수렴, 언론 분석, 각종 민원 접수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선거구획정안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선거가 임박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의 선거구와 생활권이 일치하게 조정하여 지역 주민의 선거구획정에 대한 수용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획정위원회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다. 획정기준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행안위 간사 회동에 참석하여 5개 이상 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분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의 수가 4개를 넘지 않도록 조정하여 제20대 획정 시보다 지역대표성이 개선되었다.

이번 선거구획정의 가장 큰 의의는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획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조정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획정위원회에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한 획정기준을 정하여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획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20대 선거구획정 시 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 및 위원들의 정치적 고려로 정당의 대리전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이번 획정 시에는 위원 구성 방식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각 위원들이 정당으로부터 독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으로써 획정위원회가 독립기구임을 정치권 및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문제점

가. 선거구획정 지연

선거구획정이 선거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제17대 선거구획정은 선거일 전 37일, 제18대는 47일, 제19대는 44일에 이루어졌고,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둔 제20대에서도 선거일 전 42일에야 선거구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3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일 전 1년까지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명문화하였으나 제21대 선거구획정 역시 선거일 전 39일에 확정되면서 입후보예정자 및 유권자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선거구획정이 지연된 것은 국회의 시·도별 의석수 등 구체적 획정기준 송부 지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획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획정기준을 정하여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기한을 일 년 가까이 넘기고 나서야 획정기준을 송부하였다. 그것도 획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획정기준에 따라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요구서와 함께 송부되었다. 획정위원회가 자체 기준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 획정기준을 기다렸다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의 기록을 넘어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논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비후보자등록 등 선거사무에 지장을 주고,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 인구기준 및 시·도별 의석수의 자의적 설정

인구기준 및 시·도별 의석수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법은 2:1의 인구비례를 제외한 인구기준 설정방법 및 시·도별 의석수 배정 방법과 결정주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구획정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인구기준과 관련하여 평균인구수에 상하 33⅓%를 가감하여 인구상·하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구범위를 설정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자체 기준을 마련할 때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근거로 인구범위를 설정하여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13만 9천명 이상, 27만 8천명 이하로 인구범위를 설정하여 송부하였고, 이는 특정 선거구의 분구에 따른 의석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선거구를 통합하려는 자의적 인구기준 설정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도별 의석수 역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른 적정 의석수 배정,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존중하기 위한 의석수 가감 등 합리적 기준에 따른 할당과는 거리가 있었다. 세종의 의석 증가분을 과다 대표된 서울에서 조정한 획정위원회의 당초안과는 달리, 4석이나 과소 대표된 경기의 의석을 추가 감소시킨 국회의 획정기준은 경기의 인구대표성을 더욱 약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기준 부재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는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고 있다.

시·도별로 할당된 의석수 범위에서 구역 및 경계조정을 하는 획정위원회로서는 현행 법제 하에서 사실상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획정위원회는 자체기준에 따른 획정 시 현행법에 따라 강원도 6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를 획정하였는데, 이는 강원도의 지역구수가 8석으로 정해진 상태에서 인구상한을 초과한 춘천시가 분구됨에 따라 구역조정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1석을 감소시켜야 했기 때문이며, 이로 말미암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뿐만 아니라 인구대표성도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라.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의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정당 및 국회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구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1대 획정 시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 정치적 고려에 따른 획정기준 제시, 획정위원회가 논의 중인 선거구획정안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

국회의 재획정 요구는 획정위원회가 공정하게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는 획정위원회가 2020년 3월 3일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하여 법 제25조제1항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회는 재획정 요구와 동시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획정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하였는데, 획정기준에 경기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도록 하였고, 인구기준 불부합 지역에 대해서만 선거구 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획정기준은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 중 경기 화성시와 안산시를 각각 1석씩 증감한 것을 이해당사자인 여야가 불합리하게 조정한 예에 해당되며, 인구기준에 불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획정기준 또한 생활권 등을 종합하여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획정위원회의 획정 권한을 제약하고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구체적 획정기준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획정위원회위원장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해 설명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던 막바지인 2020년 3월 2일에는 진행 중인 선거구획정안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제도 개선방안

가. 시·도별 지역구 정수 할당방법 및 인구편차 허용범위 법제화

획정절차 지연 및 선거구획정안의 불합리한 조정은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현재와 같이 이해당사자인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구조에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의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거구획정의 불합리한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도별 지역구 정수 할당 방법으로 시·도별 인구비례에 따라 정수를 할당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일정한 가산을 하는 방법으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의석수를 배정하여, 배정된 의석수 내에서 획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을 허용하는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편차를 따지는 방식으로 인구범위를 설정하도록 법제화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른 조정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방안 법제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도별 의석수를 할당할 때 도(道)지역에 일정한 가산을 주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획정에서 본 바와 같이 강원과 같은 도(道)지역에서 어느 하나의 시가 분구 되는 경우 인접한 선거구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이 약화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할 것이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시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표 4-6〉 국회의장이 송부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기준(일부 발췌)

- 하나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자치구·시·군 수의 한계
→ 5개 이상 자치구·시·군 관할구역에 걸쳐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도록 함.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 5개 이상 자치구·시·군에 걸치지 아니하면 하나의 선거구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다.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시·도별 의석수 할당방법 등 구체적 획정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방안이 법제화되면 선거구획정의 지연 문제나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에서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장기간 심사하지 않거나, 심사한 후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지도, 획정위원회에 재제출을 요구하지도 않는 경우 등 법정기간 내에 획정을 어렵게 하고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도과한 선거구획정안의 효력에 대한 간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에서의 위원 추천 절차가 법에 따라 조속히 이루어져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되어야 하며, 위원 결원 발생 시 추천 절차도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선거구획정안 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법의 명백성’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백히 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는 것이 획정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제2절 외부평가

선거구 획정 관련 쟁점 및 제언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구본상 교수

I. 서론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 간, 의원 간 양보 없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지역선거구 획정일 것이다. 유권자들의 선호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만으로 선거 결과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존 선거구 크기에 관한 규정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201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독립적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를 처음으로 구성하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미 2018년 9월부터 획정위가 구성되었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정당 간 첨예하게 맞서면서 이들의 활동은 차질을 빚었다. 이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비례대표 의원 수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지역선거구 의원 정수가 달라지는데, 일단 지역 선거구 의원 정수가 확정되어야 선거구 획정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획기적인 개선으로 기대를 모았던 현행 선거구획정제도는 두 번째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한계를 드러낸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획정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해외 사례를 선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장은 우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제도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 문제점 및 관련 규정을 분석한다. 쟁점은 획정위의 독립성, 획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획정 결과의 공정성 및 정치적 대표성, 선거구의 현상 유지를 바라는 정당의 집합체인 국회의 전략적 행동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사례, 특히 민주주의 경험이 많은 국가를 점검해 볼 것이다. 이때 획정제도와 획정 과정, 그리고 획정 상하한 편차를 중심으로 다룬다. 특히, 단방 국가(unitary state)로서의 한국, 선거제도(소선거구제 하 단순다수제), 독립적 기구로서의 획정위 등을 고려할 때 영국의 선거구 획정제도와 획정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에 직접 참여한 획정위 위원의 인터뷰와 두 차례에 제출된 획정안을 분석함으로써 이번 선거구 획정에 관한 쟁점 사항을 평가한다. 그리고 향후 더 나은 획정위 활동과 공정한 결과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II. 선거구 획정 관련 쟁점

1. 획정위의 독립성

획정위가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그간 획정위의 활동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이었다. 2015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전까지 국회에 소속되었던 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적 기구로 출범한 것이었다. 이는 그간 정당 간 타협과 현직 의원의 비공식적 영향력 행사를 통해 선거구가 획정되어왔고, 이것이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제약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다.

공정한 획정위 활동의 출발은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획정위 위원의 선정일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한국정치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획정위 위원 선정의 주체가 국회 외부의 완전한 독립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반 국민의 45.6%가 찬성(반대 23.6%)하였고, 학계는 무려 92.5%가 이에 동의하였다.¹⁾

그러나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했던 김대년 획정위 위원장이 중도 사퇴한 것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당의 영향력은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 비율, 그리고 의결 정족수 관련 문제로 표출되었고, 궁극적으로 획정위의 독립성에 의구심이 제기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선정되는 8인의 획정위원은 국회가 정당 및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의결을 통해 선정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를 위촉하게 되어 있었다. 여야가 선정한 각 4인으로 획정위가 구성될 경우 이들 간 의견 대립을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이 문제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선거구 획정안 도출이 지연되었다(손병권 2016). 이처럼 획정위의 실질적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획정위와 관련하여 제시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독립성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국회 추천 몫을 줄이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획정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제기되었다. 2019년 1월에 개최된 공청회에는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한애국당)에서 추천한 7명, 학회(대한지리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에서 추천한 4인이 진술을 하였다. 획정위의 독립성 제고와 관련하여 김동욱(서울대) 교수는 9명의 획정위 위원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지명하는 획정위 위원을 3명으로 늘리고, 국회 소관 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6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명호

1) 2016년 조사에 참여한 대상은 일반인 1,215명, 전문가 107명(학계 67명, 정치권 13명)이다.

(동국대) 교수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국회 추천 인원을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획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만약 획정위가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지녔다고 전제할 때, 제기되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획정 과정에서의 합리성이다. 여기에는 획정위 결정 정족수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최종 확정안은 획정위원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즉 초다수제(supermajority rule)가 적용된다. 초다수제에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동의는 졸속 결정을 방지할 수 있고, 결과에 더 많은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초다수제하에서 찬반이 팽팽할 때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교착 상황(gridlock)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적정 정족수에 대한 의견에서 국민과 전문가는 차이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2016년 여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현행대로 초다수제 정족수 유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48.9%이고, 과반수 의결로 바뀌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21.6%로 나타났다. 그 외에 만장일치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각각 5.0%와 24.5%였다. 반면, 전문가들 가운데 현행 초다수제 유지는 52.3%로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과반수 의결로 바꾸는 것에 찬성은 무려 42.1%로 일반 국민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20.5%p). 이는 당시 정파적으로 갈린 획정위에서의 교착 상태를 인지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정족수 기준을 초다수제에서 다수제로 완화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비록 작은 표본 크기(N=13)이기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과반(다수제)으로 의결 정족수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비율이 7.7%(1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현상을 유지하거나(76.9%, 10명) 오히려 만장일치로 그 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15.4%, 2명)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는 정치권이 획정위의 독립성은 물론 획정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 혹은 선거구 획정의 급격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현실적 이유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

이처럼 획정위 정족수는 이번 획정위가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언급된다. 제20대 획정위 위원이었던 조성대(한신대) 교수는 획정위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의 의사결정 전체를 교착 상태에 빠뜨릴 수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용훈(대구카톨릭대)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준을 과반으로 낮추는 대신 재적 위원 2/3 이상의 정족수는 유지하되, 선호투표 방식 적용을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다수의 안이 존재할 때 선호투표를 통해 교착을 피하면서도 개별 의원의 선호를 더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재적인원에 관한 규정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확정위원 9명 가운데 사퇴 등으로 인해 인원이 감소하면 의결을 도출하기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9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 위원 1명이 사퇴함으로써 8명 가운데 6명의 동의를 얻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위원 1명 사퇴 시 재적인원을 8명으로 조정하면 의결 정족수는 5명($8 \times \frac{2}{3} = 5.33$)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더 쉽게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다.

3. 확정 결과의 공정성

선거구 확정 결과의 공정성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 판결(2014헌마53)의 요지는 선거구 확정의 다양한 기준 가운데 인구대표성, 즉 형식적 표의 대표성이 생활권과 같은 실질적 대표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이 확정 기준에 충실하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았던 수도권 지역(경기도, 인천)의 의석수는 증가하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석을 배정받아 온 영호남 지역에서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 결과, 영남 기반의 보수 정당(현 미래통합당) 대 호남 기반의 민주당계 정당의 지역정당구조는 완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인구편차의 설정이 요구된다.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완화할수록 과소대표되는 지역과 과대대표되는 지역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 위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안 되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상하 편차가 선거구 평균 인구의 33⅓%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적인 확정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이 위헌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의 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인구편차 설정은 지역대표성을 약화할 수 있다. 즉 생활권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대표를 뽑게 될 수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강원도 지역의 경우 거대공룡선거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박한철, 이정미, 서기석 재판관은 “2001년 당시 상하 50% 기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모두 해소되어 상하 33⅓%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도농 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지역 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며, 선거구 확정에 있어 행정구역의 분리 금지 및 국회의원 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장애 요소 역시 2001년과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며 “다수의견에서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²⁾

결국, 획정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인구편차의 조건 충족 하에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강조했다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활권의 고려했는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을 최대한 준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³⁾

4.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국회의 전략적 행동

현재 선거구획정제도는 획정위를 독립적 기구로 만들면서 국회와 정당이 획정위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정당은 위원 추천을 통해 획정위 구성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획정안 결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나아가 원내 정당들이 모인 집합적 행위자(collective actor)로서 국회는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을 지연시킬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의원 정수, 그리고 시·도별 정수를 국회가 선정한다는 현행법 해석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 정수 결정을 미룸으로써, 그리고 시·도별 정수 결정을 미룸으로써 획정위의 획정안 작성을 무력화할 수 있다. 특히,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이 모두 현행 선거구의 유지를 원할 경우, 이 가능성은 매우 커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 확정은 원래 선거일 전 1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번번이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고,⁴⁾ 시간이 흐를수록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국회에 유리해졌다. 즉 시간은 정치인의 편이었다.

무엇보다 의원 정수와 시·도별 정수 결정을 계속 늦추게 되면, 획정위는 구체적인 획정안 작성 자체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국회가 현행 선거구 획정을 유지를 원한다면, 가능한 한 의원 정수와 시·도별 정수 결정을 지연함으로써 획정위의 독자적 획정안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

설령 의원 정수와 시·도별 정수가 결정되더라도 국회는 여전히 획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획정 과정을 살펴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획정위가 독자적 획정안을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상임·특별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2)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원 확인[전원재판부 2012헌마190, 2014. 10. 30.]
<http://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41533>

3)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은 “국회의원의 지역선거구는 시·도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 고려하여 획정하되,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하여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지역대표성을 강조하고 있다.

4)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65일 전에, 제17대는 37일 전, 제18대는 47일 전, 제19대는 44일 전, 제20대 국회에는 42일 전, 제21대는 39일 전에 확정되었다.

수정 없이 선거구법률안 마련한다. 단, 획정안이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1회에 한해 획정위에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획정위는 1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1회에 한해 획정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함으로써 그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사실 지역·도농 간 인구수 격차가 뚜렷하고 의원정수 증가의 가능성이 제약된 현 한국의 상황에서 인구대표성을 향상하면, 지역대표성이 손상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원칙을 위반하는 지역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즉 국회는 어떻게든 획정안을 문제삼아 획정위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재획정안 제출을 요구하면, 획정위는 1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가 임박하면 국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III. 해외 사례 분석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평가하고 현행 제도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주의 경험이 오래된 국가의 선거구획정제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우선 선거구 획정 주체의 독립성에 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선거구획정제도를 살펴본다. 또한, 선거구 획정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획정 절차에서의 합리성 수준과 의회의 전략적 행위 가능성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획정 결과의 공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연방제 여부와 선거제도와 연계하여 살펴본다.

〈표 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회원국 가운데 11개 국가(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멕시코, 호주)의 선거구획정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구 획정 대상인 의회가 선거구 획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영국을 비롯해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와 호주는 중립적 위원회를 두고 이들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역시 중립적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는 상설화되어 있다. 나머지 국가들은 정부산하기구(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선거관리조직(스웨덴, 멕시코), 또는 연방내각(스위스)에서 선거구 획정을 담당한다.

〈표 1〉 주요국의 선거구획정제도

국가명	선거구 획정기관	입법부의 역할	재획정 주기
영국	중립적 위원회	입법 지연 가능	5년마다 심사
미국	주단위 입법부 독립적 기구, 병립	실질적 권한	10년
프랑스	정부산하기구	없음	12~14년 필요에 따라
독일	중립적 위원회 (상설합의제기관)	없음	4년
일본	정부산하기구	입법 지연 가능	10년
이탈리아	정부산하기구	없음	기본적으로 고정,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스웨덴	중앙선거청	없음	기본적으로 고정,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스위스	연방내각	없음	기본적으로 고정,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
캐나다	중립적 위원회	입법 지연 가능	10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없음	10년
호주	중립적 위원회	없음	7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 152; Ace The Electoral Knowledge Network(aceproject.org).

미국은 주(州)별로 선거구 획정 기관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선거구획정은 주(state)의 권한에 속한다. 38개 주는 주의회가 선거구를 획정하고, 7개 주(아리조나, 하와이, 메인, 몬테나, 아이다호, 워싱턴, 뉴저지)에서는 독립적 기구가 선거구 획정을 담당한다. 나머지 주에서는 두 방식을 병행한다. 베스트와 동료(Best et al. 2019)의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 선거구 획정기구가 있는 7개 주 가운데 일부는 획정 결과가 오히려 정파적(partisan)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적어도 독립적 선거구 획정 기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정파적 획정 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주의회가 실질적 권한을 지닌 미국을 제외하면, 입법 지연을 통해 의회가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허용하는 국가는 영국, 일본, 캐나다 정도이며, 다수 국가에서는 의회의 선거구 획정 간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게임의 행위자(players)가 게임의 규칙(rule of the game)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획정 주기는 독일(4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7년 이상이며, 기본적으로 인구조사 결과와 연계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만이 재획정 주기에 관한 법 규정이 없다.

위의 국가 가운데 영국의 선거구획정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영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The Boundary Commission)는 비정치적·중립적·독립적 기구로 규정된다. 하원의석 재배정법(The House of Commons (Redistribution of Seats) Acts)에 따라 영국 내 잉글랜드·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에 상설기관을 설치하였다. 몇 차례 개정 이후 1992년 선거구획정위원회법(The Boundary Commissions Act)으로 개정해 선거구 획정을 8~12년 사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실제로 위원회는 ‘선거구획정개정안’을 관계 장관에게 권고하며, 정기보고 외에도 특정 선거구에서 재획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면 수시보고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총 4인(위원장, 부위원장, 관계 장관이 임명하는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의장이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해당 지역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법관 1명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고, 관계 장관이 임명하는 2명이 위원이 된다. 위원은 각 정당 간 협의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많지만 의원은 아닌 사람 가운데 선임한다.

영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에서 주목할 점은 하원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는 점이다. 영국의 하원의장은 다수당 의원 가운데 선정되지만, 의장직 수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장이 되면 당적을 이탈한다. 하원의장은 선거에 출마할 수는 있지만, 정당 소속으로 나오는 대신 ‘재선을 노리는 의장’(Speaker seeking re-election)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하게 된다. 은퇴 이후에도 정치적 이슈에 참여하지 않고, 상원의원이 되더라도 무소속 중립의원(cross-bencher)이 된다. 물론, 하원의장은 통상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철저히 중립성을 지닌 인물인 하원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즉 획정위원회가 정파성에 휘둘리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표 2〉는 주요국의 선거구 획정 절차를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선거구획정안의 의회 승인 절차가 없는 국가도 다수라는 점이다. 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더라도 다수 주에서 주의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는 미국을 제외하면, 의회가 획정위의 획정안에 근거해 확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영국의 경우 의회의 표결을 통해 획정안이 결정되지만,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고 단지 가부(可否)만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획정안을 부결한 선례도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 의회의 간여는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주요국의 선거구 확정 절차

국가명	선거구 확정위(소속)	확정절차 및 안 작성	의회의 수정 가결 여부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각각 상설독립기관인 선거구확정위원회 설치	① 확정위가 확정안을 내무장관(관계 장관)에게 제출 ② 내무장관이 의회에 제출 ③ 의회에서 표결 통해 통과	의회는可否만을 결정, 내용 수정은 불가능(실제로 확정안 부결한 선례 없음)
미국	대다수 주(38개 주)가 별도의 선거구확정위를 두지 않음	주 의회에서 주법으로 선거구 확정	주의회에 결정권이 있음
프랑스	정부 산하기구로 자문기구임	① 헌법평의회가 선거구확정 지침 마련 ② 최고재판소가 최종 결정	의회 승인 절차 없음
독일	중립적 선거구확정위원회(상설합의제기관)	① 확정위가 내무장관에 확정 관련 보고서 제출 ② 내무장관은 하원에 보고서 제출, 이를 연방관보에 공표	위원회 보고서에 기초하여 의회에서 선거구 확정에 관한 입법 심의를 함
일본	중의원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내각부 산하)	① 확정위가 총리에게 권고안 제출 ② 총리가 이를 의회에 보고 ③ 의회에서 선거구 확정	확정안에 기초하여 의회에서 법률형식으로 선거구를 확정함
이탈리아	정부 산하기구	내무장관이 통계청 인구조사에 기초하여 소선거구 의석 배분 상정 후 공고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회 승인 절차 없음
스웨덴	중앙선거청	① 중앙선거청이 선거법 내용에 따라 선거구별 의석 배분 ② 즉각 효력 적용	의회 승인 절차 없음
스위스	연방내각	인구조사에 따라 각 주에 의석 배분	의회 승인 절차 없음
캐나다	각 주에 중립적 선거구확정위 설치	① 확정위가 확정안 작성한 후 선관위 원장에게 보고 ② 선관위장이 하원에 확정안 제출 ③ 하원의 승인으로 확정	하원에서 확정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해당 주 확정위에 재심의 요청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	인구,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확정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음
호주	각 주에 선거구확정위 설치(연방선거위원회의 하부 기관임)	① 주확정위가 확정안 작성 ② 공개된 확정안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이의제기 허용 ③ 확대선거위원회가 이의 심사 후 최종 결정	의회의 승인 절차 없음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 153; Ace The Electoral Knowledge Network(aceproject.org).

이제 획정 결과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인구편차가 국가마다 어떻게 다른지 검토해 보겠다. 선거구 획정 기준의 엄격성은 연방제 여부와 선거제도, 특히 선거구 크기(district magnitude)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방제 국가(federal state) 가운데 미국처럼 인구학적 구성(demographic makeup)이 유사하지 않은 영토 단위(예: 주)로 구성되는 비일치성(incongruent)과, 중앙정부에 대해 각 영토 단위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대칭성(symmetric)을 지녔을 때 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경향을 보인다. 개별 주의 크기와 상관없이 2명씩 의원을 배정하는 상원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veto rights)을 가진다. 즉 규모가 작은 주도 연방정부에 대해 큰 주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하원 의석 배정에서 철저한 인구비례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구편차 기준의 엄격함은 선거제도와도 연관된다. 단순다수제(plurality)이며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경우 설령 엄격한 인구편차 기준을 가지더라도 선거구 획정에 따라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만약 인구편차 기준마저 까다롭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 결과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연방제 이면서 동시에 선거구 획정에 민감한 선거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 기준을 계속 강화해왔다고 볼 수 있다. <표 3>에 나타나듯이, 미국 하원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은 상하 0.7%에 불과하다.

〈표 3〉 주요국의 선거구 확정 기준

국가명	인구편차	근거법령 및 판례	연방제	선거제도
영국	각 지역별로 전체 유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평균유권자 수(Electoral Quota)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선거구 확정	선거구획정위원회법 (1992)	단방제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미국	인구편차 0.7% 위헌(뉴저지주) 인구편차 0.35% 초과 합헌	Karcher v. Daggett (1983) Abrams v. Johnson (1997)	연방제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프랑스	동일 지역 내에서 인구편차 20%,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2010년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구 편차(프랑스 본토)는 3.6:1에서 2:1로 감소	선거법(1986 개정)	단방제	절대다수제 (소선거구제)
독일	인구편차 15% 인구편차 25% 초과시 재획정	연방선거법 제3조	연방제	혼합형비례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일본	인구편차 33.3%	중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 설치법 제3조	단방제	혼합형다수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이탈리아	선거구별로 인구통계에 비례해 의석 배분 ; 인구편차 10%	선거법 제1조	단방제	혼합형다수제 (소선거구제 + 전국비례제)
스웨덴	인구와 자연발생적 경계에 근거해 선거구 설정	2005년 선거법 제4장	단방제	비례대표제 (권역별)
스위스	각 주에서 선거구 구성	헌법 제53조	연방제	비례대표제 (권역별)
캐나다	인구편차 25%	선거구경계재조정법	연방제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멕시코	최대한 규칙적 모형(인구, 자연발생적 경계, 구역밀집도, 지방행정구역, 문화권 고려)	2014년 선거법 제32조	연방제	혼합형다수제 (소선거구제 + 전국비례제)
호주	인구편차 10%; 재획정(7년 주기) 후 3년 6개월에 인구편차 3.5%	연방선거법 제58조	연방제	선호형 (소선거구제)
뉴질랜드	인구편차 5%	1993년 선거법 제36조	단방제	혼합형비례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p. 154; Ace The Electoral Knowledge Network(aceproject.org).

그러나 단방제의 경우, 미국 연방제에서 상원처럼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정치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즉 하나의 원(chamber)로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선거구 획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다. 또한, 비례대표제에서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구편차 기준을 맞추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는 스웨덴과 스위스의 경우 인구편차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결국, 우리나라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함의를 줄 수 있는 해외 사례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국가이다. 둘째, 선거구 획정을 담당하는 독자적 조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연방제가 아닌 단방제 형태의 국가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영국이 한국의 조건과 가장 유사하다 볼 수 있다.

영국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인구편차에 대한 수치화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법(1992)에 따라 전체 유권자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눈 평균 유권자 수(electoral quota)가 기준이 되고, 가능한 한 평균유권자 수에 근접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평균유권자 수가 지역별로 구해진다는 점이다. 즉 영국은 우리와 유사한 조건에서도 인구편차를 구체적 수치로 표시하지 않았고, 평균유권자 수도 지역별로 설정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독특하면서도 매우 이상적인 획정 기준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높은 수준의 중립성을 지니고 있고, 개별 정당은 이들의 획정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크다 할 것이다.

IV. 쟁점의 종합적 평가

1. 획정위의 독립성 향상

〈표 4〉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이다. 2015년 6월 19일에 시행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국회의 의결로 선정한다. 이에 소관 상임위원회였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 명단을 확정하여 가결했다.

〈표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분	이름	경력	비고
위원장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중앙선관위 위원장 지명
위원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위원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한국정치학회 추천 / 정치학 전공
위원	이덕로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한국행정학회 추천 / 행정학 전공
위원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위원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위원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국선거학회 추천 / 정치학 전공
위원	한표환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산학협력중점교수	· 한국지방정부학회 추천 / 정책학 전공
위원	유진숙	배재대 정치언론학과 교수	· 한국정당학회 추천 · 2018. 12. 5. 해촉(사직) · 정치학 전공

앞서 언급했듯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획정위의 독립성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획정위는 얼마나 독립적이었을까?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 활동과 비교해 볼 때, 정당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거나 논의가 빈번하게 중단되었던 획정위 모습을 감지할 수 없었다. 적어도 이전 획정위보다는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근본적 제도 변화 없이도 이러한 차이를 낳았을까?

그 원인을 획정위 위원 선정방식 변경에서 찾을 수 있다. 획정위원 A의 인터뷰에 따르면, 기존의 획정위원 선정은 학계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 가운데 각 정당이 맘에 드는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 정당이 기피하는 후보를 배제하고 잔류한 인사들로 획정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획정위원 선정 방식의 변경이 이번 획정위가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획정위원 A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물론 획정위원의 개인적 정치 성향은 있겠으나 획정위 활동 중에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다른 획정위원과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획정위원 B도 이전과 비교할 때 이번 획정위 활동은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대체로 자유로웠다고 응답하였다. 적어도 제20대 획정위에서 획정위원이 정당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이번 선거구 획정에는 정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획정위의 독립성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음을 고려하면, 정당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향상은 획정 결과의 공정성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획정위원의 정수나 국회 추천 위원의 축소와 같은 변화 없이 기피 후보 위원 배제 방식을 사용하여 목표로 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배제 방식의 획정위 위원 선정 방식이 향후에도 독립성 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낙관하기는 어렵다. 사실 배제 방식의 위원 선정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2018년 12월 유진숙 위원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하게 되면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한국선거학회가 안용훈 대구카톨릭대 교수를, 한국정당학회가 이소영 대구대 교수를 획정위원 후보로 추천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하였다. 안용훈 교수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 위원회에, 이소영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적이 있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이후 국회는 추가 획정위원 추천을 받는 것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8명으로 구성되어 최종 획정안 작성까지 가게 되었다. 9인으로 획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결원 시 학계의 추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8인으로 구성된 획정위로 가게 된 것이다. 이는 이후에 언급할 정족수 문제를 낳게 되었다.

이처럼 배제 방식의 획정위 위원 선정이 독립성 제고에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 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선정과정에서 국회의 간여를 대폭 축소하거나 완전하게 배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여전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 선진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에서도 국회의 간여를 배제하는 사례가 다수라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 획정 과정에서의 합리성 추구

획정위의 독립성 못지않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됐던 것이 획정위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이었다. 획정과정에서의 교착을 피하고자 초다수제를 다수제로 완화하자는 주장과 오히려 이를 만장일치로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현실적으로

현행 기준을 그대로 둔 채 선호투표 방식을 운용하여 교착을 막자는 대안도 제시되었다. 실제로 이번 획정위에서 의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 획정위 시기 목격했던 빈번한 교착 상태는 감지되지 않았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에는 획정위 위원 9명 가운데 유진숙 위원이 사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직자는 재적 위원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원을 보충하지 못한 채 획정위 활동을 종결하였다. 획정위원 A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8명보다는 9명이면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교착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위원이 하나라도 더 있을수록 더 좋은 획정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 유진숙 위원이 계속 남아있었다면 거주지인 충청지역 선거구 획정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했다.

획정위원 B도 이에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사직자가 있어 교착 가능성을 줄였다고 볼 수 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리고 실제로는 획정위원 8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2/3가 동의하는 구조로 의사결정이 진행되었고, 1명만 반대 또는 기권하는 소수의 사안을 제외하면 대부분 만장일치로 논란 없이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획정위 위원 선정의 중요성이었다. 즉 획정위 위원이 제대로 선정되면, 쟁점이었던 획정위의 독립성과 획정 과정에서의 합리성에 대한 우려를 현행 법령하에서도 얼마든지 불식할 수 있다는 점이다.

3. 획정 결과의 공정성 노력과 한계

앞서 언급한 획정위의 독립성과 획정 과정에서의 합리성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획정 결과의 객관적 공정성은 별개의 문제이다. 즉 획정위의 독립성이 향상되고, 획정 과정에서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획정 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면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먼저 획정된 선거구의 객관적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별 의원 정수에서의 불균형이다. 그동안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정당체제의 지속은 호남·영남에게 유리한 의석 배분을 초래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특히 경기도와 인천의 유권자들은 과소대표 되었다. 둘째, 거대 선거구 문제이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 선거구의 물리적 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셋째, 지역대표성 문제이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넷째, 최소 인구수의 자의적 설정 여부이다. 최소 인구수를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 최대 인구수도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기존 정당이 기대할 수 있는 의석수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는 정당 간 선호가 갈리는 부분이다.

우선 시·도별 의원정수에서의 불균형이 개선되었는지 살펴보겠다. <표 5>는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도별 의원정수를 비교한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면 세종에서 1석이 증가하고 경기도에서 1석이 감소한 것 외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는 국회가 시·도별 의원정수를 늦게 결정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명목 아래 변화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부산, 광주, 충남, 그리고 전북은 적정 의석 대비 더 많은 의석을 배정받았다. 반면, 인천과 경기도는 적정 의석보다 더 적은 의석을 배정받았으며, 특히, 경기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오히려 1석이 더 감소하였다.

<표 5> 시·도별 의원정수 비교, 제20~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	적정 의석 (인구 대비)	가능 의석	20대 국회 의석	21대 국회 의석	증감
서울	47.67	48석	49석	49석	-
부산	16.78	17석	18석	18석	-
대구	12.01	12석	12석	12석	-
인천	14.42	14석	13석	13석	-
광주	7.13	7석	8석	8석	-
대전	7.27	7석	7석	7석	-
울산	5.64	6석	6석	6석	-
세종	1.55	2석	1석	2석	+1
경기	63.90	64석	60석	59석	-1
강원	7.53	8석	8석	8석	-
충북	7.81	8석	8석	8석	-
충남	10.38	10석	11석	11석	-
전북	8.96	9석	10석	10석	-
전남	9.17	9석	10석	10석	-
경북	13.05	13석	13석	13석	-
경남	16.47	16석	16석	16석	-
제주	3.26	3석	3석	3석	-

주: 붉은색은 적정 의석보다 적게 할당된 지역, 푸른색은 적정 의석보다 많이 할당된 지역; 인구는 2019년 1월 31일 기준임.

경기도의 문제는 단순히 현재 경기도 유권자가 과소대표된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획정 기준일이었던 2019년 1월 31일 이후 경기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다음 국회의원선거에는 현행 인구수 2:1 기준에 의하면 분구될 가능성이 큰 선거구가 많다. 예를 들어, 현재 4석인 고양시는 신도시 건설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용인시(4석)와 화성시(3석) 역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다음 선거에서는 분구가 거의 확실시 된다.

결국, 다음 선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줄이거나, 그것이 현역 의원 및 정당의 저항에 부딪히면, 비례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례성 향상을 위해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계속 비례의석 수를 줄이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획정위원 A는 인터뷰에서 시·도별 의원정수와 관련하여 획정위에서는 별다른 논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획정위 위원들 간에는 인구대표성이 선거구 획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 또한, 인구 이외에도 지역(면적), 생활권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든 위원이 공감했다. 그러나 시·도별 의원정수는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개정 없이 획정위가 임의로 이를 결정할 수 없었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획정위 내부에서는 이 문제는 크게 쟁점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⁵⁾

물론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획정위가 시·도별 정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 정수는 국회가 결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서 이를 결정했던 것이 관행이었기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정위가 선거일 43일 전인 2020년 3월 3일 독자적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획정안 제출을 더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는 것이 획정위 측의 주장이다. 즉 시·도별 정수는 정당 간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선거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책임을 획정위에 넘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시·도별 정수 미결정으로 인한 획정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선거법을 개정하여 시·도별 정수 결정 권한을 명확하게 획정위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거대 선거구 출현의 문제를 살펴보겠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 선거구의 물리적 크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표 6>은 획정위의 1차 획정안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를 비교한 것이다. 전구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설정하였다. 분구 기준을 충족한 춘천시 선거구를 분구하면서, 6개의 시·군이 결합한 선거구(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거대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이에 강원 지역 정치인과 유권자들은 생활권과 지역대표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5) 반면, 획정위원 B는 인터뷰를 통해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하는 권한이 국회에만 있다고 보지 않는 의견을 획정위에서 받아들인 것은 시·도별 의원정수가 획정안과 함께 공식선거법상 발표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는 입법 사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이에 동조하는 법률가 출신 획정위원의 의견에 따른 것일 뿐 모든 획정위 위원이 이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표 6〉 1차 확정안(2020년 3월 3일 국회 제출)

시·도	증감	현행	확정안	비고
계	±0	253	253	
서울	-1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통합
부산	±0	남구갑·을	남구갑·을	경계조정
인천	±0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구역조정
		남동구갑·을	남동구갑·을	경계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	경계조정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을	분구
경기	±0	수원시 병·무	수원시 병·무	경계조정
		부천시 원미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부천시갑·을·병·정	명칭변경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	경계조정
		안산시상록구갑, 안산시상록구을, 안산시단원구갑, 안산시단원구을	안산시갑·을·병	통합
		고양시갑·을·병·정	고양시갑·을·병·정	경계조정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분구
강원	±0	춘천시	춘천시갑·을	분구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통합
		전북	±0	전주시갑·병
전남	±0	여수시갑·을	여수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	순천시갑·을	분구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통합
경북	±0	안동시	안동시·예천군	구역조정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구역조정
경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출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3월 3일)

획정위의 획정안 제출 전에는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특히, 영주시·문경시와 묶였던 예천군을 경상북도청을 공동으로 유지하여 도청이 경계지역에 위치한 안동시와 묶어 선거구를 만든 것은 지역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됐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문경시는 영주시와 하나로 묶였으나, 지역생활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주시와 문경시는 신라 시대부터 생활환경이 동일한 공동체였으며, 통행량을 볼 때 문경시는 상주시와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다.⁶⁾

새롭게 구역이 조정된 영주시·봉화군·영양군·울진군 선거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선거구도 생활·경제권이 동일하고,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는데, 이것이 획정안에 받아들여졌다. 또한, 울릉군을 포항남구에 합하는 것이 인구비례와 문화권 차원에서도 더 적절한 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획정위원 B 인터뷰에 따르면, 획정위 내에서 가장 격론이 있었던 쟁점 가운데 하나가 경북 내 지역구 구역 재조정 문제였다. 이는 경북지역 선거구를 획정할 때 획정위 내에서도 인구수 기준, 지역대표성, 거대선거구 방지 등 여러 획정 근거가 충돌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도출한 경북 지역 선거구획정안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지역대표성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최소 인구수의 자의적 설정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 최초 제출안은 전구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한 두 개 기준을 엄격하게 따른 것이다. 그러나 각 정당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최소 인구 선거구를 원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된 4+1은 김제시·부안군(139,470명)을 하한선으로 하고자 했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동두천시·연천군(140,541명)을 최소 인구 선거구로 선정하고자 했다.⁷⁾

그러나 획정위의 획정안이 제출되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획정안이 강원도에서의 거대 선거구를 만들고, 노원구 합구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획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⁸⁾ 이에 획정위는 제출한 획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줄 것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여야 3당은 강원도의 거대 선거구 조정, 노원구 합구 외에 인구 상하한선을 139,000명 이상 278,000명 이하로 합의한 후 이를 적용해 줄 것을 획정위에 요청하였다. 이에 획정위는 2020년 3월 6일 수정한 획정안을 제출하였다. <표 7>은 재획정안을 정리한 것이다.

6) 대구경북연구원. 2015.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보고서', p. 20.

7) 4+1의 안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상한선을 넘어 분구해야 하며, 자유한국당 안에 따르면 부산시 남구 갑·을의 합구가 불가피했다.

8) 획정 기준일(2019년 1월 31일)에 강남구 인구는 542,154명이고, 노원구는 542,744명으로 노원구가 590명 더 많았으나 강남구는 3개 선거구를 유지하되 노원구는 2개 선거구로 통합한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 선거 직전에는 강남구 인구가 노원구 인구보다 약 1만 3천 명 정도 더 많았다.

〈표 7〉 재획정안(2020년 3월 6일 국회 제출)

시·도	증감	현행	획정안	비고
계	±0	253	253	
부산	±0	남구갑·을	남구갑·을	경계조정
인천	±0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구역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	경계조정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을	분구
경기	-1	부천시 원미구갑, 부천시 원미구을, 부천시 소사구, 부천시 오정구		명칭변경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	경계조정
		고양시 갑·을·병	고양시갑·을·병	경계조정
		군포시갑·을	군포시	통합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	경계조정
강원	±0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구역조정
전북	±0	익산시갑·을	익산시갑·을	경계조정
전남	±0	여수시갑·을	여수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구역조정
경북	±0	안동시	안동시·예천군	구역조정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구역조정
경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출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2020.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3월 6일)

실제 획정위원 B는 노원과 강남을 비교하는 문제를 두고 획정위 내에 가장 큰 격론이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외에 쟁점이었던 있었던 사항은 수도권 대비 지방에서의 지역대표성 확보와 경북 내 지역구 구역 재조정이었음을 고려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파적 의견이 관여됐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 제출안은 헌법재판소에서 언급한 인구편차 관련 두 개 기준(최대 2:최소 1, 인구편차 상하 33⅓%)을 엄격하게 따랐지만, 재획정안에서는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여 2:1 기준만을 적용하였다(139,000명 이상 278,000명 이하). 최초 제출안과 비교할 때, 수정안에서는 최소 인구수의 자의적 설정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개의 최소 인구 선거구를 보여주는 〈표 8〉에 의하면, 최소 인구 선거구인 전남 여수시 갑을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10개 최소 인구 선거구, 제21대 국회

	지역	선거구	2019년 1월 인구	2020년 3월 인구
1	전라남도	여수시 갑	139,027	135,697
2	부산광역시	남구 을	139,228	134,815
3	전라북도	김제시·부안군	139,470	136,493
4	부산광역시	남구 갑	140,242	137,714
5	경상북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140,452	138,496
6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140,541	137,850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갑	140,611	136,527
8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140,731	137,679
9	전라북도	익산시 갑	140,827	136,377
10	경상북도	김천시	140,963	140,727

시·도별 정수에서 변화는 경기도 군포시 2개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2개로 분구한 것이다. 이는 선거구 변동을 최소화해 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국회는 춘천시와 순천시 일부 지역을 다른 선거구에 포함하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화성시를 3석으로 유지하였다. 나머지 문제가 되는 지역구는 동을 바꾸는 구역 조정이나 동·읍·면 경계를 조정하는 미세 조정을 통해 해결하였다. 재획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되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었다.

최초 획정안과 비교할 때 재획정안은 강원도 거대 선거구 개선 효과가 있었다. 강원도의 총의석은 8석으로 변화가 없었으나 자체 분구 지역이었던 춘천을 주변 지역과 합쳐서 선거구를 구성함으로써 6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거대 선거구(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는 피할 수 있었다.

또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할 때에도 거대 선거구 완화의 효과가 있었다. 〈표 9〉는 제20대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원도 선거구 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강원도 선거구의 평균면적은 늘어났으나 표준편차는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최대 선거구 면적은 20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의 5969.72km²에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선거구의 5,409.91km²로 감소하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5,000km²가 넘는 거대선거구가 2개(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1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로 감소하였다. 이점도 이번 선거구 획정의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수도권 집중화, 도농 간 인구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면, 거대 선거구 문제는 이후에도 재연될 것이다.

〈표 9〉 강원도 선거구 면적 변화, 제20대~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제20대 선거구 면적(km ²)	제21대 선거구 면적(km ²)
1	춘천시: 1,116.40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갑: 404.42
2	원주시 갑: 461.35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 을: 2,504.96
3	원주시 을: 406.93	원주시 갑: 461.35
4	강릉시 1,040.71	원주시 을: 406.93
5	동해시·삼척시: 1,367.17	강릉시 1,040.71
6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5,112.9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2,890.44
7	속초시·고성군·양양군: 1,399.88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3,045.06
8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5,969.72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5,409.91
평균	1,984.38	2,020.47
표준편차	2,254.55	1,778.26

좀 더 체계적 분석을 위해 해외에서 개발된 선거구 획정의 타당성 혹은 이상성 측정 도구(Tam Cho and Liu 2016) 혹은 자동화된 획정 시뮬레이션 방식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Fifield et al. 2019). 그러나 이러한 선거구 획정 관련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대표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역 대표성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이 대칭적 연방제이면서, 하원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하에서 단순다수제로 치러져 게리맨더링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서는 엄격한 인구대표성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고, 훨씬 유연하게 선거구를 획정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지역구 선거는 소선거구제하에서 단순다수제로 치러지지만, 단방제 국가로 강한 인구대표성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큰 도농 간 인구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조절 기제가 없어서 맥락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 도구의 기계적 적용은 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획정 과정에서 이러한 획정의 타당성에 대한 여러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획정위원회 인터뷰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대부분 제공하는 자료 및 의견에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적 의존성은 〈표 4〉에 나온 것처럼 8명의 획정위원 가운데 지리학 전공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해외는 선거구 획정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것은 주로 정치학 영역에서는 선거와 지리학을 함께 다루는 정치지리학자나 지리학자들이 주로 연구한다. 선거구 획정을 기술적으로 엄격하게 검토할 수 있는 지리학 전공 학자들이 최소한 1명은 획정위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본다. 획정위 구성의 독립성, 결정의 합리성 못지않게 획정위의 전문성도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획정위원 B도 획정위 활동의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지리학 전공자의 획정위원 선정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국회의 전략적 행동에 대한 취약성

전술하였듯이 개별 정당은 획정위 위원 선정을 통해 획정위 활동에 영향을 주려는 동기를 가진다. 각 정당이 꺼리는 획정위 위원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개별 정당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국회는 획정위의 활동에 비공식적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번 획정위 활동을 분석해 보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 제20대 국회에 진입한 정당들은 기존 선거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였다. 특히, 위험 회피적(risk-averse)인 성향의 다수당은 선거구 변경을 굳이 바라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역적 기반을 지닌 정당도 현상 변경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비록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급격한 선거구 변경을 원할 유인이 없었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은 영남과 강원 지역에서 확실한 우위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단 3석을 차지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후 대통령 선거와 지난 제7대 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얻었기에 시·도별 의원 정수 변경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컸다. 호남 외에는 지지 기반이 약한 민생당 역시 시도별 의원 정수 변경은 호남 의석의 감소를 감수해야 했기에 현상을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제21대 국회 내 정당의 의석 배분 상황을 고려할 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민생당까지 획정위의 적극적 활동을 가능한 한 제어하고자 하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으로 구성된 집합적 행위자인 국회는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개별 정당 차원에서는 각자에게 시·도별 의원정수를 주장하면서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집합적으로는 시·도별 의원정수 결정을 미루면서 획정안을 지연시켰다. 결국, 획정위는 선거가 임박하자 획정안 제출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2020년 3월 3일 독자적 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하였고, 국회의장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했다. 처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은 획정안이 지역대표성 기준을 언급하는「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을 근거로 반대한 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안을 가결했다.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 사항인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 조정 최소화’라는 요구, 즉 선거구 변동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획정위에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늦은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선거 차질의 책임을 획정위에 넘겼다.

이미 시간은 국회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선거를 한 달 여 남긴 상황에서 획정위는 국회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였고, 결국 집합적 행위자로서 국회는 선거구 획정에서의 현상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두 개의 확정안(확정위 확정안, 재확정안)에 대한 확정위 내 평가도 다르게 나타났다. 확정위원 A는 두 개의 확정안 모두 주어진 상황 내에서는 최선의 방안이었다고 평가했지만, 확정위원 B는 국회의 거부와 요구를 수용해 헌법재판소의 판결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않고 타협한 두 번째 확정안보다는 확정위의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확정안을 더 좋은 안으로 보았다. 현실적으로 선거에 차질을 빚어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할 권리와 선거에 참여할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대의에 따른 것이다. 이는 설령 확정위원 개개인이 모두 독립성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국회의 전략적 행동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상 유지를 원하는 정당이 국회의 다수를 자치하면,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국회의 전략적 행위(시·도별 의원정수 결정 지연)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법적 시한을 지켜 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시·도별 의원정수 결정 권한을 공직 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정위에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V. 확정위 활동 개선을 위한 제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두 번에 걸친 독립적 기구로서의 확정위 경험에 근거해 다음과 같은 향후 확정위 활동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거구 확정위원 구성은 ‘배제 방식’을 활용한다. 이번 확정위 활동 결과를 분석해 보면, 이 방식은 제도의 변경 없이도 정당의 영향력을 줄여 결과적으로 확정위의 독립성을 상당한 수준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물론 ‘배제 방식’이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확정위 독립성의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확정위 구성에서 국가가 추천하는 인원을 줄이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계속 이와 관련한 대안을 제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진숙 위원 사퇴 후 새로운 위원 위촉에서 ‘배제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결국 1명이 결원된 상태로 확정위 활동을 마쳤던 것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민주주의 국가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의회의 선거구 확정 과정 개입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지닌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하원의 장처럼 정파성에 좌우되지 않고 조직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직접 선거구 확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확정위에 포함하는 것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둘째, 시·도별 의원정수 지정 권한을 확정위에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아직 확정위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쌓이지 않았으므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정위 구성 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독일처럼 획정위를 상설 조직으로 만드는 것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별 정수 및 구체적 획정 기준 확정 기한 등을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제24조의 제1항은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해당 규정이 형해화(形骸化)하였다. 이는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에 시·도별 정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획정 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이를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최종안을 제출하기 직전에 이에 대한 정당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의견 청취 일정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과 호주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획정위가 잠정건의안(초안)을 작성하면 이를 신문에 공고하고, 초안에 대해 지방정부 또는 100명 이상의 유권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1개월의 기간 동안 보조위원이 지방조사를 시행한다. 획정위는 반대 의견과 보조위원의 지방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수정안 작성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2차 지방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은 수정안이 확정될 때까지 반복된다. 호주의 경우에는 선거구 재획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재획정에 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답신을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첫 공시 이후 28일 이내에 재획정된 선거구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다.

넷째, 획정위원 구성과 관련한 것으로 지역 안배와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획정위원 자신의 지역에 더 많은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해 더 적절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의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한 다양한 수리모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지리학 전공자 가운데 1명을 획정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으로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자료 및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획정위원의 연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는 공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조직 내외에서 공정하다고 평가받는 위원이 연임하게 되면 획정위 자체가 그로 인한 명성(reputation)을 쌓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사법부를 비롯한 특정 기구 혹은 조직이 구성원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연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권 및 정당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제고한 비교정치학 분야의 경험적 결과로부터 입증된다. 제도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연임을 통해 조직의 독립성에 관한 명성을 쌓은 구성원이 '제도적 기억'(institutional memory)의 역할을 할 때 독립성의 실질적 제고가 가능해진다.

여섯째, 선거구별 지리적 특성과 생활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위원들이 쉽게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를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제도하에서는 획정위 활동에 시간적 제약이 많아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지역대표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현재 판결에 의해 인구대표성이 가장 우선적 기준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단방제이자 소선거구제 단순다수제를 사용하는 한국에서 지역대표성은 결코 덜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해 현재의 선연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 획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 집중, 농산어촌의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면, 지역대표성 훼손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본다. 특히, 비례대표로 선정되는 의원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관심은 수도권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다. 제21대 비례대표 당선자의 주소지를 보면, 전체 47명 가운데 수도권 거주자가 40명이 넘는다. 물론 한국의 비례대표는 지역 기반 정치인 층원이 아닌 다양한 직능을 대표하는 개념이 적용되지만,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례대표 의원이 지방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행 선거제도에서 선거구 획정은 오히려 수도권에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인구대표성 기준에 과도하게 매몰되지 않고 국가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포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영국처럼 선거구 획정 시 면적을 반영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Best, Robin, Steve Lem, Daniel Magleby, and Michael McDonald. 2019. "Do Redistricting Commissions Avoid Partisan Gerrymanders?" APSA Preprints. doi: 10.33774/apsa-2019-xgt3p.

Fifield, Benjamin, Michael Higgins, Kosuke Imai, and Alexander Tarr. 2019. "Automated Redistricting Simulation Using Markov Chain Monte Carlo." Unpublished manuscript.

Tam Cho, Wendy and Yan Y. Liu. 2016. "Toward a Talismanic Redistricting tool: A Computational Method for Identifying Extreme Redistricting Plans." Election Law Journal 15: 351-366.

손병권. 2016.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의 쟁점과 제안."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외부평가」 201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용역보고서: 183-210.

대구경북연구원. 2015. 「경상북도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보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15.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부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1. 2020. 3. 6.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 제2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경과
 - 제3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 제4절 건의문
2. 2020. 3. 3.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부록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위원회 보고서



2020. 3. 6.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머 리 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4조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지역선거구 총 정수가 확정된 이후 국회에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시·도별 정수 등의 획정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선거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의장에게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2019년 1월 31일 현재를 인구기준으로 인구 비례 2:1의 범위에서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고,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과 그 예외를 준수하여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회의장이 통보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제1항의 기준과 그 예외에 관하여 정치권에서 합의한 획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제3항에 의해 한차례에 한하므로 국회는 우리 위원회가 새로이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수용하여 조속히 선거구를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시·도별 정수 등의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구획정이 지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은 우리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 이후 정치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획정기준을 합의한 전례 없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현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시간을 할애하여 선거구획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올포랜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김 세 환

제1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1. 설치배경

-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 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과거 국회의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고, 직무상 독립의 지위를 부여하였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8. 11.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설치되었음.

2. 설치근거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4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3. 직무 및 활동기간

가. 직 무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나. 활동기간

2018. 12. 7.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

※ 2020. 3. 3.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

4.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가. 구 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9명으로 구성(법 §24③)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법 §24④)

나.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법 §24③, 규칙 §5①)

※ 위원장 결위 또는 사고 시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규칙 §5③)

다. 임 기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법 §24⑥)

〈표 1-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8인)

(순서 : 성명의 ‘가’, ‘나’, ‘다’...順)

구 분	성 명 (한 자)	경 력	비 고
위원장	김 세 환 (金世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위 원	손 창 열 (孫昌烈)	법무법인 총정 변호사	
위 원	윤 광 일 (尹光一)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위 원	이 덕 로 (李惠魯)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위 원	조 숙 현 (曹淑鉉)	법무법인 (유한) 원 변호사	
위 원	조 영 숙 (曹永淑)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위 원	지 병 근 (池炳根)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 원	한 표 환 (韓豹桓)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 산학협력중점교수	

※ 2018. 12. 5. 유진숙 위원 해촉(사직)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가. 회의소집 : 위원장이 소집함.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위원장은 소집하여야 함
(규칙 §8①).

나.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규칙 §8③)

다. 의결정족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규칙 §8③)

※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라. 의사기록 :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기록하고, 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규칙 §9③·④)

마. 자료요청 :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
가능(법 §24⑨, 규칙 §13)

※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

바. 기 타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법 §24⑬).
- 위원회의 공개여부, 의견수렴 방법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규칙 §15).

6.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10명으로 사무국을 구성함.
- 사무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진행 보좌, 회의결과 정리, 국회의원지역 선거구 획정을 위한 참고자료 작성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실무적 지원을 함.

〈표 1-2〉 직원 명단

직 위	성 명	직 급	비 고
사무국장	김 인 수	서 기 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팀장	고 유 나	행정사무관	"
기 획 팀	신 우 석	행정주사	"
기 획 팀	이 서 화	행정주사보	"
관리팀장	송 광 근	서 기 관	"
관 리 팀	곽 진 경	행정주사	"
관 리 팀	오 병 석	전산주사	"
운영팀장	서 갑 종	서 기 관	"
운 영 팀	이 종 은	행정주사	"
운 영 팀	최 일 식	행정주사보	"

제2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경과

1. 제1차 회의

일시	2018. 12. 7.(금)	11:18 개의,	13:10 산회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장 호선 : 김세환 위원 2. 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의 및 회의록 등 비공개 원칙 • 윤리강령(정치적 중립, 공정성 등) 3.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 조속 확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 개편안 확정 촉구 		

2. 제2차 회의

일시	2018. 12. 24.(월)	10:38 개의,	12:09 산회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분석 결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선거구 수 및 인구수 현황 •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 및 세부분석 결과 2. 소위원회 구성·운영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본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의사진행 도모 3. 위원 언론전담제 운영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인 측면과 언론에서의 신뢰를 고려하여 위원 2명이 대변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 		

3. 제3차 회의

일시	2019. 1. 14.(월)	10:35 개의,	12:37 산회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구 정수 등에 대한 확정 촉구 2.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2019. 1. 21. / 위원회의실 • 공청회 개최 : 2019. 1. 31.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 제4차 회의

일시	2019. 1. 21.(월)	10:41 개의,	11:10 산회
회의내용	1.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 보고 자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안경원 • 보고내용 : 선거구별 인구변동 및 행정구역 변경 현황 2. 공청회 진술인 추천명단 보고		

5. 제5차 회의

일시 장소	2019. 1. 31.(목)	14:02 개의,	16:31 산회																																																
회의내용	2019. 1. 31.(목) 14:02 개의, 16:31 산회 국회의사당 본관 316호 [21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1. 진술인 명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추천 단체</th> <th style="width: 25%;">소 속</th> <th style="width: 25%;">성 명</th> <th style="width: 25%;">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더불어민주당</td> <td>한 신 대 (교 수)</td> <td>조 성 대</td> <td></td> </tr> <tr> <td>자유한국당</td> <td>부 산 대 (교 수)</td> <td>정 승 윤</td> <td></td> </tr> <tr> <td>바른미래당</td> <td>前) 국회의원</td> <td>최 원 식</td> <td></td> </tr> <tr> <td>민주평화당</td> <td>대구가톨릭대 (교 수)</td> <td>안 용 흔</td> <td></td> </tr> <tr> <td>정 의 당</td> <td>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td> <td>하 승 수</td> <td></td> </tr> <tr> <td>민 중 당</td> <td>민 중 당 (정책연구원장)</td> <td>정 태 흥</td> <td></td> </tr> <tr> <td>대한애국당</td> <td>대한애국당 (사무총장)</td> <td>박 태 우</td> <td></td> </tr> <tr> <td>대한지리학회</td> <td>경 상 대 (교 수)</td> <td>이 정 섭</td> <td></td> </tr> <tr> <td>한국공법학회</td> <td>전 북 대 (교 수)</td> <td>송 기 춘</td> <td></td> </tr> <tr> <td>한국정치학회</td> <td>동 국 대 (교 수)</td> <td>박 명 호</td> <td></td> </tr> <tr> <td>한국행정학회</td> <td>서 울 대 (교 수)</td> <td>김 동 욱</td> <td></td> </tr> </tbody> </table>			추천 단체	소 속	성 명	비 고	더불어민주당	한 신 대 (교 수)	조 성 대		자유한국당	부 산 대 (교 수)	정 승 윤		바른미래당	前) 국회의원	최 원 식		민주평화당	대구가톨릭대 (교 수)	안 용 흔		정 의 당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 승 수		민 중 당	민 중 당 (정책연구원장)	정 태 흥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박 태 우		대한지리학회	경 상 대 (교 수)	이 정 섭		한국공법학회	전 북 대 (교 수)	송 기 춘		한국정치학회	동 국 대 (교 수)	박 명 호		한국행정학회	서 울 대 (교 수)	김 동 욱	
추천 단체	소 속	성 명	비 고																																																
더불어민주당	한 신 대 (교 수)	조 성 대																																																	
자유한국당	부 산 대 (교 수)	정 승 윤																																																	
바른미래당	前) 국회의원	최 원 식																																																	
민주평화당	대구가톨릭대 (교 수)	안 용 흔																																																	
정 의 당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 승 수																																																	
민 중 당	민 중 당 (정책연구원장)	정 태 흥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박 태 우																																																	
대한지리학회	경 상 대 (교 수)	이 정 섭																																																	
한국공법학회	전 북 대 (교 수)	송 기 춘																																																	
한국정치학회	동 국 대 (교 수)	박 명 호																																																	
한국행정학회	서 울 대 (교 수)	김 동 욱																																																	

2. 진술 요지

가. 조성대(한신대 교수)

- 국회 정개특위와의 소통의 채널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이 필요
- 선거구획정위의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이 의사결정 전체를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대안 마련 필요
- 시민사회 의견청취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마련 필요

나. 정승윤(부산대 교수)

- 인구편차의 급격한 조정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구편차 상하 $\pm 33\frac{1}{3}\%$ (2:1)를 기준으로 확정
- 농촌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하므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는 방안 고려

다. 최원식(前 국회의원)

-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사표 방지를 고민하여야 하고 연동형비례제를 기본으로 구성해야 함.
- 권역별명부식은 전국명부식에 비해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전국정 당득표율로 우선 배분하되 배분된 의석을 권역별로 다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라. 안용훈(대구가톨릭대 교수)

-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일정 크기 이상의 선거구에는 편차기준 적용의 예외로 둔다면 선거구 간 지역대표성의 불균형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이라는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 기준을 유지하면서 가중다수 결방식에 선호투표 적용을 통해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위원들이 정당의 유불리만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절충안 마련이 힘들었다는 점을 해소할 수 있음.
- 영호남 지역의 선거구획정은 되도록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선거구 재획정 대상 지역의 생활문화권 및 지리적 맥락 등에 관한 면밀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마.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지역구수를 줄이는 것은 지역의 대륙 통합 등에 따른 유권자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음.
- 또한 OECD 국가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편이므로 국회의원 수당 등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

바. 정태홍(민중당 민중정책연구원장)

- 현행 선거제도는 사표가 다수 발생하고, 정당의 득표수와 실제 의석수 사이에 불일치가 심각하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

사. 박태우(대한애국당 사무총장)

- 제20대 선거구획정 시 20여개 지역이 통폐합, 30여개 지역이 분할 대상이었는데,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동일 선거구로 묶이게 되어 지역주민들 간 이질감 및 불균형 등이 나타났음.
- 그러나, 인구수 감소, 농촌지역 공동화 등으로 선거구 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는 상태이며, 모든 지역주민을 만족하는 완벽한 선거제도는 없음.
- 또한, 대다수 국민의 여론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매우 부정적이므로 현재 논의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기반을 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동의가 필요함.

- 아. 이정섭**(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총 의석수,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임.
 -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권역별 보다는 광역자치단체별 또는 전국을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광역자치단체별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최소 100석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하며, 현행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정수 300인 상황에서는 제20대 총선 대비 지역구 의석수를 53석 줄여야 함.
 - 제16대 총선을 제외하고 지역구 의석수가 감축된 적이 없기에,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 자. 송기춘**(전북대 교수)
 - 국민의 정치적 의사의 왜곡이 없는 선거제도를 구상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다수득표제에 기초한 지역선거구제도가 선거제도의 기본이 되는 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의 구성에 반영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
 -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비례성을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구 의석을 증가시키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 차. 박명호**(동국대 교수)
 - 조정대상 선거구 선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여야 간 또는 유력 정치인 간 거리와 타협의 산물로 선거구 조정이 인식되어 정치적 논란과 불신을 야기하고 있음.
 - 획정위의 상설화를 통해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조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획정과정에 정치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추천 몫을 줄이며 선관위 역할을 확대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 카. 김동욱**(서울대 교수)
 - 공식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3개월 전에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선거일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함으로써 법을 지키는 선거구획정이 되기를 소망
 -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하는 획정위 위원수를 3명으로 하고 국회 소관 위원회가 6명으로 조정한다면 선거구획정위의 정파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획정위원 전원이 광역자치단체의 중심도시를 방문하여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획정안을 심의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6. 제6차 회의

일시	2019. 2. 18.(월)	10:34 개의,	12:08 산회
회의내용	1. 인구기준일 현재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분석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1. 31. 현재 현행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분석 • 헌법재판소 결정문과 공식선거법에 따른 인구허용범위 관련 논의 2.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학회 소속 학자를 위원회의에 초청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추가 논의 및 의견청취 필요 		

7. 제7차 회의

일시	2019. 2. 25.(월)	10:54 개의,	12:36 산회
회의내용	1. 위원회의 진행 일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3. 11. 대한지리학회 초청 추가의견 청취 • 2019. 3. 18. 법정기한 내 확정안 미제출에 따른 입장발표 		

8. 제8차 회의

일시	2019. 3. 11.(월)	09:38 개의,	11:15 산회
회의내용	1.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상 자 : 이정섭(경상대), 진종현(공주대)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구획정의 문제점으로 시·도별 의석할당 부재 지적 - 인구비례는 2:1에서 더 나아가야 하나, 수도권 중심성이 강화 우려 및 균형발전 저해에 따른 헌법적 기본권 침해 가능 		

9. 제9차 회의

일시	2019. 3. 18.(월)	10:37 개의,	11:49 산회
회의내용	1. 위원회의 진행 일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지역구수 통보를 받기 전까지 월 1회 정기회 개최 • 2019. 3. 18. 법정기한 내 확정안 미제출에 따른 입장문 확정 		

10. 제10차 회의

일시	2019. 4. 22.(월)	10:44 개의,	12:10 산회
회의내용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주요 쟁점지역 사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선거구의 안정성, 선거구 모양의 조밀도, 지역 간 교류 가능성, 생활문화권의 동질성 등 고려 사례 분석 • 선거구 획정 시 적용되는 기준의 우선순위 등 논의 • 제20대 선거구획정 시 쟁점지역에 대한 획정 과정 등 분석 		

11. 제11차 회의

일시	2019. 5. 24.(금) 10:47 개의, 11:49 산회
회의내용	1.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시 생활문화권 고려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대 선거구획정 당시 생활권 또는 생활문화권 고려 사례 · 선거구획정 시 생활문화권 및 다른 고려요소 간 관계

12. 제12차 회의

일시	2019. 8. 16.(금) 10:43 개의, 11:28 산회
회의내용	1. 선거구획정기준 고려요소 간 우선순위 적용여부에 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법 규정, 판례 및 외국 사례 등 검토 2. 국회요구자료 및 민원 등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요구자료 및 민원 등 45건 보고 3.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건 청취 방법 및 일정

13. 제13차 회의

일시	2019. 9. 20.(금) 10:40 개의 11:34 산회
회의내용	1. 선거구획정위원 추천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결원 상태 장기화에 따른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과 원활한 선거구획정 차질 예방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 추천 의뢰 2.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건 청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 :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시 기 : 10. 14.(월) ~ 31.(목) / 7일간(지역별 1일) · 진 술 인 : 정당, 학회,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추천 의뢰

14. 제14차 회의

일시	2019. 11. 22.(금)	10:40 개의	11:28 산회
회의내용	<p>1.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결과보고</p> <p>가. 농어촌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의석 감소 우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지역 배려 필요 •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수 유지 요청 <p>나.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거대화 문제점 지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구·시·군의 개수 및 면적 상한기준 설정 • 농어촌특별선거구 신설 등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의 예외 적용 <p>다. 현행 선거구에 대한 조정 필요 의견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천안, (전남) 무안영암, (경북) 문경예천영주, 상주군위의성청송, (경남) 밀양 창녕의령함안,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p>라. 선거구 변동의 최소화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정 필요지역 외에는 현행 유지 <p>마. 지역별 구체적 획정방안 제시</p> <p>바. 선거제도 개선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의견 제시</p>		

15. 제15차 및 제16차 회의

일시	2019. 12. 30.(월)	10:38 개의	11:39 산회
일시	2020. 1. 7.(화)	10:37 개의	11:25 산회
회의내용	<p>1.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정당 의견청취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정당 : 7개(2019. 12. 30. 현재) 더불어민주당(129석), 자유한국당(108석),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우리공화당(2석), 민중당(1석) • 일 시 : 2020. 1. 10. 오전 10시 <p>2. 시·도별 정수 등 확정 및 위원 선정 요청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촉구문 발송 		

16. 제17차 회의

일시	2020. 1. 10.(금)	10:04 개의	12:17 산회	
회의내용	1.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당의견 청취 · 진술인 명단			
	정 당 명	직 위	성 명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	김 진 영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김 재 원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수석전문위원	김 민 훈	
	민주평화당	사무총장	이 관 승	
	정 의 당	정책연구위원	윤 재 설	
	우리공화당	불	참	
	민 중 당	민중정책연구원 부원장	최 기 영	
	· 선거구획정에 대한 정당의견 주요내용 - 시·도별 지역구 정수 배정에 관한 입장 - 선거구획정 세부기준에 관한 입장 등			

17. 제18차 회의

일시	2020. 1. 21.(화)	10:40 개의	11:50 산회
회의내용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확정 대상 논의 · 공청회, 지역의견 청취 및 정당의견 청취 등에서 나온 의견 및 민원이 제기된 선거구 검토		

18. 제19차 회의

일시	2020. 2. 3.(월)	16:54 개의	17:24 산회
회의내용	1. 의석수 변동 시 선거구 조정가능 방안 검토 · 수도권 의원정수 변동 시 선거구 조정방안 검토		

19. 제20차 회의

일시	2020. 2. 21.(금)	10:15 개의	11:31 산회
회의내용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확정 대상 논의 · 추가 민원이 제기된 선거구 검토		

20. 제21차 회의

일시	2020. 2. 28.(금)	15:22 개의	17:16 산회
회의내용	1. 시·도별 정수 등 확정기준 미통보 시 대책 논의 ·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 및 선거사무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 · 2월 29일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입장문 발표		

21. 제22차 회의

일시	2020. 2. 29.(토)	15:15 개의	23:54 산회
회의내용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2. 제23차 회의

일시	2020. 3. 1.(일)	00:05 개의	22:12 산회
회의내용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3. 제24차 회의

일시	2020. 3. 2.(월)	11:36 개의	23:45 산회
회의내용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4. 제25차 회의

일시	2020. 3. 3.(화)	00:20 개의	16:26 산회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25. 제26차 회의

일시	2020. 3. 4.(수)	20:20 개의	22:08 산회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에 따른 대책 논의 2. 선거구획정안 재제출 요구 관련 추가 자료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에 위반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요청 		

26. 제27차 회의

일시	2020. 3. 5.(목)	15:37 개의	21:53 산회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7. 제28차 회의

일시	2020. 3. 6.(금)	10:18 개의	22:30 산회
회의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구획정 세부방안 논의 2.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이 기재된 보고서 채택 		

제3절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1. 선거구획정기준 등

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획정기준과 아래와 같이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제시한 획정기준 등을 적용함.

가. 인구기준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2019년 1월 31일 현재로 한다.

나.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 9천명 이상, 27만 8천명 이하로 한다.

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 인구 증가로 상한 기준을 초과하여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내에서 인접 6개의 자치구·시·군을 통합하는 거대 선거구가 발생하거나(강원도 춘천), 또는 해당 시·도의 전체 선거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전라남도 순천)에 예외적으로 분할한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해서 경기도 화성시 병의 일부인 봉담읍을 분할하여 화성시 갑의 선거구에 속하게 한다.

라. 경계 및 구역조정

- 인구 상하한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에 한해서 경계 및 구역조정을 하여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 한다.

마.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각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시·도	정 수
서울특별시	49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2
인천광역시	13
광주광역시	8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59
강원도	8
충청북도	8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2. 선거구획정안

가. 선거구획정안 주문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남구갑선거구와 남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남구갑선거구 :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남구을선거구 : 대연제1동, 대연제3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남구갑선거구, 남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강화군 옹진군선거구, 동구미추홀구갑선거구, 동구미추홀구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중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 중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 동구미추홀구갑선거구 :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동구 일원
 - 동구미추홀구을선거구 :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 2) 서구갑선거구와 서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서구갑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

- 1)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와 세종특별자치시을 선거구로 분구한다.
 -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 :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 세종특별자치시읍선거구 :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람동, 종촌동, 고운동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광명시갑선거구와 광명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광명시갑선거구 :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 광명시을선거구 :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 2) 평택시갑선거구와 평택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평택시갑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비전1동, 세교동
 - 평택시을선거구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 3)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고양시갑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 고양시을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 고양시병선거구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 4) 군포시갑선거구와 군포시을선거구를 군포시선거구로 통합한다.
- 5)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용인시을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 용인시병선선거구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복동
- 용인시정선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6) 화성시갑선선거구, 화성시을선선거구, 화성시병선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화성시갑선선거구 : 봉담읍(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등리, 상기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 화성시을선선거구 :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 화성시병선선거구 : 봉담읍(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3동

<강원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춘천시선거구, 동해시삼척시선거구,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속초시 고성군양양군선거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춘천시 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선선거구,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정선군선거구,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선거구,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선거구로 조정한다.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선선거구 : 춘천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선거구 :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선거구 : 동해시 일원, 태백시 일원, 삼척시 일원, 정선군 일원
-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선거구 : 속초시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선거구 :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전라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익산시갑선거구와 익산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익산시갑선거구 :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응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 익산시을선거구 :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여수시갑선거구와 여수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여수시갑선거구 :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 여수시을선거구 :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 2) 순천시선거구,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선거구 :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선거구 :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안동시선거구,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를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상주시문경시선거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로 조정한다.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김해시갑선거구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김해시을선거구 :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구역표 (지역구 : 253)

아래 선거구역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이후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한 것임.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중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중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목제1동, 목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노원구을선거구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6·7동
노원구병선거구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제1동, 홍제제2동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항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향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량진제1동, 노량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4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용당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3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를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를선거구	무태조아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를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를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분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3)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	중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동구 일원
동구미추홀구를 선거구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아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7)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정동, 내동, 기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구울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마1동, 갈마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유성구을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죽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아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 2)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선거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경기도(지역구 : 59)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고1동, 광고2동
수원시무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아탑1동, 아탑2동, 아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기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를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갑선거구	심곡동, 부천동
부천시을선거구	중동, 신중동, 상동
부천시병선거구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부천시정선거구	성곡동, 오정동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광명시을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운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비전1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상록구를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와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안산시단원구를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초지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군포시선거구	군포시 일원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용인시정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롱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봉담읍(분천리, 왕림리, 세곡리, 당하리, 마하리, 유리, 덕리, 덕우리, 하가들리, 상기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화성시을선거구	동탄1동, 동탄2동,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화성시병선거구	봉담읍(상리, 내리, 수영리, 동화리, 와우리, 수기리),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3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을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 : 8)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갑선거구	춘천시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춘천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을선거구	춘천시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선거구	강릉시 일원
동해시대백시삼척시 정선군선거구	동해시 일원, 태백시 일원, 삼척시 일원, 정선군 일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 양양군선거구	속초시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양양군 일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 평창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1)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전라북도(지역구 : 10)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전주시병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장수군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선거구명	선거구역
전라남도(지역구 : 10)	
목포시선거구	목포시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만덕동, 삼일동, 묘도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둔덕동,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갑선거구	순천시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왕조1동, 왕조2동
순천시광양시곡성군 구례군을선거구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나주시화순군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선거구	담양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선거구	영암군 일원, 무안군 일원, 신안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 13)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안동시 일원, 예천군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울진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양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문경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덕군선거구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덕군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 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 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3.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결과

가. 총괄

❖ 지역구 의석수 : 253(±0)

- 분 구 : +1
- 통 합 : △1
- 구역조정 : 4
-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 10
- 명칭변경 : 4

❖ 선거구 평균인구 : 204,847명

- 최 고 : 고양시정선거구(277,912명)
- 최 저 : 여주시갑선거구(139,027명)

나. 선거구 확정안

❖ 분구 선거구 : +1

- 세 종(+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갑·을

❖ 통합 선거구 : △1

- 경 기(△1)
 - 군포시갑·을 → 군포시

❖ 구역조정 선거구 : 4

- 인 천(1)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 ※ 남구 → 미추홀구 명칭변경

● 강 원(1)

-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 전 남(1)

-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 경 북(1)

-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 : 10

- 부 산(1) : 남구갑·을
- 인 천(1) : 서구갑·을
- 경 기(5) : 광명시갑·을, 평택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용인시을·병·정, 화성시갑·을·병
- 전 북(1) : 익산시갑·을
- 전 남(1) : 여수시갑·을
- 경 남(1) : 김해시갑·을

❖ 명칭변경 : 4

- 경 기(4)
 -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 부천시갑·을·병·정
 - ※ 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른 명칭변경

다. 선거구획정안 시·도별 조정내역

시·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계	±0	253	253	
부 산	±0	남구갑·을	남구갑·을	경계조정
인 천	±0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남구갑·을	중구강화군옹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구역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	경계조정
세 종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을	분 구
경 기	△1	부천시원미구갑·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갑·을·병·정	명칭변경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	경계조정
		고양시갑·을·병	고양시갑·을·병	경계조정
		군포시갑·을	군포시	통 합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	경계조정
강 원	±0	춘천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구역조정
전 북	±0	익산시갑·을	익산시갑·을	경계조정
전 남	±0	여주시갑·을	여주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구역조정
경 북	±0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익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익성군청송군영덕군	구역조정
경 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제4절 건의문

1. 시·도별 정수 및 구체적 획정기준 확정시한 등의 법제화

지역선거구 시·도별 정수 등의 구체적 획정기준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선거구 총 정수는 2019년 12월 27일「공직선거법」개정으로 253석으로 확정되었으나, 이후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시·도별 정수 등을 국회에서 확정하지 못해 선거구획정안 마련이 계속하여 지연되었음.

지역선거구 시·도별 정수 등 획정기준 확정 지연은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반복되어온 문제임.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원칙적인 선거구획정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시·도별 정수 등의 구체적 획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지적하며 다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전(선거일 전 18개월)에 이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관련된 내용으로「공직선거법」은 개정된 바 없음.

지역선거구 시·도별 정수 등의 구체적 획정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이 필요할 것임.

「공직선거법」제24조제11항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의2제1항은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 선거구획정안 제출과 선거구 확정 시한이 명시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은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아 관련 규정의 형해화를 가져옴.

선거구획정의 지연은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침해를 초래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에 반드시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인 획정기준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이와 함께 획정기준 확정시한과 확정시한 미준수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함.

2.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위한 구체적 획정기준 마련

헌법재판소의 헌법상의 요청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구나 인구비례 2:1 결정으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구비례는 선거구획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제25조제1항은 인구와 함께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구의 도시집중화, 농산어촌의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인구를 우선으로 하여 그 외의 고려요소 등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공직선거법」제25조제2항은 인구비례 2:1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언적 규정에 그침.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을 위해서는 선언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인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방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이에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선거구획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에 관해 논의하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건의함.

2020. 3. 3. 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머 리 말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제24조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 출범했습니다.

지역선거구 총 정수가 확정된 이후 국회에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시·도별 정수 등의 획정기준을 확정해 주기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국회에서 획정기준을 확정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고 선거사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우리 위원회에서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4조의2제3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의 획정기준을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구획정안의 재제출을 한차례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국회는 「공직선거법」의 획정기준을 준수한 우리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 위원회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선거구 총정수와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시·도별 정수 등이 조속히 확정되지 못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이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넘겨 획정이 지연되는 관행이 반복되었으며,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현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시간을 할애하여 선거구획정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 지원에 최선을 다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소속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국토지리정보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올포랜드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3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 김 세 환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안

1. 선거구획정기준 등

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구의 획정)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획정기준 외에 아래와 같은 획정기준 등을 적용함.

가. 인구편차 허용범위 :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 상하 33⅓%인 136,565명 이상 273,129명 이하로 함.

나.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이 함.

시·도	정 수
서울특별시	48
부산광역시	18
대구광역시	12
인천광역시	13
광주광역시	8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6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60
강원도	8
충청북도	8
충청남도	11
전라북도	10
전라남도	10
경상북도	13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2. 선거구획정안

가. 선거구획정안 주문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노원구갑선거구, 노원구을선거구, 노원구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노원구갑선거구와 노원구을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노원구갑선거구 :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 노원구을선거구 :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부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남구갑선거구와 남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남구갑선거구 : 대연제1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 남구을선거구 : 대연제3동, 대연제4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인천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남구갑선거구, 남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중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동구미추홀구갑선거구, 동구미추홀구을선거구로 조정한다.

- 중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 중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 동구미추홀구갑선거구 :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동구 일원
- 동구미추홀구을선거구 :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2) 남동구갑선거구와 남동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남동구갑선거구 :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 남동구을선거구 :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3) 서구갑선거구와 서구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서구갑선거구 :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 서구을선거구 :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와 세종특별자치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 :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롭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 세종특별자치시을선거구 :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경기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1) 수원시병선거구와 수원시무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수원시병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 수원시무선거구 :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2) 광명시갑선거구와 광명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광명시갑선거구 :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 광명시을선거구 :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온동

3) 평택시갑선거구와 평택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평택시갑선거구 :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북동, 비전1동, 세교동

- 평택시읍선거구 :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 4) 안산시상록구갑선거구, 안산시상록구을선거구, 안산시단원구갑선거구, 안산시단원구을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병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안산시갑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 안산시을선거구 :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와동, 고잔동, 중앙동
 - 안산시병선거구 :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 5)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정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고양시갑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 고양시을선거구 :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장항1동, 장항2동
 - 고양시병선거구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2동
 - 고양시정선거구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 6)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정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용인시을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 용인시병선거구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 용인시정선거구 :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 7)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화성시갑선거구, 화성시을선거구, 화성시병선거구, 화성시정선거구로 분구한다.

- 화성시갑선거구 :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 화성시을선거구 :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 화성시병선거구 :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 화성시정선거구 :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강원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춘천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춘천시갑선거구와 춘천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춘천시갑선거구 :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3동, 신사우동
 - 춘천시을선거구 :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효자2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 2) 강릉시선거구, 동해시삼척시선거구,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 속초시 고성군양양군선거구,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선거구를 강릉시양양군선거구, 동해시태백시삼척시선거구,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선거구, 홍천군 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전라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병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전주시갑선거구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우아2동
 - 전주시병선거구 :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목포시선거구, 나주시화순군선거구, 광양시곡성군구례군선거구, 담양군합평군영광군 장성군선거구, 영암군무안군신안군선거구를 목포시신안군선거구, 나주시화순군영암군 선거구,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선거구, 무안군합평군영광군장성군선거구로 통합·조정한다.

- 2) 여수시갑선거구와 여수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여수시갑선거구 :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충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 여수시을선거구 :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 3) 순천시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순천시갑선거구와 순천시을선거구로 분구한다.
- 순천시갑선거구 : 해룡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 순천시을선거구 :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덕연동, 풍덕동, 왕조1동, 왕조2동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안동시선거구, 영주시문경시예천군선거구,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선거구, 영양군 영덕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를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선거구, 상주시문경시선거구,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선거구로 조정한다.

〈경상남도 관할구역 안의 조정대상 선거구를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 1) 김해시갑선거구와 김해시을선거구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김해시갑선거구 :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 김해시을선거구 :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나.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 구역표 (지역구 : 253)

아래 선거구역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이후의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한 것임.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울특별시(지역구 : 48)	
종로구선거구	종로구 일원
중구성동구갑선거구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중구성동구을선거구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중구 일원
용산구선거구	용산구 일원
광진구갑선거구	중곡제1동, 중곡제2동, 중곡제3동, 중곡제4동, 능동, 구의제2동, 광장동, 군자동
광진구을선거구	구의제1동, 구의제3동, 자양제1동, 자양제2동, 자양제3동, 자양제4동, 화양동
동대문구갑선거구	용신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휘경제1동, 휘경제2동, 이문제1동, 이문제2동
동대문구을선거구	전농제1동, 전농제2동, 답십리제1동, 답십리제2동, 장안제1동, 장안제2동
종랑구갑선거구	면목본동, 면목제2동, 면목제3·8동, 면목제4동, 면목제5동, 면목제7동, 상봉제2동, 망우제3동
종랑구을선거구	상봉제1동, 중화제1동, 중화제2동, 목제1동, 목제2동, 망우본동, 신내제1동, 신내제2동
성북구갑선거구	성북동, 삼선동, 동선동, 돈암제2동, 안암동, 보문동, 정릉제1동, 정릉제2동, 정릉제3동, 정릉제4동, 길음제1동
성북구을선거구	돈암제1동, 길음제2동, 종암동, 월곡제1동, 월곡제2동, 장위제1동, 장위제2동, 장위제3동, 석관동
강북구갑선거구	번1동, 번2동, 수유1동, 수유2동, 수유3동, 우이동, 인수동
강북구을선거구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번3동
도봉구갑선거구	쌍문1동, 쌍문3동, 창1동, 창2동, 창3동, 창4동, 창5동
도봉구을선거구	쌍문2동, 쌍문4동, 방학1동, 방학2동, 방학3동, 도봉1동, 도봉2동
노원구갑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공릉1동, 공릉2동,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1동
노원구을선거구	중계2·3동, 중계4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상계6·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은평구갑선거구	녹번동, 응암제1동, 응암제2동, 응암제3동, 역촌동, 신사제1동, 신사제2동, 증산동, 수색동
은평구을선거구	불광제1동, 불광제2동, 갈현제1동, 갈현제2동, 구산동, 대조동, 진관동
서대문구갑선거구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흥제제1동, 흥제제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대문구을선거구	홍제제3동, 홍은제1동, 홍은제2동, 남가좌제1동, 남가좌제2동, 북가좌제1동, 북가좌제2동
마포구갑선거구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마포구을선거구	서강동,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망원2동, 연남동, 성산1동, 성산2동, 상암동
양천구갑선거구	목1동, 목2동, 목3동, 목4동, 목5동, 신정1동, 신정2동, 신정6동, 신정7동
양천구을선거구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신월7동, 신정3동, 신정4동
강서구갑선거구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8동, 발산제1동, 우장산동
강서구을선거구	등촌제3동, 가양제1동, 가양제2동, 공향동, 방화제1동, 방화제2동, 방화제3동
강서구병선거구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제4동, 화곡본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구로구갑선거구	고척제1동, 고척제2동, 개봉제1동, 개봉제2동, 개봉제3동, 오류제1동, 오류제2동, 수궁동, 향동
구로구을선거구	신도림동, 구로제1동, 구로제2동, 구로제3동, 구로제4동, 구로제5동, 가리봉동
금천구선거구	금천구 일원
영등포구갑선거구	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제1동, 당산제2동, 도림동, 문래동, 양평제1동, 양평제2동, 신길제3동
영등포구을선거구	여의동, 신길제1동, 신길제4동, 신길제5동, 신길제6동, 신길제7동, 대림제1동, 대림제2동, 대림제3동
동작구갑선거구	노랑진제1동, 노랑진제2동, 상도제2동, 상도제3동, 상도제4동, 대방동, 신대방제1동, 신대방제2동
동작구을선거구	상도제1동, 흑석동, 사당제1동, 사당제2동, 사당제3동, 사당제4동, 사당제5동
관악구갑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성현동, 중앙동, 청림동, 행운동, 청룡동, 낙성대동, 인현동, 남현동, 신림동
관악구을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서초구갑선거구	잠원동, 반포본동, 반포1동, 반포2동, 반포3동, 반포4동, 방배본동, 방배1동, 방배4동
서초구을선거구	서초1동, 서초2동, 서초3동, 서초4동, 방배2동, 방배3동, 양재1동, 양재2동, 내곡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동, 역삼2동
강남구을선거구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세곡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강남구병선거구	삼성1동, 삼성2동, 대치1동, 대치2동, 대치4동, 도곡1동, 도곡2동
송파구갑선거구	풍납1동, 풍납2동, 방이1동, 방이2동, 오륜동, 송파1동, 송파2동, 잠실4동, 잠실6동
송파구을선거구	석촌동, 삼성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송파구병선거구	거여1동, 거여2동, 마천1동, 마천2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장지동, 위례동
강동구갑선거구	강일동, 상일동, 명일제1동, 명일제2동, 고덕제1동, 고덕제2동, 암사제1동, 암사제2동, 암사제3동, 길동
강동구을선거구	천호제1동, 천호제2동, 천호제3동, 성내제1동, 성내제2동, 성내제3동, 둔촌제1동, 둔촌제2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부산광역시(지역구 : 18)	
중구영도구선거구	중구 일원, 영도구 일원
서구동구선거구	서구 일원, 동구 일원
부산진구갑선거구	부전제1동, 연지동, 초읍동, 양정제1동, 양정제2동, 부암제1동, 부암제3동, 당감제1동, 당감제2동, 당감제4동
부산진구을선거구	부전제2동, 전포제1동, 전포제2동, 가야제1동, 가야제2동, 개금제1동, 개금제2동, 개금제3동, 범천제1동, 범천제2동
동래구선거구	동래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대연제1동, 대연제5동, 대연제6동, 감만제1동, 감만제2동, 우암동, 문현제1동, 문현제2동, 문현제3동, 문현제4동
남구을선거구	대연제3동, 대연제4동, 용호제1동, 용호제2동, 용호제3동, 용호제4동, 용당동
북구강서구갑선거구	북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덕천제1동, 덕천제2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강서구을선거구	북구 금곡동, 화명제1동, 화명제2동, 화명제3동, 강서구 일원
해운대구갑선거구	우제1동, 우제2동, 우제3동, 중제1동, 중제2동, 좌제1동, 좌제2동, 좌제3동, 좌제4동, 송정동
해운대구을선거구	반여제1동, 반여제2동, 반여제3동, 반여제4동, 반송제1동, 반송제2동, 재송제1동, 재송제2동
사하구갑선거구	괴정제1동, 괴정제2동, 괴정제3동, 괴정제4동, 당리동, 하단제1동, 하단제2동
사하구을선거구	신평제1동, 신평제2동, 장림제1동, 장림제2동, 다대제1동, 다대제2동, 구평동, 감천제1동, 감천제2동
금정구선거구	금정구 일원
연제구선거구	연제구 일원
수영구선거구	수영구 일원
사상구선거구	사상구 일원
기장군선거구	기장군 일원
대구광역시(지역구 : 12)	
중구남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 일원
동구갑선거구	신암1동, 신암2동, 신암3동, 신암4동, 신암5동, 신천1·2동, 신천3동, 신천4동, 효목1동, 효목2동, 지저동, 동촌동
동구을선거구	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안심1동, 안심2동, 안심3·4동, 공산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서구선거구	서구 일원
북구갑선거구	고성동, 칠성동,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 산격1동, 산격2동, 산격3동, 산격4동, 대현동, 복현1동, 복현2동, 검단동, 노원동
북구을선거구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태전2동, 구암동,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 국우동
수성구갑선거구	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1동, 만촌2동, 만촌3동, 황금1동, 황금2동,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수성구을선거구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파동, 두산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달서구갑선거구	죽전동, 장기동, 용산1동, 용산2동,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달서구을선거구	월성1동, 월성2동, 진천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달서구병선거구	성당동, 두류1·2동,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
달성군선거구	달성군 일원
인천광역시(지역구 : 13)	
중구강화군 옹진군선거구	중구 일원, 강화군 일원, 옹진군 일원
동구미추홀구갑 선거구	미추홀구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동구 일원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	미추홀구 송의1·3동, 송의2동, 송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연수구갑선거구	옥련2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동춘3동
연수구을선거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동구을선거구	간석2동, 간석3동, 간석4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부평구갑선거구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산곡3동, 산곡4동, 부개1동, 일신동, 십정1동, 십정2동
부평구을선거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
계양구갑선거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양구을선거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서구갑선거구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구을선거구	검암경서동, 연희동, 청라3동, 검단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
광주광역시(지역구 : 8)	
동구남구갑선거구	남구 봉선1동, 봉선2동, 월산동, 월산4동, 월산5동, 주월1동, 주월2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동구남구을선거구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동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화정1동, 화정2동, 동천동
서구을선거구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 금호1동, 금호2동, 풍암동, 상무2동
북구갑선거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중앙동, 임동, 신안동, 우산동, 풍향동, 문화동, 문흥1동, 문흥2동, 두암1동, 두암2동, 두암3동, 오치1동, 오치2동, 석곡동
북구을선거구	용봉동, 운암1동, 운암2동, 운암3동, 동림동, 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 양산동
광산구갑선거구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어룡동, 우산동, 월곡1동, 월곡2동, 운남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본량동
광산구을선거구	비야동, 첨단1동, 첨단2동, 신가동, 신창동, 수완동, 하남동, 임곡동
대전광역시(지역구 : 7)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서구갑선거구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정림동,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가수원동, 관저1동, 관저2동, 기성동
서구을선거구	용문동, 탄방동, 둔산1동, 둔산2동, 둔산3동, 갈매1동, 갈매2동, 월평1동, 월평2동, 월평3동, 만년동
유성구갑선거구	진잠동, 온천1동, 온천2동, 노은1동, 원신흥동
유성구을선거구	노은2동, 노은3동,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관평동
대덕구선거구	대덕구 일원
울산광역시(지역구 : 6)	
중구선거구	중구 일원
남구갑선거구	신정1동, 신정2동, 신정3동, 신정4동, 신정5동, 삼호동, 무거동, 옥동
남구을선거구	달동, 삼산동, 아음장생포동, 대현동, 수암동, 선암동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북구선거구	북구 일원
울주군선거구	울주군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세종특별자치시(지역구 : 2)	
세종특별자치시갑선거구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을선거구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경기도(지역구 : 60)	
수원시갑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동, 조원2동, 연무동
수원시을선거구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 수원시 권선구 평동, 서둔동, 구운동, 금곡동, 호매실동, 입북동
수원시병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수원시 팔달구 일원
수원시정선거구	수원시 영통구 매탄1동, 매탄2동, 매탄3동, 매탄4동, 원천동, 영통1동, 광교1동, 광교2동
수원시무선거구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성남시수정구선거구	성남시 수정구 일원
성남시중원구선거구	성남시 중원구 일원
성남시분당구갑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서현2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1동, 야탑2동, 야탑3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수내1동, 수내2동, 수내3동, 정자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
의정부시갑선거구	의정부1동, 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 가능동, 흥선동, 녹양동
의정부시을선거구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송산3동, 자금동
안양시만안구선거구	안양시 만안구 일원
안양시동안구갑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비산1동, 비산2동, 비산3동, 부흥동, 달안동, 관양1동, 관양2동, 부림동
안양시동안구을선거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평안동, 귀인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부천시갑선거구	심곡동, 부천동
부천시을선거구	중동, 신중동, 상동
부천시병선거구	대산동, 소사본동, 범안동
부천시정선거구	성곡동, 오정동
광명시갑선거구	광명1동, 광명2동, 광명3동, 광명4동, 광명5동, 광명6동, 광명7동, 철산1동, 철산2동, 철산3동, 철산4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광명시을선거구	하안1동,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소하1동, 소하2동, 학운동
평택시갑선거구	진위면, 서탄면, 중앙동, 서정동, 송탄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통복동, 비전1동, 세교동
평택시을선거구	팽성읍,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고덕면, 오성면, 현덕면, 신평동, 원평동, 비전2동, 용이동
동두천시연천군선거구	동두천시 일원, 연천군 일원
안산시갑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반월동
안산시을선거구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동, 부곡동, 율피동, 성포동, 안산동, 안산시 단원구 와동, 고잔동, 중앙동
안산시병선거구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동, 선부2동, 선부3동, 대부동
고양시갑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고양시을선거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 삼송동, 창릉동, 능곡동, 행주동, 행신1동, 행신2동, 행신3동, 화전동, 대덕동,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 장항1동, 장항2동
고양시병선거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중산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동, 마두2동, 고봉동,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일산2동
고양시정선거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탄현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 송포동, 송산동
의왕시과천시선거구	의왕시 일원, 과천시 일원
구리시선거구	구리시 일원
남양주시갑선거구	화도읍, 수동면, 호평동, 평내동
남양주시을선거구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 별내동
남양주시병선거구	와부읍, 진건읍, 퇴계원읍, 조안면, 금곡동, 양정동, 다산1동, 다산2동
오산시선거구	오산시 일원
시흥시갑선거구	대야동,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과림동, 연성동, 장곡동, 능곡동
시흥시을선거구	군자동, 월곶동,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군포시갑선거구	군포1동, 군포2동, 산본1동, 금정동, 대야동
군포시을선거구	산본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하남시선거구	하남시 일원
용인시갑선거구	용인시 처인구 일원
용인시을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기흥동, 서농동, 동백3동, 상하동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용인시병선거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풍덕천2동, 신봉동, 죽전2동, 동천동, 상현1동, 성북동
용인시정선거구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 보정동,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상현2동
파주시갑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탄현면,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
파주시을선거구	문산읍, 법원읍, 파주읍, 월릉면, 적성면, 파평면, 군내면, 진동면, 금촌1동, 금촌2동, 금촌3동
이천시선거구	이천시 일원
안성시선거구	안성시 일원
김포시갑선거구	고촌읍,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장기동
김포시을선거구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화성시갑선거구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
화성시을선거구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진안동, 기배동, 화산동
화성시병선거구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화성시정선거구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광주시갑선거구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광주시을선거구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양주시선거구	양주시 일원
포천시가평군선거구	포천시 일원, 가평군 일원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여주시 일원, 양평군 일원
강원도(지역구 : 8)	
춘천시갑선거구	신북읍,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1동, 효자3동, 신사우동
춘천시을선거구	동산면, 신동면, 남면, 동내면, 남산면, 효자2동, 석사동, 퇴계동, 강남동
원주시갑선거구	문막읍, 호저면, 지정면, 부론면, 귀래면, 중앙동, 원인동, 일산동, 학성동, 단계동, 우산동, 태장1동, 태장2동, 무실동
원주시을선거구	소초면, 흥업면, 판부면, 신림면, 개운동, 명륜1동, 명륜2동, 단구동, 봉산동, 행구동, 반곡관설동
강릉시양양군 선거구	강릉시 일원, 양양군 일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선거구	동해시 일원, 태백시 일원, 삼척시 일원

선거구명	선거구역
속초시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고성군 선거구	속초시 일원, 철원군 일원, 화천군 일원, 양구군 일원, 인제군 일원, 고성군 일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 평창군정선군선거구	홍천군 일원, 횡성군 일원, 영월군 일원, 평창군 일원, 정선군 일원
충청북도(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청주시서원구선거구	청주시 서원구 일원
청주시흥덕구선거구	청주시 흥덕구 일원
청주시청원구선거구	청주시 청원구 일원
충주시선거구	충주시 일원
제천시단양군선거구	제천시 일원, 단양군 일원
보은군옥천군영동군 괴산군선거구	보은군 일원, 옥천군 일원, 영동군 일원, 괴산군 일원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선거구	증평군 일원, 진천군 일원, 음성군 일원
충청남도(지역구 : 11)	
천안시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천안시 서북구 성정1동, 성정2동
천안시을선거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천안시병선거구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선거구	공주시 일원, 부여군 일원, 청양군 일원
보령시서천군선거구	보령시 일원, 서천군 일원
아산시갑선거구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동, 온양2동,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온양6동
아산시을선거구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서산시태안군선거구	서산시 일원, 태안군 일원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	논산시 일원, 계룡시 일원, 금산군 일원
당진시선거구	당진시 일원
홍성군예산군선거구	홍성군 일원, 예산군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전라북도(지역구 : 10)	
전주시갑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우아2동
전주시을선거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전주시병선거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덕진동, 금암1동, 금암2동, 팔복동, 우아1동, 호성동, 송천1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군산시선거구	군산시 일원
익산시갑선거구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익산시을선거구	낭산면, 망성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1동, 영등2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정읍시고창군선거구	정읍시 일원, 고창군 일원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선거구	남원시 일원, 임실군 일원, 순창군 일원
김제시부안군선거구	김제시 일원, 부안군 일원
완주군진안군무주군 장수군선거구	완주군 일원, 진안군 일원, 무주군 일원, 장수군 일원
전라남도(지역구 : 10)	
목포시신안군선거구	목포시 일원, 신안군 일원
여수시갑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동문동, 한려동, 중앙동, 총무동, 광림동, 서강동, 대교동, 국동, 월호동, 여서동, 문수동, 미평동, 둔덕동, 만덕동
여수시을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화양면, 화정면, 쌍봉동, 시전동, 여천동, 주삼동, 삼일동, 묘도동
순천시갑선거구	해룡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
순천시을선거구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덕연동, 풍덕동, 왕조1동, 왕조2동
나주시화순군영암군 선거구	나주시 일원, 화순군 일원, 영암군 일원
광양시담양군곡성군 구례군선거구	광양시 일원, 담양군 일원, 곡성군 일원, 구례군 일원
고흥군보성군장흥군 강진군선거구	고흥군 일원, 보성군 일원, 장흥군 일원, 강진군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선거구	해남군 일원, 완도군 일원, 진도군 일원
무안군함평군영광군 장성군선거구	무안군 일원, 함평군 일원, 영광군 일원, 장성군 일원
경상북도(지역구 : 13)	
포항시북구선거구	포항시 북구 일원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	포항시 남구 일원, 울릉군 일원
경주시선거구	경주시 일원
김천시선거구	김천시 일원
안동시예천군선거구	안동시 일원, 예천군 일원
구미시갑선거구	송정동, 원평1동, 원평2동, 지산동, 도량동, 선주원남동, 형곡1동, 형곡2동, 공단1동, 공단 2동, 광평동, 상모사곡동, 임오동, 신평1동, 신평2동, 비산동
구미시을선거구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울진군선거구	영주시 일원, 영양군 일원, 봉화군 일원, 울진군 일원
영천시청도군선거구	영천시 일원, 청도군 일원
상주시문경시선거구	상주시 일원, 문경시 일원
경산시선거구	경산시 일원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덕군선거구	군위군 일원, 의성군 일원, 청송군 일원, 영덕군 일원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선거구	고령군 일원, 성주군 일원, 칠곡군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선 거 구 명	선 거 구 역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구 : 3)	
제주시갑선거구	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지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제주시을선거구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서귀포시선거구	서귀포시 일원

3.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결과

가. 총괄

❖ 지역구 의석수 : 253(±0)

- 분 구 : +4
- 통 합 : △4
- 구역조정 : 2
-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 11
- 명칭변경 : 4

❖ 선거구 평균인구 : 204,847명

- 최 고 : 천안시을선거구(273,124명)
- 최 저 : 여수시을선거구(137,068명)

나. 선거구 획정안

❖ 분구 선거구 : +4

- 세 종(+1)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특별자치시갑·을
- 경 기(+1)
 - 화성시갑·을·병 → 화성시갑·을·병·정
- 강 원(+1)
 - 춘 천 시 → 춘천시갑·을
- 전 남(+1)
 - 순 천 시 → 순천시갑·을

❖ 통합 선거구 : △4

- 서 울(△1)
 - 노원구갑·을·병 → 노원구갑·을
- 경 기(△1)
 - 안산시상록구갑·상록구을·단원구갑·단원구을 → 안산시갑·을·병
- 강 원(△1)
 -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 전 남(△1)
 -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합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합평군영광군장성군

❖ 구역조정 선거구 : 2

- 인 천(1)
 - 중구동구강화군웅진군, 남구갑·을 → 중구강화군웅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 ※ 남구 → 미추홀구 명칭변경
- 경 북(1)
 -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안동시예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 선거구 : 11

- 부 산(1) : 남구갑·을
- 인 천(2) : 남동구갑·을, 서구갑·을
- 경 기(5) : 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평택시갑·을, 고양시갑·을·병·정, 용인시을·병·정

- 전 북(1) : 전주시갑·병
- 전 남(1) : 여수시갑·을
- 경 남(1) : 김해시갑·을

❖ 명칭변경 : 4

- 경 기(4)

-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 부천시갑·을·병·정

※ 부천시 행정구 폐지에 따른 명칭변경

다. 선거구획정안 시·도별 조정내역

시·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계	±0	253	253	
서 울	△1	노원구갑·을·병	노원구갑·을	통 합
부 산	±0	남구갑·을	남구갑·을	경계조정
인 천	±0	중구동구강화군웅진군 남구갑·을	중구강화군웅진군 동구미추홀구갑·을	구역조정
		남동구갑·을	남동구갑·을	경계조정
		서구갑·을	서구갑·을	경계조정
세 종	+1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갑·을	분 구
경 기	±0	수원시병·무	수원시병·무	경계조정
		부천시원미구갑 부천시원미구을 부천시소사구 부천시오정구	부천시갑·을·병·정	명칭변경
		광명시갑·을	광명시갑·을	경계조정
		평택시갑·을	평택시갑·을	경계조정

시·도	증감	현 행	획 정 안	비 고
		안산시상록구갑 안산시상록구을 안산시단원구갑 안산시단원구을	안산시갑·을·병	통 합
		고양시갑·을·병·정	고양시갑·을·병·정	경계조정
		용인시을·병·정	용인시을·병·정	경계조정
		화성시갑·을·병	화성시갑·을·병·정	분 구
강 원	±0	춘천시	춘천시갑·을	분 구
		강릉시 동해시삼척시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속초시고성군양양군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강릉시양양군 동해시태백시삼척시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통 합
전 북	±0	전주시갑·병	전주시갑·병	경계조정
전 남	±0	여주시갑·을	여주시갑·을	경계조정
		순천시	순천시갑·을	분 구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영암군 광양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 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통 합
경 북	±0	안동시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안동시에천군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상주시문경시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구역조정
경 남	±0	김해시갑·을	김해시갑·을	경계조정

부록 2

구·시·군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샘플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부록 2

구·시·군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샘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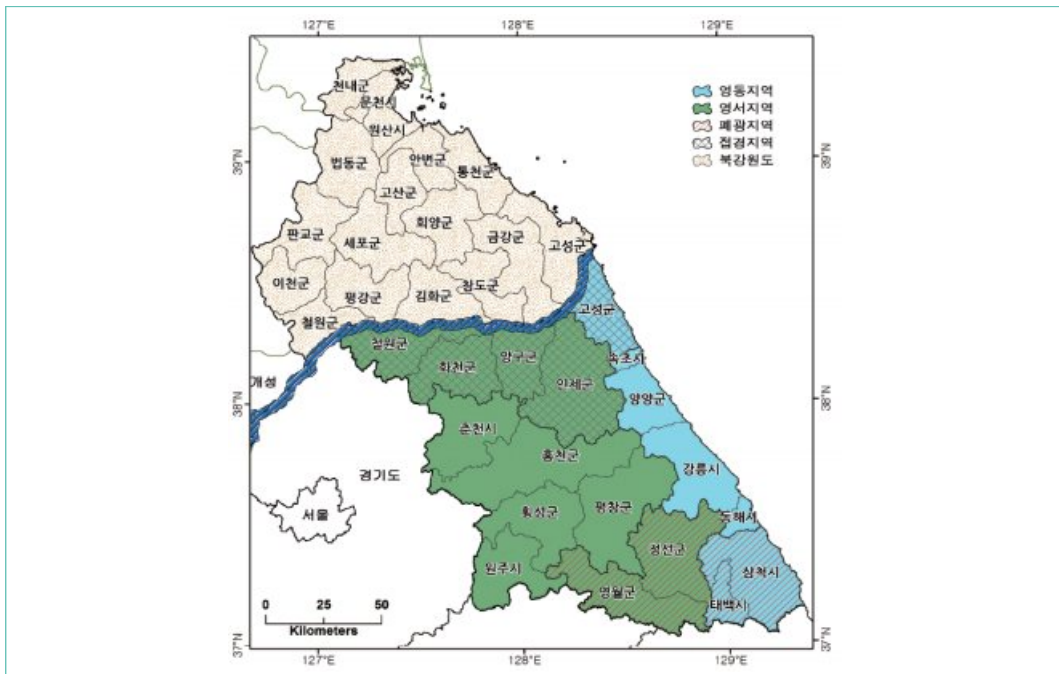
선거구획정 기초자료 (강원태백시)

강원도 지역구분

(지역구분의 기준 등)

- 지역구분은 자연적 특징과 인문적 특징에 근거하여 구분된 지역에서 통일된 특성이 나타나도록 일정한 기준에 의해 경계를 설정한 것.

〈강원도 지역구분〉



출처 : 한국지리지 강원도편

- 강원도는 과거에 철령관의 동쪽을 의미하는 관동지방으로 분류되었으며, 강원도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연적인 경계에 해당하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세분함.
- 광복과 6·25전쟁을 겪으면서 강원도 또한 남북으로 양분되어 현재 북강원도와는 60년 이상 단절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생겨난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에 접하고 있는 지역은 지난 60년 간 남북의 군사적인 긴장관계 속에서 접경지역으로서의 동질성과 특수성을 형성하게 됨.
- 6·25 전쟁 이후 남한의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석탄 등 지하자원이 풍부한 강원도 남부 지역은 짧은 기간에 성장과 쇠락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들 지역은 폐광으로 인하여 급격한 경기 침체와 산업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음.
- 이러한 자연적·인문적 현실을 반영하여 강원도 지역을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으로 구분 가능

(영동지역)

- 강원도는 태백산맥의 철령,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백봉령 등의 험준한 고개를 기준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으로 구분되며, 영동지방은 태백산맥의 동쪽 사면으로 경사가 급하고 하천이 짧으며, 좁은 해안평야와 해안단구가 발달해 있음.
- 영동지방은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늘어선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와 태백시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중심지는 대관령을 통해 영동지방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하는 강릉임.
- 영동지방은 강릉시를 중심으로 다시 북부와 남부로 세분할 수 있는데, 영동 북부지역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수산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으며,
- 영동 남부지역에 해당하는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는 태백산맥이 해안 가까이에 다가가 있어 경지율은 매우 낮지만 풍부한 석탄과 시멘트 등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공업이 발달함.

(영서지역)

- 영서지방은 춘천을 중심으로 하는 영서 북부와 원주를 중심으로 하는 영서 남부지역으로 구분
- 영서 북부지역은 춘천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한탄강 유역의 철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북한강 유역에 속해 있으며, 춘천시와 홍천군을 제외하면 대부분 군사분계선과 인접하고 민간인 통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접경지역에 해당

- 영서 남부지역은 원주시와 횡성·영월·정선·평창군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남한강 유역에 속해 있음.
- 원주는 조선시대에 강원도 관찰사가 직무를 보던 관청인 강원감영이 자리할 정도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지역으로 일찍부터 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 서비스업 및 공업이 발달

(폐광지역)

- 폐광지역이란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 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이들 폐광지역을 지원
-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이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폐광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협궤열차 등의 관광리조트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됨.

(접경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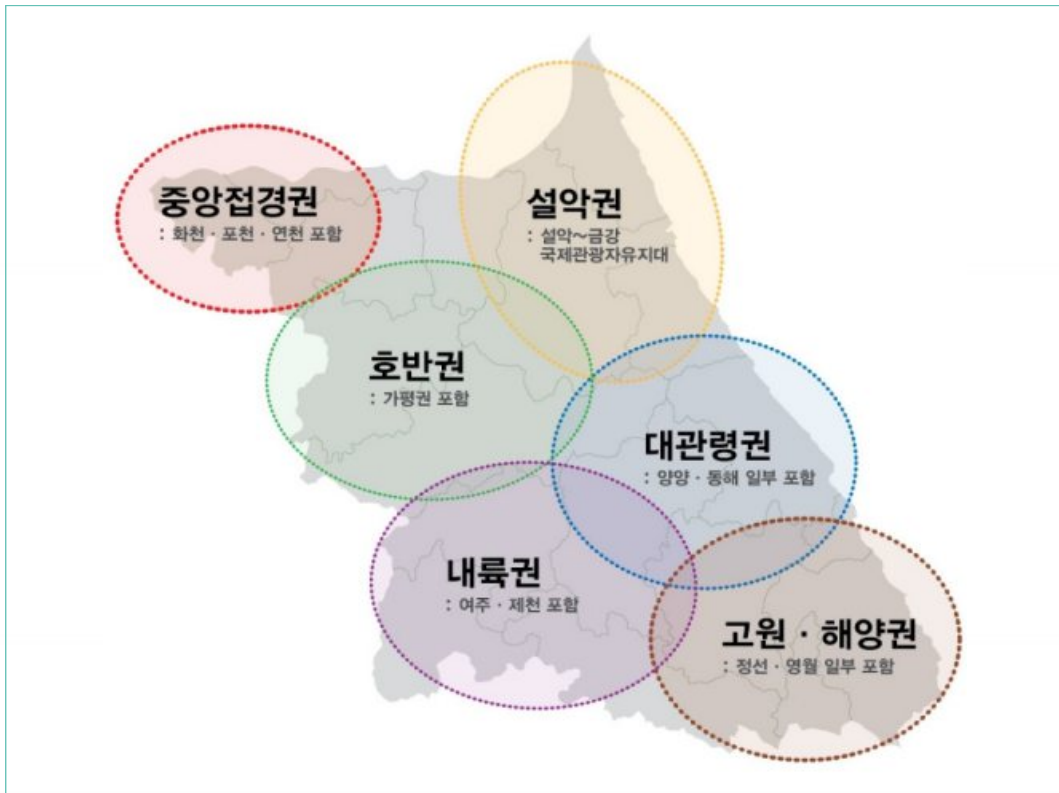
- 강원도의 경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이 접경지역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에 해당
- 이들 지역을 위해「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2014년 제정하여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지원

(강원도 종합계획에 따른 생활권 구분)

- 강원도의 지역생활권은 크게 6개 권역으로 구분 가능
 - 전통적인 도농복합권역인 춘천, 원주, 강릉의 3대 중심도시권역
 - 삼척·동해·태백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폐광지역권역
 - 춘천~속초 고속철도축의 결절도시인 속초·양양·고성권역
 - 접경지역축의 서쪽 결절점인 철원권역

- 철원권은 사실상 의정부 생활권으로서 강원도 지역에서는 특수생활권 지역
 - 강원도의 서쪽에서 수도권과 연계, 북한과의 연계 관문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결절 지역

〈강원의 지역생활권〉



출처 : 2020 강원도 종합계획

- (북한강·소양호반권)
 - 행정구역 :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 인접구역 : 경기도 가평군
 - 권역특성 : 강원도 3대 거점도시 중 하나이자 도청 소재지인 춘천시를 거점으로 수도권 동북부를 통하여 설악-금강권 및 동해안과 소통하는 관문
- (남한강·치악내륙권)
 - 행정구역 : 원주, 횡성, 영월

- 인접구역 : 경기도 여주-이천, 충북 제천
- 권역특성 : 물류·유통·교통의 중심으로 원주시를 거점으로 수도권 동부와 국토남부의 관문. 특히 여주-이천 산업축의 연장선 상에서 산업도시권 역할 기대

● (백두대간 대관령권)

- 행정구역 : 강원도 동해안의 중심도시 강릉을 거점으로 평창, 정선을 아우르는 권역
- 인접구역 : 양양군, 동해시
- 권역특성 : 수도권과 환동해권을 연계하는 관문권역. 강릉의 문화와 동해안 관광, 고원리조트를 망라하는 관광 거점지대

● (남부고원·해양권)

- 행정구역 : 석탄과 석회석 등 강원도의 지하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태백, 삼척, 동해의 3대도시를 거점으로 평창, 정선, 영월의 일부를 아우르는 권역
- 인접구역 : 경북 울진, 봉화, 충북 제천
- 권역특성 : 지하자원과 에너지를 통하여 새로운 대체산업을 모색하는 강원도의 전통 공업지역이자 환동해권 관문

● (설악권)

- 행정구역 : 설악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속초, 양양, 고성, 인제권역
- 인접구역 : 북쪽으로 금강산관광특구
- 권역특성 : 강원도 최고의 관광권역으로서 현재 열려있는 2대 한반도 남북 통로의 한 축

● (중앙접경권)

- 행정구역 : 철원
- 인접구역 : 화천, 경기도 포천, 연천, 의정부
- 권역특성 : 실질적 의정부생활권으로 춘천권과 연계성 강화 및 강원도에서 독자적 권역으로 특성화가 필요한 권역

강원도 선거구현황 및 조정안

(강원도 역대 선거구 현황)

제13대('88)	제14대('92)	제15대('96)	제16대('00)	제17대('04)	제18대('08)	제19대('12)	제20대('16)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갑 춘천시을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	춘천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갑 원주시을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	원주시갑 원주시을	원주시갑 원주시을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갑 강릉시을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강릉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삼척시	동해시 삼척시	동해시 삼척시	동해시 삼척시	동해시 삼척시
삼척시 삼척군	삼척시 삼척군	삼척시					
태백시	태백시	태백시 정선군	태백시 정선군	태백시영월 군평창군정 선군	태백시영월 군평창군정 선군	태백시영월 군평창군정 선군	태백시횡성 군영월군평 창군정선군
정선군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	영월군 평창군	영월군 평창군	영월군 평창군				
속초시 고성군	속초시 고성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명주군 양양군	명주군 양양군						
춘성군 양구군 인제군	춘성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철원군	화천군 철원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홍천군	홍천군 횡성군	홍천군 횡성군	홍천군 횡성군	홍천군 횡성군	홍천군 횡성군	
원성군 횡성군	원성군 횡성군						

* '95년 춘천시+춘천군(舊춘성군), 원주시+원주군(舊원성군), 강릉시+명주군, 삼척시+삼척군 통합

* '80년 동해시(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을 통합하여) 출범

* '81년 태백시(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분리되어) 출범

10-6. 태백시

1. 기초자료

- 면 적 : 303.53km²
 - ※ 강원 1.8%
- 인 구 수 : 44,687명(2019. 1. 31. 현재)
 - ※ 강원 인구의 2.9%
- 주요관청 : 태백시청(상장동)

2. 도시연혁

- 조선 인조 9년(1631년) 태백은 삼척도호부의 9개 행정구역 중 하나인 장생리 또는 장성리에 속하게 됨.
- 영조 14년(1738년) 삼척의 9개 행정구역을 12개 면으로 개편하였고 이때 장생리는 상장생면과 하장생면으로 분리
- 고종 32년(1895년) 삼척도호부를 삼척군으로 개칭
- 1914년에 삼척군 상장생면이 상장면으로 개칭되었고 1960년에 상장면이 옛 이름을 따라 장성읍으로 승격
- 1963년 장성읍 황지출장소, 1964년 장성읍 철암출장소가 각 설치
- 1973년 장성읍 황지출장소가 황지읍으로 승격
- 1981년에 삼척군 장성읍과 황지읍이 합쳐져 태백시로 승격

3. 행정구역 및 선거구

가. 생활권

-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을 5개의 중생활권으로 구분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비 고
1개 대생활권	5개 중생활권	12개소권	
태백대생활권	황지생활권 (황지, 상장, 문곡소도동)	3개소권	1도심
	장성생활권 (장성, 문곡소도, 구문소동)	3개소권	1부도심
	황연생활권 (황연동)	2개소권	
	철암생활권 (철암, 구문소동)	2개소권	
	삼수생활권 (삼수, 황연동)	2개소권	

출처 : 2020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나. 행정구역

- 태백시는 8개동으로 구성
- 구 황지읍 지역
 - 삼수동 : 한강, 낙동강, 오십천 유역에 모두 걸쳐 있어, '세 물'이란 뜻으로 동명을 '삼수(三水)'라 지은 것. 태백역 및 버스터미널이 있음.
 - 상장동 : 행정, 교육기관 밀집지역
 - 황연동 : 태백선과 영동선이 만나는 백산역과 동백산역, 통리역이 이곳에 있음.
 - 황지동 : 황지연못, 태백시문화예술회관, 강원관광대학교가 위치
- 구 장성읍 지역
 - 구문소동 : 구문소에서 명칭 유래. 수질환 경사업소와 모터스포츠 레저단지가 있음.
 - 문곡소도동 : 문곡동과 소도동을 통합해서 만들어졌으며, 태백종합경기장과 연화산 유원지가 있음.
 - 장성동 : 태백시 탄광산업의 배후 상업서비스 지구, 태백경찰서, 장성광업소 위치
 - 철암동 : 과거 광업지역으로 번영을 누렸으나 에너지정책 합리화 후 몰락. 철암역사와 석탄시설이 있음.



다. 국회의원선거구 연혁

제15대(13)	제16대(9)	제17대(8)	제18대(8)	제19대(9)	제20대(8)
태백시정선군	태백시정선군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태백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태백시횡성군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영월군평창군	영월군평창군				
홍천군횡성군	홍천군횡성군	홍천군횡성군	홍천군횡성군	홍천군횡성군	

- 199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인구기준을 4:1로 판시함에 따라 정치권은 인구상·하한을 각 30만, 7만 5천으로 합의하고 제15대 국회의원선거구를 조정
 - 제14대까지 태백시와 정선군은 각 단독구였으나 15대에서 통합됨.
- 2001년 현재결정 인구기준 3:1(정치권 합의 31만 5천명, 10만 5천명)로 조정되고, 강원도 선거구가 1개 줄면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되어 태백정선과 영월평창이 통합됨.
- 2014년 현재결정 인구기준 2:1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구가 조정되어 태백정선 영월평창에 횡성군까지 통합됨.

4. 지리여건

- 태백시는 강원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과 동으로는 삼척시, 서로는 정선군과 영월군, 남으로는 경상북도 봉화군과 경계
- 태백산맥의 어미산인 태백산의 소재지이며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
 - ※ 백두대간은 태백시지역에 이르러 태백시 북쪽에 있는 함백산을 지난 후 서쪽에 있는 태백산을 지나 소백산쪽으로 내려가므로 태백시 시가지는 전역이 백두대간 동쪽에 위치. 또 문화적으로나 삼척군에서 갈라져나온 역사적 사실을 들어 영동 지방으로 취급
- 매봉산(1,303m), 백병산(1,259m), 태백산(1,567m), 함백산(1,573m), 금대봉(1,418m) 등 높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 태백시 중심에 우뚝 솟은 연화산(1,171m)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

〈태백시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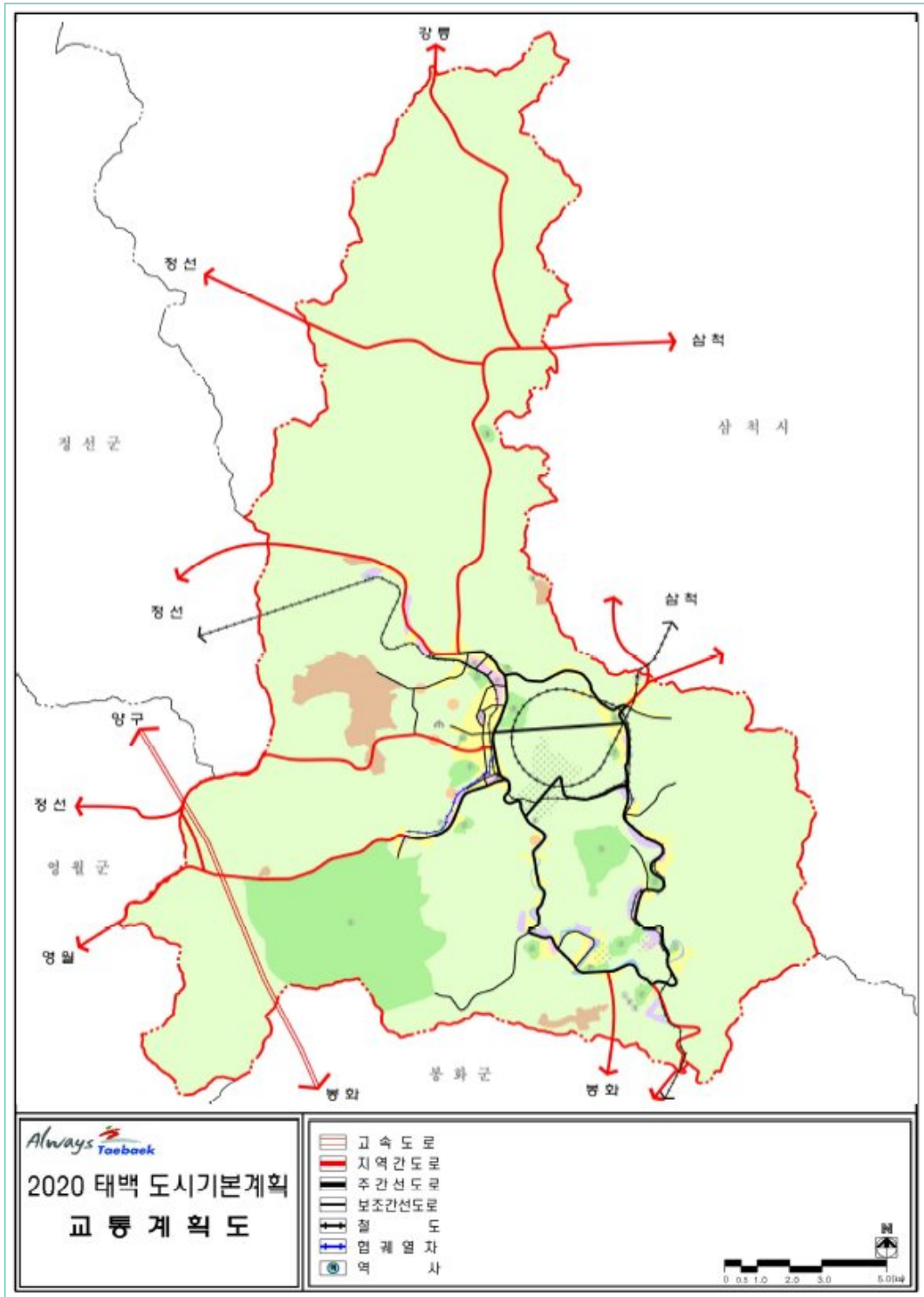
출처 : 태백시 홈페이지

5. 교통여건

- 지역 간 연결도로 : 2개 노선[국도38호선(정선-삼척), 국도35호선 (태백-강릉)]
- 주간선도로 : 영월, 봉화, 삼척 등 주요 인근도시와 지역 간 연결[국도 31호선, 시도 423호선(구문소-통리)]
- 보조간선도로 : 간선도로간 연결도로이며 시가지내 주요지역간 연결
- 인접한 시·군과의 교통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음(시·군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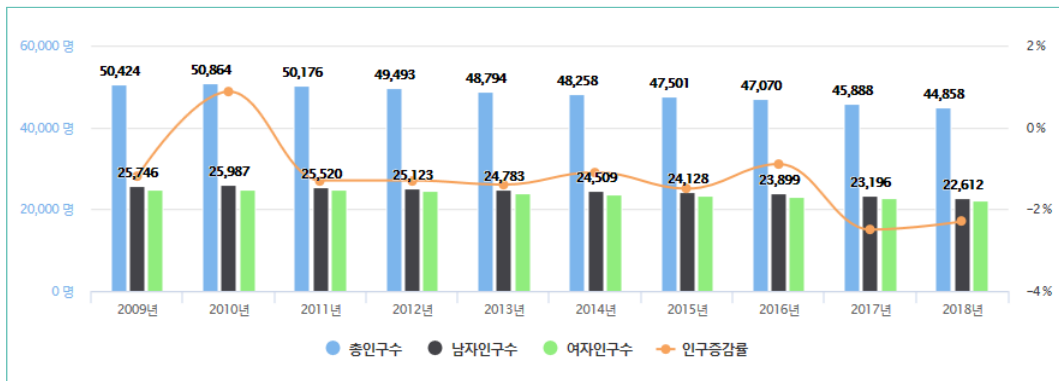
대상지역	거리(km)	소요시간(자동차)	비 고
삼척시	47.5	58분	38번 국도
정선군	53.3	1시간 4분	38번 및 59번 국도
동해시	56.7	1시간	동해고속도로, 38번 국도
영월군	64.5	1시간 8분	38번 국도
평창군	83.6	1시간 35분	38, 42, 59번 국도
횡성군	155.2	2시간 7분	중앙고속도로, 38번 국도

〈태백시 교통체계도〉



출처 : 2020 태백시 도시기본계획

6. 인구변화



- (인구변화) 과거 제1의 광업도시였으나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50여 개나 되던 광산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그 결과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의 침체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981년 태백시 출범시 11만 4,095명에서 1987년 12만 208명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 8만 4,559명, 1995년 6만 4,850명으로 급격히 감소

* 1980년대 말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급격히 도시 쇠퇴

석탄 산업 합리화 정책

1986년부터 국제 에너지 환경의 변화로 석유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으나 국내 석탄(무연탄) 가격은 채산성 하락으로 계속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이와 함께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가스, 석유, 전기 등 고급 에너지에 대한 선호 추세가 가속화되고 석탄 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당시 석탄은 전체 가구의 77%가 사용하는 서민용 연료인 연탄의 원료이며, 국가 에너지 자원의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원이었다.

따라서 적절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영세 및 부실 탄광을 정리하는 석탄 산업의 구조 조정을 실시하였다.

- (재개발 등) 특이사항 없음.

부록 3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소개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부록 3

선거구획정 지원프로그램 소개



1. 개발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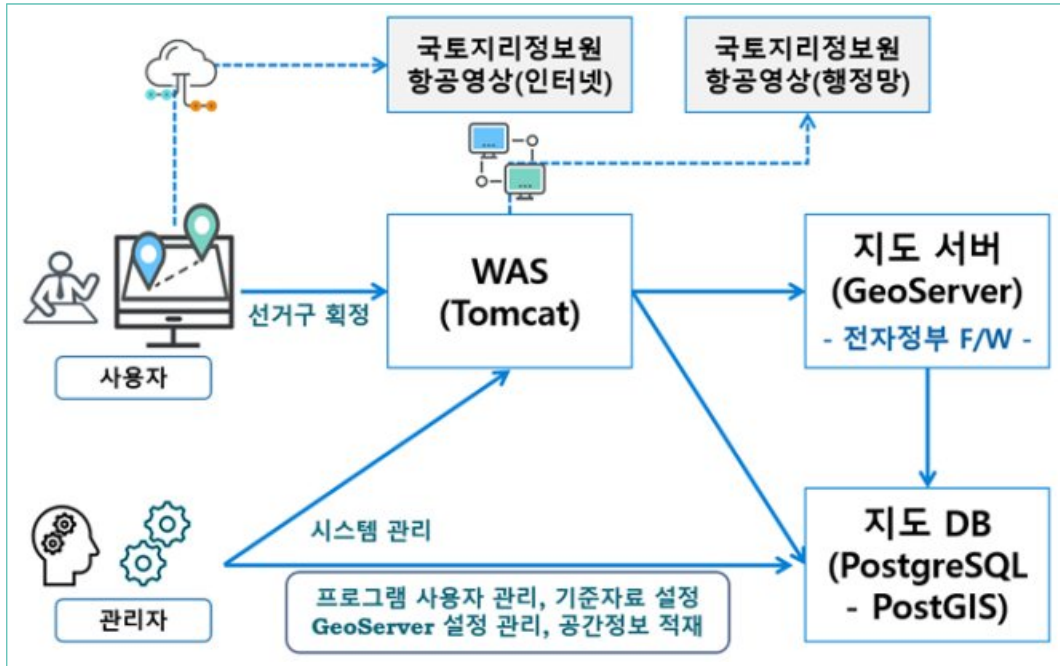
- 기존 선거구획정에서는 선거구획정의 기초자료인 읍·면·동별 인구수와 지도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할 프로그램이 없어 선거구획정의 신속·정확성에 한계
- 인구수와 지도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하여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제고

2. 프로그램 구성

가. 시스템 구성

- 시스템은 서버, 국토지리정보원, 사용자로 구성
- 서버에는 인구기준일 현재 읍·면·동별 인구수 및 행정동 지도 탑재
- 국토지리정보원과는 행정망으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지도데이터 공유
- 사용자는 내부망을 통하여 프로그램 서버와 연결

〈시스템 구성도〉



나. 화면 구성

1) 획정기준 정보

- 화면 상단에는 지역구 의석수, 전체 인구수, 평균 및 상·하한 인구수 등 선거구획정 기준 정보 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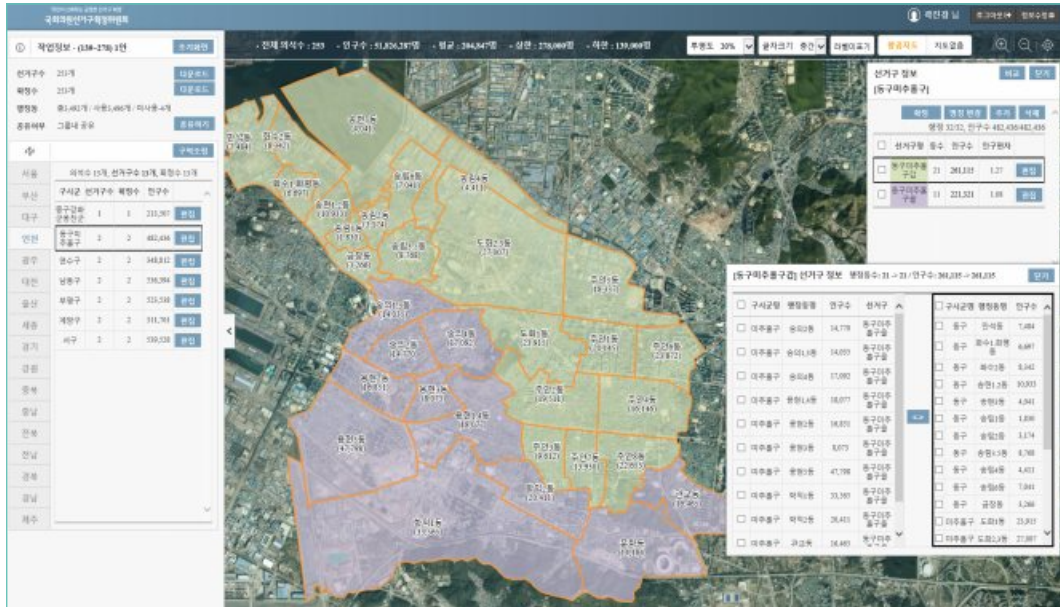
2) 선거구 정보

- 화면 좌측에는 시·도별 구역조정 및 경계조정 기능과 내역을 표출

3) 지도 정보

- 지도 정보는 항공지도, 일반지도 및 백지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지도는 지세·도심구조, 일반지도는 교통여건 확인 시 활용

〈프로그램 화면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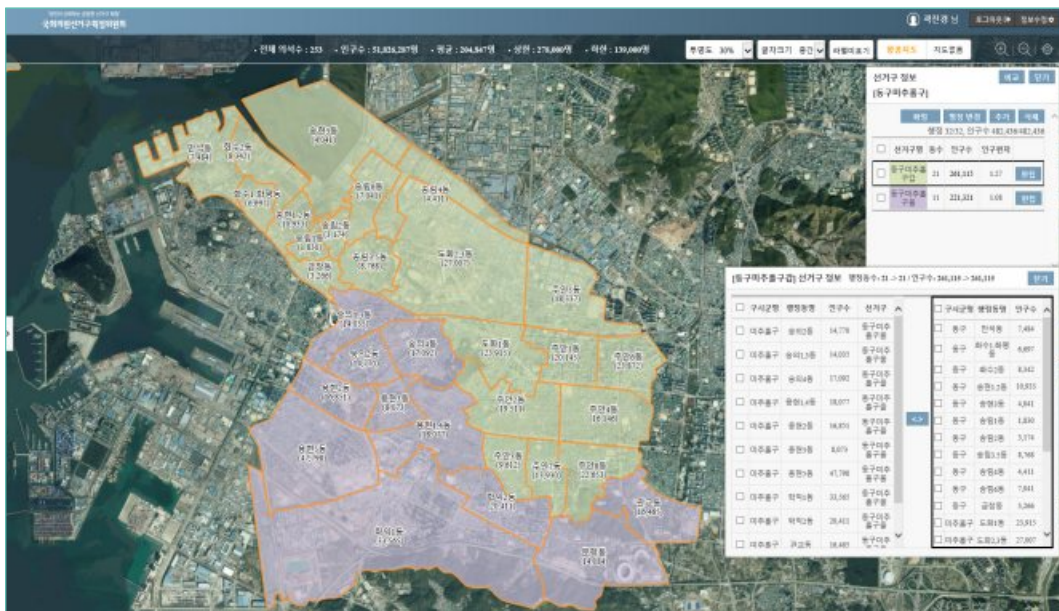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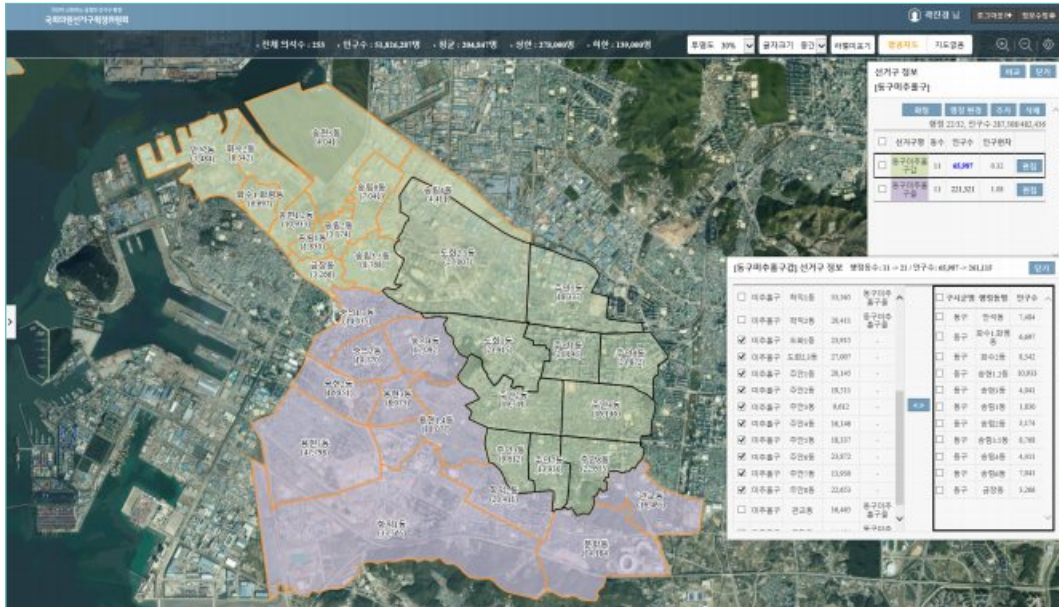


3. 프로그램 주요기능

가. 구역조정 및 경계조정

- 화면에 표시되는 행정구역(구·시·군 또는 읍·면·동)을 선택하여 선거구 구역조정 및 경계조정
- 선거구획정 시 인구수가 자동 계산되고,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생활권 등을 지도 정보를 통해 실시간 확인
- 필요한 경우 지도를 확대·축소하여 선거구획정 시 고려요소를 확인하고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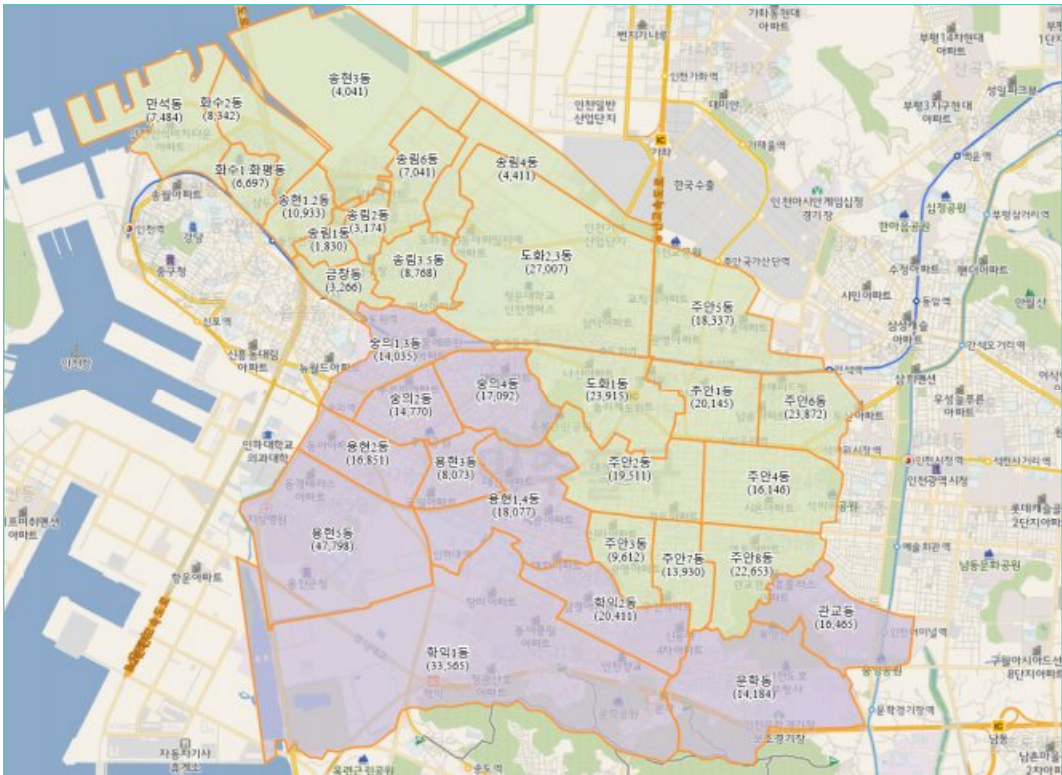
<선거구 경계조정 예시>



나. 선거구지도 다운로드

- 선거구획정 시물레이션 후 선거구별 지도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위원회의 시 논의 참고 자료로 활용

〈지도 다운로드 예시〉



다. 선거구구역표 추출

- 선거구획정 완료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구구역표 자동 추출하여 선거구획정 보고서 작성

〈선거구구역표 추출 예시〉

선거구명	선거구역	인구수	선거구역(상세)
서울특별시(지역구 : 49)			
종로구	종로구 일원	152,866	종로구 청운효자동, 종로구 사직동, 종로구 삼청동, 종로구 부암동, 종로구 평창동, 종로구 무악동, 종로구 교남동, 종로구 가회동,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구 종로 5.6가동, 종로구 이화동, 종로구 혜화동, 종로구 창신계동,

선거구명	선거구역	인구수	선거구역(상세)
			종로구 창신제2동, 종로구 창신제3동, 종로구 송인제1동, 종로구 송인제2동
중구 성동구갑	성동구 왕십리제2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 사근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용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 송정동, 용답동	224,891	성동구 왕십리제2동,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성동구 마장동, 성동구 사근동, 성동구 행당제1동, 성동구 행당제2동, 성동구 용봉동, 성동구 성수1가제1동, 성동구 성수1가제2동, 성동구 성수2가제1동, 성동구 성수2가제3동, 성동구 송정동, 성동구 용답동
중구 성동구을	중구 일원, 성동구 금호1가동, 금호2.3가동, 금호4가동, 옥수동	208,704	중구 소공동, 중구 회현동, 중구 명동, 중구 필동, 중구 장충동, 중구 광희동, 중구 을지로동, 중구 신당동, 중구 다산동, 중구 약수동, 중구 청구동, 중구 신당제5동, 중구 동화동, 중구 황학동, 중구 중림동, 성동구 금호1가동, 성동구 금호2.3가동, 성동구 금호4가동, 성동구 옥수동
용산구	용산구 일원	229,167	용산구 후암동, 용산구 용산2가동, 용산구 남영동, 용산구 청파동, 용산구 원효로제1동, 용산구 원효로제2동, 용산구 효창동, 용산구 용문동,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구 이촌제1동, 용산구 이촌제2동, 용산구 이태원제1동, 용산구 이태원제2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구 보광동

4. 프로그램 개발관련 대내·외 협조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 통계 자료 협조
 - 인구기준일 이후 읍·면·동 등 행정구역 변경현황 제공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행정동 지도 협조
 - 매월 말일 현재 행정동 지도 데이터 제공
- 국토지리정보원 : 전자지도 협조
 - 국가공간정보(전자지도)를 국가 행정망을 통해 제공
 - 전국 항공지도, 일반지도, 백지도 최신 자료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보기반과) : 정보자원 지원
 - 운용 서버,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등 지원
 - 국토지리정보원 전자지도 활용을 위한 행정망 네트워크 지원
 - 네트워크 운영 및 접속 권한 관리를 통한 정보 보안 관리

부록 4

보도자료 및 언론보도

1. 보도자료
2. 언론이 바라본 선거구획정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1. 보도자료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제공일자 2018. 10. 4. 총 5면

www.nec.go.kr

공보과 02)503-2791
02)507-2758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 개정 요청 = 지난 제20대 국회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 재연 우려, 국회의장에 입장 전달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kt alleh tv 273번  t-broad 205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라 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여야 같은 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재적위원 3분의 2) 규정이 더해져 선거구 획정안을 법정 기일 내에 제출하지 못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획정위원 구성은 국회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획정위 위원 구성 당시 정당이 사실상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획정위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현행 규정은 선거구 획정안 의결에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워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나타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위도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 확정안 제출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정위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구성 방식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20대 국선 직후인 2016년 6월 23일 확정위의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고, 높은 기준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중앙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확정위가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여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독립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 관련 사무일정》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 2018. 10. 15.(월)까지
- 선거구 확정안 국회의장에게 제출 : 2019. 3. 15.(금)까지
- 국회의원지역구 확정(국회) : 2019. 4. 15.(월)까지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 2020. 4. 15.(수)

붙임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16. 6. 23.제출)

[붙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2016. 6. 23. 국회 제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 강화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변경(§24)

현 행

-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함(§24④).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보받은 9명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함(§24③).

개정의견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6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제안이유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출범하였음.

- 그러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을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당이 대부분의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에 예속되어 각 정당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변경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받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구 분	위원정수	추천권자	근거법률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11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1명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학계, 법조계, 인터넷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 추천	
중앙 선거방송토론 위원회	11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1명	공직선거법
		공영방송 추천 각 1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추천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9명 이내	국회 교섭단체 정당 추천 각1명	공직선거법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단체의 전문가 등 포함	

〈주요 국가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방식〉

국 가	인 원	위 원 구 성 방 식
영 국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의장 · 고등법원 판사 · 내무장관 및 환경교통장관 지명 각 1명
독 일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장 · 행정재판소 판사 1명 · 선거위원회위원장이나 내무부장관 등 지방정부 공무원 5명
프랑스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임명 각 1명 · 최고행정법원, 최고법원, 회계법원의 법관 중 각 1명
호 주	4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 위원 · 해당 주의 선거관·고위선거관리관 · 해당 주의 토지측량청장 · 해당 주의 총감사관
캐나다	3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사 1명 · 하원의장 임명 2명
일 본	7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수, 변호사 등 총리가 임명

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안의 의결정족수 요건 완화 (§24)

현 행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24①).

※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규정 없음.

개정 의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그 보고서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함.

제안 이유

- 선거구획정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함에 있어 특별의결정족수를 요구하여 높은 수준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선거구획정에 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어려워 선거구획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선거구획정안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여 선거구획정이 법정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식 출범 = 첫 위원회의를 열고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ktolleh tv 273번  t-broad 205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가 공식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12월 7일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2019. 3. 15.)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19. 4. 15.)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손창열 변호사,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조숙현 변호사,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선정된 8명을 획정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붙임 : 관련 사진 3매.

관련 사진



7일 오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첫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7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과 위원들이 선거구획정위원회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7일 오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과 위원들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획정위,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구 정수 등 확정 촉구 =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시한 준수 위해 늦어도 2월 15일까지는 확정돼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월 14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 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2월 15일(금)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3차 위원회의를 열고 조속히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2019년 3월 15일)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늦어도 법정시한을 한 달 앞둔 2월 15일(금)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획정위원들은 획정위원회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 논의과정 외에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현지 실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정당 의견 청취, 관련 단체·각계 전문가 대상 공청회 개최 등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정개특위에 이와 같이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2019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선거일 전 1년(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7일 출범 이후 이날 제3차 위원회의까지 3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달 중 관계기관 자료 요청 및 의견 청취, 관련 단체·전문가 대상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가 1월 31일(목) 1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316호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7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대한애국당)과 4개 학술단체(대한지리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행정학회)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11명이 참석하여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2019년 3월 15일)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이날 공청회를 열고 정당·학계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의견을 우선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여망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지역구 정수 등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속히 확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붙임 : 1. 공청회 개요 1부.
2. 공청회 진술인 명단 1부. 끝.

[붙임 1]

공청회 개요

1. 개요

- 제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19. 1. 31.(목) 14:00 ~ 17:00
- 장소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316호
- 방법 : 진술인 발표 및 위원 질의에 대한 진술인 답변

2. 참석대상(예상 : 100여명)

- 진술인 : 11명(정당 추천 7명, 학계 추천 4명)
- 획정위원회 : 19명(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및 직원)
- 일반 참석자 : 70여명(정당·학회·언론사·시민단체 관계자 등)

3. 진행방법

시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고
14:00 ~ 14:10	10분	개회	
		위원장 인사	
		진술인 소개	
14:10 ~ 16:10	120분	진술인 발표(각 10분 이내)	
16:10 ~ 17:00	50분	질의·답변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 진행

[붙임 2]

공청회 진술인 명단

추천	소속	성명	비고 (추천단체)
정당	한 신 대 (교 수)	조 성 대	더불어민주당
	부 산 대 (교 수)	정 승 윤	자유한국당
	제19대 국회의원 (변호사)	최 원 식	바른미래당
	대구가톨릭대 (교 수)	안 용 흔	민주평화당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 승 수	정의당
	민 중 당 (정책연구원장)	정 태 흥	민중당
	대한애국당 (사무총장)	박 태 우	대한애국당
학회	경 상 대 (교 수)	이 정 섭	대한지리학회
	전 북 대 (교 수)	송 기 춘	한국공법학회
	동 국 대 (교 수)	박 명 호	한국정치학회
	서 울 대 (교 수)	김 동 욱	한국행정학회

국회의 지역구 정수 등 미통보에 대한 입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2019. 3. 15.)을 준수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늦어도 법정시한 한 달 전인 2월 15일까지 지역구 정수 등을 확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보름 남짓 앞둔 현재까지도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하지 않았고, 우리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과의 약속인 법정시한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인해 매년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선거 일에 임박하여 선거구를 획정했던 전례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어김 없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 거듭하여 지역구 정수 등의 빠른 확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국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속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도를 강구할 것임을 밝힙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발표

= 무거운 책임감 느껴...국회는 하루속히 지역구 정수 등 확정해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8일(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19년 3월 15일)이 경과한 것과 관련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하루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획정위원회는 이날 제9차 위원회의를 열고 법정시한 경과 이후의 회의 진행 일정을 논의하는 한편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결정했다.

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국회는 4월 15일까지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선거구획정 일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 출범 이후 이날 제9차 회의까지 9차례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업무의견 청취, 자료 수집, 전문가 대상 공청회 개최 등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해 왔다.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통보되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회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붙임 :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1부. 끝.

[붙임]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 경과에 대한 입장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시한(2019년 3월 15일)이 지났습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기에 앞서 국민과의 약속인 법정시한 내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하여 관계기관 업무의견 청취와 자료 수집, 전문가 초청 공청회 개최 등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이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관련 논의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7일과 지난 1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였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2는 국회가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는 2019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선거구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선거구획정 일정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하루속히 제21대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 우리 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받는 즉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2019년 3월 18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실시

=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 목적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하여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 선거구 획정에 관한 지역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번 지역의견 청취는 지역별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들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의 전제 조건인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지역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개요

1. 목 적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지역민의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일정 등

대상지역	일시	장소	방법
강원도	10. 14.(월) 14:00	춘천세종호텔 세종홀 (춘천시 봉의산길 31)	• 진술인을 통한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선거구획정방안 의견 청취 • 진술인별 10분 이내 발표 • 진술인 발표·질의답변 후 방정인 발언기회 부여
충청남도	10. 16.(수) 14:00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전라남도	10. 21.(월) 14:00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 2층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북도	10. 23.(수) 14:00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 2층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경상북도	10. 25.(금) 14:00	경상북도청 동라관 세미나실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남도	10. 28.(월) 14:00	경상남도청 본관 2층 회의실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충청북도	10. 30.(수) 14:00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94번길 7)	

3. 진술인

- 추천단체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도당, 학회, 시민단체
- 추천인원 : 각 단체별 1명 ※ 학회의 경우 대상지역별 1명
- 진술내용 :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대한 의견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강원지역 의견 청취 = 10월 14일(월) 14시, 춘천세종호텔 세종홀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강원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강원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14일(월) 14시 강원 춘천시 춘천세종호텔 세종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강원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강원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강원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강원지역 의견 청취 개요

- 일 시 : 2019. 10. 14.(월) 14:00
- 장 소 : 춘천세종호텔 세종홀(강원 춘천시 봉의산길 31)
- 참 석 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4명) : 손창열 위원, 이덕로 위원, 조영숙 위원, 한표환 위원
 - 진술인(8명) : 김대건(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완규(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조직국장), 윤도현(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윤민섭(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이석규(바른미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이승재(민중당 강원도당 위원장), 최철재(경동대학교 정보보안학과 교수), 홍진원(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
- 진행순서

순서	소요시간(예정)	진행순서	비고
1	10분	개회 및 진술인 소개	
2	100분	진술인 발표	진술인별 10분 이내
3	40분	위원과 진술인 간 질의·답변	위원별 10분 이내
4	30분	방청인 발언	방청인별 5분 이내
계	180분(3시간)		

※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충남지역 의견 청취

= 10월 16일(수) 14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충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16일(수) 14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충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충남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충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충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 일 시 : 2019. 10. 16.(수) 14:00
- 장 소 :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지하1층 다목적실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109)
- 참 석 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3명) : 윤광일 위원, 이덕로 위원, 한표환 위원
 - 진술인(7명) : 구본현(여기구국회의원실 보좌관), 김유태(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욱(혜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병문(민중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이승현(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이지훈(정의당 충남도당 정책위원장), 조철희(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 진행순서

순서	소요시간(예정)	진행순서	비고
1	10분	개회 및 진술인 소개	
2	100분	진술인 발표	진술인별 10분 이내
3	40분	위원과 진술인 간 질의·답변	위원별 10분 이내
4	30분	방청인 발언	방청인별 5분 이내
계	180분(3시간)		

※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전남지역 의견 청취 = 10월 21일(월) 14시,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21일(월) 14시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전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남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전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전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 일 시 : 2019. 10. 21.(월) 14:00
- 장 소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2층 컨벤션홀(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참 석 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7명) : 손창열 위원, 윤광일 위원, 이덕로 위원, 조숙현 위원, 조영숙 위원, 지병근 위원, 한표환 위원
 - 진술인(7명) : 김신규(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태성(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김호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임수(전라남도농업인단체연합회 대표), 정일권(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조직국장), 주탁균(바른미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차용석(자유한국당 전라남도당)
- 진행순서

순서	소요시간(예정)	진행순서	비고
1	10분	개회 및 진술인 소개	
2	100분	진술인 발표	진술인별 10분 이내
3	40분	위원과 진술인 간 질의·답변	위원별 10분 이내
4	30분	방청인 발언	방청인별 5분 이내
계	180분(3시간)		

※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전북지역 의견 청취 = 10월 23일(수) 14시,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23일(수) 14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전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전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 일 시 : 2019. 10. 23.(수) 14:00
- 장 소 :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 참 석 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5명) : 손창열 위원, 윤광일 위원, 이덕로 위원, 조숙현 위원, 지병근 위원
 - 진술인(8명) : 고종윤(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민중(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임성진(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대전(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조형철(민주평화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주상현(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허남주(전 전북도의원)
- 진행순서

순서	소요시간(예정)	진행순서	비고
1	10분	개회 및 진술인 소개	
2	100분	진술인 발표	진술인별 10분 이내
3	40분	위원과 진술인 간 질의·답변	위원별 10분 이내
4	30분	방청인 발언	방청인별 5분 이내
계	180분(3시간)		

※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경북지역 의견 청취 = 10월 25일(금) 14시,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경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25일(금) 14시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상북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경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6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경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경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 일 시 : 2019. 10. 25.(금) 14:00
- 장 소 : 경상북도청 동락관 1층 세미나실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참 석 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5명) : 손창열 위원, 윤광일 위원, 조속현 위원, 지병근 위원, 한표환 위원
 - 진술인(6명) : 김영태(경북매일 부장), 김위한(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자치분권위원장), 김정호(경북대학교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 윤병진(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조광현(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황보경(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
- 진행순서

순서	소요시간(예정)	진행순서	비고
1	10분	개회 및 진술인 소개	
2	100분	진술인 발표	진술인별 10분 이내
3	40분	위원과 진술인 간 질의·답변	위원별 10분 이내
4	30분	방청인 발언	방청인별 5분 이내
계	180분(3시간)		

※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경남지역 의견 청취 = 10월 28일(월) 14시, 경상남도청 본관 도정회의실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28일(월) 14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상남도청 본관 도정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경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남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경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경남지역 의견 청취 개요

- 일 시 : 2019. 10. 28.(월) 14:00
- 장 소 : 경상남도청 본관 2층 도정회의실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참 석 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4명) : 윤광일 위원, 이덕로 위원, 조숙현 위원, 한표환 위원
 - 진술인(8명) : 권순옥(고향주부모임 경남도지회 도회장), 김진철(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민호영(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박봉렬(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안권욱(지방분권운동경남연대 공동대표), 정규현(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홍태용(자유한국당 김해시갑당협위원회 위원장)
- 진행순서

순서	소요시간(예정)	진행순서	비고
1	10분	개회 및 진술인 소개	
2	100분	진술인 발표	진술인별 10분 이내
3	40분	위원과 진술인 간 질의·답변	위원별 10분 이내
4	30분	방청인 발언	방청인별 5분 이내
계	180분(3시간)		

※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충북지역 의견 청취 = 10월 30일(수) 14시,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 =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북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0월 30일(수) 14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5층 대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충북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충북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하여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선거구획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며, 선거구획정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의 방청도 가능하다.

획정위원회는 현재까지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이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는 없지만,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의 시한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7개 도지역(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을 대상으로 지역의견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의견도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할 계획이다.

붙임 : 충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1부. 끝.

[붙임]

충북지역 의견 청취 개요

- 일 시 : 2019. 10. 30.(수) 14:00
- 장 소 : 충북문화재단 5층 대회의실(청주시 청원구 향군로94번길 7)
- 참 석 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4명) : 손창열 위원, 이덕로 위원, 조영숙 위원, 한표환 위원
 - 진술인(8명) : 강광선(충북지방자치포럼 사무국장), 김현문(바른미래당 충북도당 수석부위원장), 남기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두영(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 이인선(정의당 충북도당 전국위원), 정상호(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최진현(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한형서(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진행순서

순서	소요시간(예정)	진행순서	비고
1	10분	개회 및 진술인 소개	
2	100분	진술인 발표	진술인별 10분 이내
3	40분	위원과 진술인 간 질의·답변	위원별 10분 이내
4	30분	방청인 발언	방청인별 5분 이내
계	180분(3시간)		

※ 소요시간은 현장 진행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획정위, 국회 행안위에 시·도별 정수 등 확정 재촉구 = 시·도별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기준 조속히 확정돼야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2월 30일(월) 제15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획정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을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시한 1개월 전까지 확정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지난 12월 27일 선거구제 개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국회의원지역구 총 정수는 법정화되었지만, 시·도별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차질이 있어 획정위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이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획정위원회는 오는 1월 10일(금) 오전 10시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시·도별 정수 등의 선거구 획정기준이 확정 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선거구획정기준 미통보에 대한 입장 발표 = 선거사무의 중대한 차질에 따라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위에서 확정하기로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2월 28일(금) 제21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획정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획정위원회는 작년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통보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한 바 있고, 지난 2월 13일 행안위 간사 회동 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늦어도 2월 2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기준이 통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의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바, 획정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획정위원회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월 29일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붙임 : 국회 선거구획정기준 미통보에 따른 입장 1부. 끝.

입 장 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이라는 소임을 부여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기구로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여 국회에 시·도별 지역구정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국회에서는 현재 까지도 선거구획정기준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의 지연으로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역선거구를 전제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과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 등 선거사무가 이미 개시되었으나 증대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작성은 3월 6일에 완료됨에 따라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향후 이어질 선거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국회의 선거구획정기준 확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2월 29일부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로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힙니다.

2020년 2월 28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NEWSIS 정치 > 정치일반

21대 총선 위한 선거구획정위 공식 출범

위원장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총 8명

등록 2018-12-07 19:02:2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김세환 위원장(왼쪽 네번째)이다. 2018.12.07. photo@newsis.com

위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1차 위원회를 열어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장이 위원장으로

news1

정치 > 국회 > 정당

여야, 선거제 개혁 합의..."1월국회에서 선거제 법안 합의처리"(종합)

의원정수, 지역구선출방식 등 정계특위 논의에 따르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논의도 시작하기로

(서울=뉴스1) 최동우 기자, 구고용 기자, 송영은 기자 | 2018-12-05 14:13 송고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출범식'에 참석한 김세환(왼쪽 네번째) 위원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8.12.05. photo@news1.com

여야 5당이 15일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비례대표제 확대 및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계특위 논의에 따

정치 > 정치일반

선거구획정委 "내달 15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 확정해야"

이재우 기자 | ironn108@newsis.com

등록 2019-01-14 18:04:12



【서울=뉴스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해 12월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심상정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8.12.2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스시스】이재우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다음달 15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 경수 등 선거구획정기준을 확정해 달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촉구했다.

획정위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지역구 경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3월15일)을 준수하기 어렵다"며 "(이날 오전 3차 회의에서) 늦어도 법정시한을 한 달 앞둔 다음달 15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획정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획정위 내부 논의과정 외에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현지 실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정당 의견 청취, 관련 단체와 각계 전문가 대상 공청회 개최 등에 상당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 결국 무산

한국당도 협상 가만 제시했지만
장계득위 생김새 걸림 못 찾아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최종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단일안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 사실상 1월 합의가 무산되면서 정계각파는 소소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지도부 수준의 정치협상을 통해 국민 진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당 소속 심상정 정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앞으로 전체회의와 1순위 2소위를 계속 운영하고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담판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회상 국회의장에게 선거제도 논의 경과를 보고하고 내주 중에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정치 협상 방향을 제안에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정치 협상 여부는 각 당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정계특위 위원장과 각 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와 여야 원내대표단의 정치 협상을 병행하면서 불씨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일하게 지적안을 내놓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이 의원 정수 300명 동결과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가안)을 제시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계범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제 개혁안에 사실상 협상안이라 봐도 좋다"고 강조하면서 권력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할 것도 추거로 요구했다.

이에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의원정수,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별로 차별한 논의들이 이어졌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자 퍼스트스텝(신속처리안건)에 올리거나 표반의 양을 만들어 처리하는 식으로 압박 수단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안과 여파안, 한국당이 도농복합형은 좋힐 수가 없기 때문에 다수결도 갈 수밖에 없다"면서 "어느 한 정당이 반대



정치 > 국회 · 정당

선거구획정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공청회 개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 위한 의견 청취"

(서울=뉴스1) 이규진 기자 | 2019-01-31 06:00 송고



©News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선거구획정위는 3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대천에국당 등 7개 정당이 참석한다. 또 대한지리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행정학회 등 4개 학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1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 위해'

(서울=뉴스1) 원세영 기자 | 입력 2019.01.31 14:31:26 | 수정 2019.01.31 14:31:26



김세환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화일보

2019년 02월 15일 15일
008면 종합

국회 '선거구 획정안' 시한 또 어겨

선관위 15일까지 요구에도
여야 합의점 못 찾고 '스톱'

■ 국회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기준안 제출 시점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선거구 획정위원회 선출 시한을 넘긴 데 이어 21대 총선 '뭉'과 관련한 법정 시한을 줄줄이 어기고 있다. 총선과 연동형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다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27 정당대회에 집중하고 있어, 결국 다음 달이나 돼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재개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은 국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지만, 여야는 이날 현재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가닥이 잡혀야 의원 정수, 지역구 정수, 의원 선출방식 등이 정리가 되는데 선거제도 개편 논의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 등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1대 총선 날짜가 내년 4월 15일이어서 선거구 획정안 마련의 법정 시한은 3월 15일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15일까지 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다음 주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수차례 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안을 내놓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크게 줄인 안을 당론으로 내놓은 상황이다. 한국당은 당론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

선관위 “국회, 지역구 정수 등 빨리 확정해야”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시한 압박
국회 공전으로 선거제 논의 제자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는 25일 “국회에 지역구 정수 등의 빠른 확정을 촉구한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으면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선거구획정안 제출의 법정시한을 보름 남짓 앞둔 현재까지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하지 않았고, 획정위의 의지와 무관하게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국회에 선거제도 논의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획정위는 “국회 공전의 장기화로 인해 매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에 압박해 선거구를 획정한 전

례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총선(2020년 4월15일) 13개월 전인 오는 3월 15일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내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지난달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지역구 정수 등을 “2월15일까지 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편안 당론을 내지 않아 정개혁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요청한 날짜를 맞추지 못했다. 여기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월 국회가 가동되지 않아 선거제도 개편 논의까지 중단됐다. 지난 20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안도 선거를 두달여 앞둔 2016년 2월에 통과된 바 있다.

이정에 기자 hongbyul@hani.co.kr

여야 4당 vs 한국당 ... 선거제 개혁법 '패스트트랙 혈투'

(민주·바른미래·정의·정의당)

국회 입시위원회 개편의 동시엔 선거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눈에 띄었다. 여야 4당은 오는 19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쿠데타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국회의원들이 이젠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관세가 없어 실제 지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여야 4당이 선거법과 연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공정거래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2개월 만에 정상화된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1차 50%의 찬성으로 특정한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면 3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한 제도. 법안 처리가 무관용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3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으로 도입했다.

‘최우동행’ 본래 여야 4당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도입 10일까지 입장 내나라' 촉구

내년 2월 15일까지 법제정 위해 '패스트트랙 테드라인' 15일로 설정

강력 반발하는 한국당

나경원 "의원수 증원 절대 불가" 사상 초유 입법부 쿠데타' 명백한

쟁점법안 연계 처리 나선 典

공수처법·상법·공정거래법 등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 추진



김영웅 원내총무(왼쪽)가 김문수 원내총무(오른쪽)와 회담하고 있다. 김영웅 원내총무는 김문수 원내총무에게 김문수 원내총무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외 언론 의욕을 상실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내를 뒷받침하는 행정 발전 차이를 위해 여당의 선거제 개편에 보수를 맞추고 있다. 반면 연립내각은 선거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동시 논의의 고지대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이 야당의 황금을 향면으로 말하였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 10당을 표상하면서 선거제도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며 "의사수용 및 사익으로 늘리는 법제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지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트랙 도입의 테드라인으로 정한 이유는 내년 총선에 앞서 법 개정이 가능한 시점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까지 지정해야 추후 선거사 무결정되는 선거법 6월 연립 내각 2월 15일까지 선거법 개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심화됨
민주당은 현재 4당인 비례대표를 군소 여당의 요구대로 조율까지 늘려준 지역구 후보수가 불가피해 손해를 수도권과 호남, 충청, 경남 일부 등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 많기 때문에 1개 선거구에서 1기 독립지당연립은 현행 소선거구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정세현 한국당과 비슷한 지적이다.

김문수 원내총무는 국회 발언들을 지리

하기 위해 여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김경 개혁의 일관된 고려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 폐지·가중 제1차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이 한국당 반대로 기동하며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을 정세현도 선거법 개정을 달성해야 하는 군소 여당의 생존 본능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에 흑자를 채우는 이익이 아니라 배당금이나 패스트트랙을 통해 이익이 유입된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패스트트랙이 입법법정 경합 논란이 종식되어야 할 상황이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정당을 주장하는 대한민국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야에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열차에 뛰어들어 함께 15일에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 '열쇠' 쥔 바른미래, 당론 못정해 여야 4당 선택법 제각각, 선거구 획정 시한 넘겨

한국당 "날치기 법개정 총력 지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한 단일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안 제출 예정 시한인 15일을 넘겼다. 4당은 당초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선거법 개정이 표류하는 것이냐냐는 관측이 나온다.

4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접촉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히 '계스법보조'를 한 바른미래당은 이날 새벽까지 삼야 의원총회를 했지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국민의당계는 "전성", 바른미래당계는 "반대" 의견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시한에 맞춰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당론을 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합의했지만 정당 득표를 반영 비율을 놓고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을

전제로 전체 의석 300석을 지난 총선 정당 득표율대로 분배할 경우 새누리당 100석, 민주당 76석, 국민의당 80석, 정의당 21석이 기본적으로 배정된다. 이 이상의 의석을 지역구에서 얻는 정당은 정당 득표율과 상관없이 비례대표 배정을 못 받는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105석), 더불어민주당(110석)은 나머지 비례대표 75석 중 당 선수가 0명 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세부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야 3당의 이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정당 투표의 50%를 반영하는 '준연동형'을, 야 3당은 100% 연동형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야 3당 간사는 이날 '연동률 50%'에 중점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각각의 주안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제1 야당과 합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날치기 선거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화와 압박 수단을 모두 쓰겠다"며 "바른미래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원선우 기자

선거구획정위 “국회, 지역구 정수 등 조속히 확정해달라”

“총선 13개월 전 국회의장에 안 제출해야”... 법정시한 사흘 넘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지역구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8일 제9차 위원 회의의를 열고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시한 경과 이후의 회의 진행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법정시한 내에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필요한 지역구 정수 등을 하루 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유권자의 알 권리와 정치 신인을 포함한 모든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더는 선거구획정 일

정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는 “위원회는 국회에서 지역구 정수 등을 통보받는 즉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자체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의정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날

짜를 고려하면 선거구획정안 마련의 법정시한은 3월 15일로 이미 사흘을 넘긴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선거구획정위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차관급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맡고 있다.

현재 위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퇴해 손창열·윤광일·이덕로·조숙현·조영숙·지병근·한효환 위원 등 7명이 활동 중이다. 위원은 학계·법조계·인문계·시민단체, 정당 등이 추천하며 선관위원장 위촉한다. 정금민기자

세계일보

“비례대표 늘리려면 공천 과정 투명성 확보부터 해야”

박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은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대한민국 선거제 개선 논의가 활발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박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은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명을 필요로 하는 정당이 많아야 한다. 선출 방식이 2025년 지방선거 18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은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박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11면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즉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도록 할 때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은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려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은 현재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제 개선안”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선거구 획정 시한 오늘인데... 내년 총선도 '깜깜이'로 치르나

여야3당 회동서 이견만 확인 "정치 신인들만 피해 악순환"

역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일

총선일	선거구 획정일	선출-선거구 획정일
16대 (2000년 4월 13일)	2000년 2월 5일	D-65
17대 (2004년 4월 15일)	2004년 3월 9일	D-37
18대 (2008년 4월 9일)	2008년 2월 25일	D-47
19대 (2012년 4월 11일)	2011년 7월 27일	D-44
20대 (2016년 4월 13일)	2016년 3월 2일	D-42

11 여야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D-1년인 15일까지도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를 찾지 못함에 따라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치지 못해 있는 공직선거법이 또다시 지켜지지 않게 됐다. 여야의 상습적인 선거구 '자각 획정' 행태가 반복되면서 이번 총선도 선거구 획정도 안된 상태에서 예비보자들이 득표 경쟁을 벌이는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교섭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 및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선거제 개편에는 이견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선거제 개편에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다 나머지 여야 4당도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있어 선거구 획정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에겐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을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18·19대 총선을 치른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은 "내년 선거구 획정이 급박하게 되면서 갑자기 포함된 지역에는 이득도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선거를 치르려는 등 정치 신인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았다"며 "광역의원이 갖춰야 할 권한을 지키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법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선거구 '자각 획정'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방안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선거구 획정은 17대 총선(37일 전)을 비롯해 18대

국회리포트

총선 1년 앞두고 '게임의 룰' 변경... 한국당 "20대 국회 전면 보이콧"

301년 04월 29일 화요일 15:00 정치 (2019년 04월 29일 화요일 15:00 정치) 한 달여 남겨 놓은 선거구 획정

4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합의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둔 15일 국회에서 여야 4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합의에 합의했다.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자유당)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 내용은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 선거구 획정 관련 법안 등이다.

4당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문을 채택한 여야 4당 원내총무(왼쪽부터) 김문기(더불어민주당), 김문기(자유한국당), 김문기(바른미래당), 김문기(민주자유당) 모습. (사진: 김문기)

4당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4당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4당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이 제안한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내년 총선부터 적용 가능... 선거제 개편안과 경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법의 '선거일 1년 전 선거구 획정' 조항(제24조 2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향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의장실을 나가고 있다. **공동희대사진**

한국당, 의장실 난입...국회 난장판

의원 80여명 문희상 의장 에워싸 나경원 "오신환 사보임 허가 말라 본회의 표결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문 의장 "이렇게 겁박에선 안돼" 설전 벌이다 쇼크로 병원행 옥신각신하다 성추행 논란까지

24일 국회는 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종일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선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교체)을

결에 안 부칠) 도리가 없다"며 "이렇게 (의장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설전을 벌이던 문 의장이 험악해지는 분위기를 피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의원들은 "스크림을 짜서 못 나가게 막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사실상 의장실 잠거였다. 이른제 의원은 휴대전화로 문 의장에게 국회법을 보여주며 "이걸 지켜야지요. 의장님 사퇴하세요"라고 소리쳤다. 참다못한 문 의장이 "이렇게 하면 대통령, 국민이, 국회(를) 우습게 알아요. 국회가 난장판이야"라고 호통쳤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의장실을 떠난 문 의장은 '저혈당 쇼크'로 국회 의무실을 찾았다가 결국 병원으로 이동해 안정을 취해야 했다.

문 의장이 의장실을 나오는 과정에서 '성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의 방문했고, 문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과 설전을 크로 병원에 실려 갔다.

이날 아침 9시30분께 국회의장실 의원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나 대표는 "위원 사보임은 정상 절차 불허해달라. (패스트트랙이 성사)와 표결에 안 부지겠다고 (약속) (사보임을 허가하면) 대한민국 헌법 위반 장본인이 의장이었다고 생각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문 의장은 (본회의 표결 때까지 시간이) 무 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득이

선거제 개편 '시간싸움'...심상정 "한국당 참여해 달라" 호소



심상정 원내총무가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안 국회법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심상정 원내총무가 2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안 국회법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9시30분께 국회의장실을 향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 80여명으로 가득 찼다. 나경원 대표는 "위원 사보임은 정상 절차 불허해달라. (패스트트랙이 성사)와 표결에 안 부지겠다고 (약속) (사보임을 허가하면) 대한민국 헌법 위반 장본인이 의장이었다고 생각 없다"고 압박했다. 이에 문 의장은 (본회의 표결 때까지 시간이) 무 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부득이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향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의장실을 나가고 있다. **공동희대사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국회의 정계특위 안건조정위원장(가운데)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관련 관련 회의를 추후하고 있다. (김효영 기자)

선거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

민주당 정계특위 표결 강행
한국당 반발로 정국 새 불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계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표결을 강행해 향후 정국 운영의 새로운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계특위는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전날 안건조정위를 구성한 뒤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김종민·이철희·최인호 민주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등 4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장제원·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다.

이날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한 데 따라 정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출영표 정계특위 위원장은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정계특위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만큼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 발안을 놓고 이견을 갖고 있는 여야 4당과 한국당의 충돌이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정계특위 전체회의에서 만약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의원님들과 함께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굵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에 가서 가차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윤지원 기자

"매번 강원권 피해, 의석수 유지·생활문화권 고려해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의견 청취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신설 제안
초거대선거구 방지규정 마련 구상

제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인구 기준의 획일적 방식에 따라 강원도가 도다시 최대 피해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재환)는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강원도 의석수 유지와 생활문화권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강력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도당 위원으로 참석한 최광재 공동대표 교수는 "강원도 의석수가 14대(14명)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인제대 경우 매년 선거구가 바뀌면서 지역주민의 불안과 반감이 심각한 상태"라며 "인구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은 선거구 획정으로 그 피해가 날 도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강원지역 의견 청취가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각 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제19대 총선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사례를 들어 "농어촌·지방특별선거구" 신설도 제안했다. 강원구리별 주민투표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강원도는

노련과 비율이 높고 국공계적으로 집 권지역 인구감소 가능성도 크다.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강원도는 지역 대표성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정·국·원·양구·인제·고성"과 "홍천·속

초·양양을 묶는 것이 8석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지만 이 역시 현실적 방안을 불과하다"고 했다. 초거대 선거구 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도환 공동

위원이사회대책연대의 사무차장은 "지역제 숫자, 정책 등을 기준으로 한 산정 기준을 두고 해당 지역에 한해 인구 비율을 완화하는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석구 바른미래당 도당 사무차장은 "인접 자치구·시·군의 일부 부분할 규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민심 정의당 도당 사무차장은 "민의를 배제할 강연과 농어촌지역 불균형 완화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재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인위적으로 끼워넣은 결과물이 탄생했다. 선거구 획정보다 강원도 의석수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 특수성 반영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밝혔다. 현표 위원은 "인구수 기준은 하다 보니 강원도가 의도치 않게 매년 피해 보는 지역 중 하나가 됐다"며 "농어촌 특수성 반영이 균형적으로 출지한 현실적 입법과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만큼 대책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충남 선거구 지역의견 청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지역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나섰다. 특히 내년 총선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중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진행될 경우 충남은 국회의원 정수가 11석에서 9석으로 2석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천안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16일 천안 서북구 소재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청취'에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충남도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7명의 진술인이 참석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어거구 의원실의 구본현 보좌관은 "천안은 갑, 을, 병 3개 선거구로 구성돼 있는데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인구상 한선을 넘을 수 있는 곳이 을선거구"라며 "천안을 3곳으로 하던 2곳으로 하든 지역간 인구편차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천안의 인구는 64만 6700여 명이다. 이를 선

거구별로 나눌 경우 갑은 19만 3500여 명, 을 27만 3100여 명, 병 17만 9900여 명이다. 20대 선거구획정 기준인 인구수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볼 때 을선거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조철희 사무처장도 "천안을 선거구는 인구상한선에 근접해 있다"며 "3개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행정구역과 인구비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99@csctoday.co.kr

'5개군 하나로 합치나'...농어촌 선거구 축소 우려 커져

선거구획정위, 최근 전남서 의견 청취 "단순 인구수 기준 적용...대표성 취약"

내년 4·15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5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는 '공용선거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어촌 선거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흥·보성·장흥·강진과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4개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는 전남에서 5개 지역이 하나로 묶일 경우 대표성과 민의 수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주최로 전남지역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지역 의견 청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의견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들은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일권 민주당 조직국장은 "농어촌은 농·어업, 축산업 등으로 고령인구가 70% 이상 차지한다"며 "선거구 획정 때마다 축소되면 주민들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농어축산민들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국장은 "기형적 선거구 발생을 막기 위해 농어촌선거구는 특별법을 제정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며 "인구 숫자만이 아닌 거주면적도 포함해 획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옥기 바른미래당 전남도당 사무처장도 "지리적으로 너무 광범위해 민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4개 군 복합선거구는 3개 군으로 줄여야 한다"

며 "최저 인구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복 목포대 행정학과 교수도 "지리적 특성과 생활권 등의 고려가 동반시킨 인구 중심의 선거구 개편은 투표의 대표성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 인구수 기준으로 할 경우 5개 농산어촌 행정구역이 1개 선거구로 묶이는 '공용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며 지역의 생활권과 지역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김신규 목포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인구밀도가 낮은 전남의 경우 인구 대비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많은 지역구를 통합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구변동에 따른 선거구 분구나 감축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청기자 rep033@arb.co.kr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 주최로 23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 가운데 정당추천인파 학계, 시민단체대표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장태엽기자·mode70@

내년 총선 “8석 적당” VS “10석 유지” 공방

내년 4월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북지역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8명이 참석할 가운데 자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합리적 선거구획정 방안 등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고종운 전북지방변호사회 변호사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면 전주 3석, 익산 1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전북 찾아도민 의견 청취

군산 1석, 완주·김제·임실 1석, 정읍·고창·부안 1석, 무주·진안·장수·남원·순창 1석 등 총 8석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정치신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대로 기존 불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내 현행 10개 선거구는 전주시 방을 제외하고

모두 인구 상한선을 만족해 21대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는 현행대로 10곳을 유지하는 게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영기 참여자치정북시민연대 대표는 “현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의석 분포와 여건으로 볼 때 부결될 확률이 높다”면서 “현재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단일안 마련과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의 현행 선거구는 전주 3곳, 군산 1곳, 익산 2곳,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무주·진안·장수 등 10곳이다. /김대연기자·red@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내년 총선 경북지역 의견 청취

은 대정특기파 | ● 승인 권희진32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경북지역 의견청취가 25일 오후 2시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위한 경북도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25일 오후 2시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주최로 2시간가량 열린 이번 의견청취 자리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5명과 국회의원 4명, 정당 대표 4명,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전문인 6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적 여건과 교통, 생활, 문화관광 등의 지역 사정에 근거를 둔 선거구획정 방안이다.

가장 먼저 전문인 김명태 경북역일 부국장은 선택을제에 대한 장인정을 지적하며 당선예정권 후보자의 소극적인 선거운동과 미국의 상하원 도입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우현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차석부위원장은 현행 '집전시' 단일 선거구를 '집전시, 성주군'으로 묶거나 '집전시, 성주시 문경시' 선거구로 묶는 등의 획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정호 경북대학교 생태환경관광학부 교수는 경북 북부권 4개 국회의원 선거구 지역주민 84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7월 25일~8월 22일) 결과 "상주-군위-의성-정선 선거구의 '영주-예천-문경' 선거구에서 많은 불만이 있다"며 개선 필요성과 방향을 총합한 지역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진 지방보궐운동대구광역시부 공동대표는 "영주-예천-문경 선거구와 상주-군위-의성-정선 선거구의 유권자 불만이 크다"며, "일관성과 합리성, 민주성, 역사,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선거구획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명현 대구경제정보통신산업진흥 사업처장은 "복합선거구의 경우 생활권확권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획정해야 한다"며, 특히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정선군 울진군 영덕군 봉화군 영양군 선거구 등 4개 이상의 시군으로 구성된 선거구는 가능한 3개 시군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경 한국농림수산식품생명안전관리청 정책기획장은 "사군 지역마다 모두 지리적 행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농촌과 농림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참여를 수 있도록 실용적인 선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경남신문

“내년 총선 경남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해야”

도내 정당 관계자-시민단체-교수-지역민 지역 의견 청취 내년 선거구획정위해 요구 선거 1년 전 선거구 획정 법령 위반 지적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보완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도내 지역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경남 국회의원 정수 현행 유지해야 하며, 농·농민 대표성 약화를 고려해 4개 이상 시·군을 묶는 획정은 피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 청도문화회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민 청취 자리로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회의 권역 논의가 끝나지 않아 본격적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할 수 없지만 선거구획정 작업이 내년 4월 15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지역민의 청취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성승권 기자

이 자리에는 민호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송태용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장규현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성환 민중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와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권순욱 고령주부임 경남도지회장, 김진철 경남시민주권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안권옥 지방분권운동경남연대 공동대표 등이 전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호영 국장은 "경남지역의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감안하면 경남은 현행 선거구와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태용 부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16석으로 18석인 인구 부산시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최소 16석을 유지하거나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욱 지회장은 "지역 대표성과 지역 유권자의 존중을 막기 위해 제21대 총선 경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044면 3면

밀양-의령-함안-창녕, 거창-합성-산청-함창 등 4개 이상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또한 참석자들은 선거제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여구동성으로 표출됐다. 김진철 위원장은 "하나의 선거구에 지자체 4개가 포함되는 것은 너무 많다. 3개 시군 이하로 제한해줄 것"을 건의했다.

송광태 교수는 "국회의원 지역구별 선거구 전 1년차기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상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를 조정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을 송광태는 지역주의 해소와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어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방형석 중석총근 바른선진시대연립연합회 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있어 시·도별 의원 정수 배정이 가장 중요하며 이후 비인구적 요소로 반영해 획정이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민 청취 자리에는 민호영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장규현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 박성환 민중당 경남도당 부위원장 등 정당 관계자와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권순욱 고령주부임 경남도지회장, 김진철 경남시민주권연대 대외협력위원장, 안권옥 지방분권운동경남연대 공동대표 등이 전문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호영 국장은 "경남지역의 인구,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을 감안하면 경남은 현행 선거구와 의석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태용 부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경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16석으로 18석인 인구 부산시와 비교할 때 불합리한 결과로 판단된다"며 "최소 16석을 유지하거나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욱 지회장은 "지역 대표성과 지역 유권자의 존중을 막기 위해 제21대 총선 경남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희진 기자 khsnews7@knews.co.kr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오진영기자

“선거구 확정 인구 기준 절대 안돼”

과대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 선거구 확정 시 인구변동 여파 차가(지역별인구, 지방자치, 자립·분리적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확정해 온 데다 국회 입법(입법안, 입법안, 자립·분리적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는 30일 청주시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청취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청주시 청원구 청원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청취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지방분권·면적 등 고려”...현행유지 목소리도 충북도민 “1석 줄여 지역 대표성 위협” 강력 요구

비례대표 수를 조정해 재대로 인 권 차 격차를 심화하는 데 아무래도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구 축소 조항이 불거지면 그 대상이 정치계 일각 지역인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될 우려가 있다”며 “비례대표 정액도 전국 상에 맞춰야 하므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역 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일들은 “선거구 획정은 국가의 책무이고 지방분권, 국민통합,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역구 축소 조항 대상은 수도권과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시립대 사회과학과 교수는 “인구에 따른 표의 불균형이 선거의 중요한 원인이지만 단방향인 현재 상황에서 자립·분리적 정책성, 행정의 투명성, 연립과 도민 의견 등 선거

구 획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또 “지역별 차이를 고려, 인구수만을 고려하면 충북은 한에서 1석으로 줄어 든다”며 “지역 대표성이 위협받고 5~6개인이 한석로 묶이는 기형적 공천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충북은 인구가 수도권에 비해 적은 편이므로 선거구 획정 시 인구가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도훈 의원은 “선거구 획정 시 인구가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은 선거제도의 변화가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도로 선거구를 확정하면 청주시 등 충북은 기본 틀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진형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과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충북은 경제 발전에 한해 불공정하고 정수준은 현수·현정 불공정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원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은 “과대 총선은 현재의 선거구 제도를 받고 개편한 선거구에는 2대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형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과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거·검찰개혁법안 여야 입장 차만 확인

교섭단체 3당 34인, 공적선거법 개정 논의 공수책임은 타협 여지·3일 재논의 예정

2년 다룬 선거구, 지역인구변동 여파 차가(지역별인구, 지방자치, 자립·분리적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비례대표 수를 조정해 재대로 인 권 차 격차를 심화하는 데 아무래도 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청주시 청원구 청원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 마련을 위한 청취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라.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제 개혁하라.

‘선거구 획정’ 불확실성에 속타는 원외 후보들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첫 관문인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총선이 개막됐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원외 예비후보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 기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때문이다. 선거구가 사라질지 모르는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들은 총선 시작부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안산 단

원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원미정 경기도의원(47)은 통화에서 “인구수 감소로 단원을 지역구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선거제 개정안은 아직도 안갯속이라 아직 예비후보 등록도 못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렇다고 안산 내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는 문제도 당과 논의 없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면서 “상륙갑을 지역에 같은 당 현역 의원들이 있고, 단원갑 지역에도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분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인 이성현 전 의원(61)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지 않는 한 서대문은 선거구 합구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크게 신

경쓰지 않는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선거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아무 명분도 없이 군소야당을 꼬드겨서 지금까지 선거제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정치 신인들을 위한 제도다.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들어가기 전 신인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기회를 준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구 안 가구수의 10% 이내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심진용·박순봉 기자
sim@kyunghyang.com

선거법

2019년 12월 24일 화요일 004면 중판

‘연동형 비례’ 첫 도입으로 대표성 높아…원안보다는 후퇴

선거법 합의 내용 평가

나니미에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자유한국당 연합에 가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위원 장수를 지금과 같은 지역구 25석에 비례대표 35석으로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 중 30석에 50% 연동형을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민주당·군소야당들이 이견을 표명한 식재물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일 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희 정의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박정민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유선영 대안당 창당준비위원회장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해 사흘간 이어진 논쟁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 3% 이상을 받은 정당에 한해 부여되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은 지금과 동일하게 선거일 15개월 전 말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4월30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안법안으로 법안 그 자체를 변경했다는 논평의 차이 측면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5석, 35석으로 조정해 연동형 비례 의석을 늘렸다. 정당 득표

법안의 상향 선거법안(안)의 주요 내용

- 의석수 변화 표지(선거구 253→406석, 47석)
- 연동율 50%
- 연동형 적용 제외(지역구 30석으로 제한)
- 비례대표 의석은 득표율 3% 이상 정당
- 식재물 제외(지역구)

지역구 253·비례대표 47석 연동형 유력 비례 의석 30석에 연동율 50% 적용

개정안 원안보다 비례 28석 줄고 30석 씩에 정당 득표율 영향력 감소

민주당 반대로 식재물에 무관 위상정당 배제 양산 우려도 나와

윤과 위석수의 연동율 30%로 인한 개헌안과 같지만, 당시엔 연동형 적용 의석에 상한선을 두지 않아 정당 득표율에 중요성이 컸다.

지역구도 연동율 위해 도입하면 식재물 주는 것만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은 논란이 일어 있던 양이다. 박정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당은 이날 오전 회동 뒤 민주당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개혁



손학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에서 열린 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당 연합에 가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안)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당 연합에 가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안)을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자유한국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당 연합에 가입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안)을 설명하고 있다.

고 있는 국회 회합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대중적 차원에서 식재물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동율 50%가 적용되는 30석 씩을 제외 한 나머지 비례 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명합형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된다. 예컨대 1정당이 정당 득표율 20%로 지역구 당선 10명을 배출했을 때,

1정당은 30석 중 30%인 9석에서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20석에 9명인 25석을 30석 씩의 범위 안에서 다른 정당들과 비율을 조정하게 된다. 남은 명합형 비례 17석 중에서도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배분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이번엔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비례 한국당 등 핵심정당을 배제한 것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니 합의’에 내부에서 세우려 하기 위해 선을 그어 앞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소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안 한국당’이 그런 시도를 한다는 지적 나름대로 큰 반박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희 대안계 이전에 국민의 신뢰를 받았 것”이라고 강조했다. jbs4.kr/2019/12/18/004

선거구획정위, 국회 행안위에 '시·도별 의원정수 확정' 요청

기사입력 2019/12/30 16:27 송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국회의원 지역구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는 정해졌지만, 시·도별 정수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1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총 정수 및 시·도별 정수 등을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 시한 1개월 전까지 의견을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획정위는 내년 1월 10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농촌 지역구 보장” vs “호남 지키기 안돼” 대치 ‘선거구 확정’ 테이블도 못차린 여야

21대 총선(4월 15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대치에 따라 선거구 확정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농촌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확정 원칙에 자유한국당이 ‘호남 의석 지키기’라며 맞서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

인구 기준 등 입장차 커 “이번에도 한국당 패상” 관측도

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사도별 정수 등을 두고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가 우선 필요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동 사태로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9개월 이상 지연됐다. 선거구획정 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국회의원 지역구 사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방역관련 4+1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를 하한 기준으로 잡고 획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과 경기 군포, 연산 등 수도권 의석이 줄어든다.

반면 한국당은 허한선을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으로 잡아 수도권 선거구를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의석 수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를 따져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수가 많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전까지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넘겨 받아 행안위에서 심사에 들어가는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당도 이번 국회에

선거구획정 공방.. 범여 “수도권 통제합” vs 한국당 “호남 축소”

김영지 기자

입력 2020.01.10 18:00 | 수정 2020.01.10 22:02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 정당 의견 청취]

범여 “농산·어촌 대표성 확보 위해 수도권부터 통제합 해야” vs 한국당 “표 등가성 따라 광주, 전북, 전남, 부산 순으로 통제합 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0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회의를 열고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해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4월 총선부터 적용된다.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으로 지금과 같지만 지역별 인구가 4년 전과 달라져 3곳이 분구(分區)되는 대신, 3곳이 통제합 돼야 한다. 법적으로 4월 총선 선거구는 작년 4월15일에 확정됐어야 한다. 하지만 법정시한 271일 넘겨 이날 처음 대면한 각 당 대리인들은 자기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했다.



국회에서 표류하는 선거구 확정 “축소말라-늘려라” 지역대결 번져

울릉군 “봉쇄할 반대 결기대회” 강연-홍복선 “의석 수 확대할”

과대 총선 선거구 확정을 앞두고 지역 정치가 들쭉거리고 있다. 후보지 등록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확정에 대한 여야 협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봉쇄할 대항으로 안습되는 지역 정치인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27일 국회와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은 선거구 확정 기준에 관한 의견을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 관련 여야 협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당별로 의견을 따로 전달한 것이다. 이영성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 연유 전에 국회에서 정리 한 기본 의견을 선관위에 주는 게 바람직 했을 텐데 여야 간 알금이 남아 있어 하지 못했다”며 “이제 선거구 확정 의견 교환과 협상 과정을 밟아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이 협상하자고 민주당에 직접적으로 얘기했지만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봉쇄할과 분구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 정가는 여야 논외에 촉각을 곤두세우

면서 중앙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거번 대상으로 언급되는 경북 울릉군의회는 최근 상명서를 발표해 “정치권이 포용적, 포용남울릉을 때고 붙이는 것들은 의하고 있다”며 “울릉군의 차원에서 국민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성, 결기대회, 국회 청원, 총선 거부 등 모든 방안을 세워 놓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 정치권은 순천 지역구가 분구되고 다른 늘어온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상등 의원 등 한국당 강원지역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원도를 정치적 의생함으로써 사는 절대 안 된다”고 강연도 의석을 현행 8석에서 9석으로 늘려 줄 것을 요구했다.

선거구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여야 간 ‘독심’이 다른 만큼 지역 정치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은 남진 총보도의원은 20대 총선 때로는-국정연립 선거구에 반입된 괴산을 진한-을 상준령 선거구에 포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은 의원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의석을 감축해선 안 된다”며 “지난 4년간 괴산은 여러 국회의 입 유치에 반입이 실패했다”고 국천 출신인 박태 환한 국당 의원을 겨냥했다.

고은의 기자 koo@hankook.com

여야 "선거구 확정, 다음달 5일 본회의 처리"

선거구 확정위 "오는 24일까지 확정 기준 확보해줘야"

김도형 기자 hoo@jje.com | 연락처: 2024-42-1111 | FAX: 2024-42-1111

여야가 13일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사민 총무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사민 이해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위원장인 김세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선거구 확정위원로부터 선거구 확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행정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을 조율했다.

총 의원은 “선거구 확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밀정을 합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현행 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예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확정회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확정 기준을 확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자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여야 행안위 간사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민주당 심학한 선과 분구 총체할 선거구 규모 등 행정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선거구 인구기준 미달 3곳·초과 15곳...여야 원내대표 선거구 확정 논의

일약 2020-01-21 18:33
확정위, 인구 미달 13만6500명, 심한 21만3129명 제시
대여, 세종 불구 이전 있어... 23일 다시 회동키로



▲13일 원내대표회담 중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 논의를 위해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담에는 여야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민주당)과 김도형(한국당)이 참석했다. 김도형 위원장은 “선거구 확정 논의는 25일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21일 제시한 4·8 총선 선거구 확정 연구 취합에 따라 확정하는 선거구는 19곳, 상한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15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연우 총합 의원 20명 이상을 원내대표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홍기주(민주당)·이재하(한국당)·김정숙(민주당) 의원, 의원은 여야 국회에서 29곳 회동을 하고 선거구 확정 방안을 논의했다.

홍기주는 이 회담에서 총선 14개월 전인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 12만6500명, 상한 21만3129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29개 지역구 중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13곳, 상한을 넘기는 곳도 15곳이다.

그러나 과거 총선과 달리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엔 선거구가 29곳으로 명시돼 있어 1곳이 분구 되면 인구 기준을 통해 1곳이 공백이 채워지는 상황이다.

여야는 총선의 국공립인 선거구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는 정치는 공감하고 있지만, 조정되는 지역구가 어디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만큼 최종 확정 기준을 합의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인구가 가장 적은 세종 선거구 분구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었다. 나머지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의견 불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때 여야는 확정위 연구 실패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조정 시 행정안전위원을 마련해 유과 요구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오는 25일 오후 3-3 회동을 다시 할 예정이다.

이영성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협박적인 시선을 날려주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선거구 확정을 두고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심학한 원내대표는 “이같은 회의 결과가 긍정적일수록 심학한 선과 분구 총체할 대가만 나왔다”며 “본문 원우 민주당원이 무방정임을 보고 구획적 제기를 해두 단정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주는 “확정위가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의한다(확정안)를, 그러나 수 있다”며 “14개월의 임명수 예산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고, 확정위가 주위에 재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hoo@jje.com

여야, '3+3' 회동, 선거구 확정 재논의

머니투데이 | 김관우 기자

2020.02.23 16:34

<https://news.mt.com/view.php?no=2020022316257664895&type=1>

기사주소 복사

[the300]



[한일-뉴스시스] 김관우 기자 = 지난 원내대표의 발언에 관사동이 21일 오후 서울 목동도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 논의를 위해 모였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원내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무국장인 김성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참석한 중정 선거구 사수자간,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장철우 간사,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실재물 원내대표. 2020.02.21. photo@newsis.com

여야 지도부가 4.15총선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해 23일 만났다. 새로 고심단체로 등록된 민주통합의원모임 지도부도 논의에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확정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총무국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미래통합당에서는 심재철 원내대표-이재명 의원 간사, 민주통합의원모임에서는 유성엽 원내대표, 장철우 행안위 간사가 참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과 김재홍 통합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동에 함께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합당 내에서 사실상 선거구 획정관련 논의의 전락을 수습하고 있는 인물이라 이날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21일에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회과 만나 선거구획정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획정위는 인구 약한 13만6565명, 상한 27만3129명을 제시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총선 15개를 전을 기준으로 정한 수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253개 지역구 중 인구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3곳, 상한을 넘기는 곳이 15곳이다.

결국 관례에 따라 '인구상하한선 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를 국회에서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를 확정한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기존의 의견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세곳을 분구하는 대신 세곳을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통합당은 한곳을 분구하는 대신 한곳만 통합하자고 제안했다.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하자는 데에는 여야가 사실상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우선 인구가 가장 많은 세종 선거구가 분구되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합치를 보지 못했다.

새로 논의에 참여한 민주통합의원모임은 '인구상하한선 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정수'를 국회에서 정하지 말고 선거구획정위가 알아서 선거구를 확정하라는 입장이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획정위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획정안을) 그려낼 수 있다"며 "시도별 의원정수 배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고,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저작권자 © 동아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일보

선거구획정위 "더 이상 국회 기다릴 수 없다" 독자적 기준 마련 착수

00

입력 2020.02.29 17:11



김세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29일 독자적 획정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획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세환 획정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국회에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주길 여러 차례 촉구했다"며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의 시에는 재외선거인 명부가 3월 6일까지 작성되는 점과 3월 5일로 예정된 국회 본

선거구 조정 청원법 주장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연구 해한	장예 강재부안(13명), 47명	경기 동두천(전체 14명) 6명	
불구 대상	세종 진남 순천 김원 순천	세종	
동계법 대상	서울 강남(전 1-2명), 경기 안양(전 1-5명), 군포갑 을	경기 군포갑 을	

‘발등의 불’ 선거구 획정 여야 이번에도 결론못내

행안위 간사-원내대표 회동
인구 하한-조정대상 이견
획정위에 독자안 제출 요청

여야가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독자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획정위에서 현행 선거법에 맞게 안을 마련해오면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도시 언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4월 15일)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자기 체리”라는 오명만 부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아침엔 더불어민주당·삼재회·미래통합당·유성열 민주통합당의 연도 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까지 이뤄졌던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골문을 낼 것이냐고 예고할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정치적 공단으로(선거구 획정) 접근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냈지만, 중앙선거위에 서 현행 선거법상 어렵다고 한다”며

“획정위가 법의 정신과 원칙에 맞춰 획정안을 디자인해오면, 우리가 이를 보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6일짜지만 이를 고려하면 5일 본회의에 서는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선거법 개정안이 차려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연세사랑위원회 의원들의 발자를 고려하면 최소한 3일까지는 확정안이 확정된 채를, 여야는 일기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는 기존 지역구 변동을 최소화하자는 대의칙에는 공존하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일수록 2개 선거구로 나뉘어 한다는 뜻에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인구 하한 기준, 통합당 대선을 두고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전세 경제부인(13만 947명)을 하한 선거구로 삼아 세종, 강원, 순천, 진남 순천 등 3곳을 분구하고, 서울 강남, 경기 안양, 군포에서 각각 통합당을 통해 선거구 총 3개를 옮기는 “3대3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경기 동두천(전 14만541명)을 바꾼 기준으로 정해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갑 을을 통합해야 하는 “1대1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백성광-이재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페이지 | 모바일 | 인쇄하기 | RSS

4·15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5일 본회의서 처리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20.03.09 17:27 | 수정 2020.03.09 17: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 위정 의원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신기린1가 현대백화점 대회의실에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3.9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 간담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보고서를 국회의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산의 선거구 획정안 대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법정 제출 기한인 지난해 3월 15일을 1년 가까이 지나 획정안을 제출하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 선거구 획정의 전제가 되는 시도별 의원 정수 확정 등을(국회 예) 요구했으나 늦어져서 선거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획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된 인구편차 범위와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 혼란을 최소화

선거구에 대해서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바탕으로 농·산·어촌 지역 대해 격론 걸어왔다”면서 “그 결과 인구 및 생활문화권 고려한 선출구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획정 지연이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산·어촌 본 반영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국민 기본권 침해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겨우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었다.

17대 총선은 선거를 37일, 18대 47일, 19대 44일, 20대 42일을 각각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지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거구, 세종·화성·춘천·



김재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원목이 3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회의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획정위, 선거구 확정해 국회 제출

4·15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의 윤곽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재환)는 21대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상한선(27만3129명)을 넘긴 세종시와 화성시, 춘천시, 순천시와 국회의원 지역구를 하나씩 늘렸다. 대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과 전남에서 지역구를 조정해 의석을 하나씩 줄였다.

획정위는 국회가 지난해 처리한 선거법에서 정한 지역구 253석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했다. 지난해 1월 전체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1곳당 인구 기준을 13만6565~27만3129명으로 정했다. 여야는 전남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획정위에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 1석 줄고 세종 1석 늘어
강원·전남 전체 의석수는 그대로
"문화·생활권 무시 무리한 선긋기"
강원·호남·경북, 재편 두고 '불만'

획정위 안을 보면, 서울에서 한 석이 줄고 세종에서 한 석이 늘어난다. 강원 춘천과 전남 순천도 분구됐지만 다른 지역을 통해 강원과 전남의 의석수는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시도별 의원정수는 서울 48석(-1),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3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1),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11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으로 조정됐다.

서울에서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노원구와 강남구 가운데 노원3구-2곳만 통합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008면 중업

·순천 쪼개고··노원·안산 등 4곳 통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 선거구 획정안



하기로 한 것은 강남의 인구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획정위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강원과 전남의 선거구는 권역의 경계 안에서 선을 다시 그었다. 강원은 스강을 스동해상권, 스대평원상업활명정전스속초고성양양 스포츠클러스(백산)구인제5곳을 스강활명양 스포츠클러스(백산)스속초철원화천강구인제고성 스동해상업활명정전스강원4곳으로 통합조정했다. 전남은 스포포 스주파순 스포광곡성구에 스담양합령정원정성 스정양무인인인 5곳을 스포포순안 스나주파순정 스광곡성정 스곡성구에 스

무안합령정원정성 4곳으로 통합했다. 당장 불연소라들이 튀어나왔다. 이양수(속초고성양양)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완전히 무시한 줄기"라고 비판했다. 호남이 기반인 민주통합의원민의 정정속 수석부대표도 "선거구 변경을 최소화한다는 로선단체 간 협의사항이 무시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 의원들도 발칵 뒤집었다. 경북은 스안동 스영주문경예천 스상주군위례성정스정양정북부합원 4곳이 스안동예천 스영주정양북부합원 스상주문경 스군위례성

정정양이 4곳으로 재편됐다. 이 지역의 한 의원은 "당과 심재민 김재환 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노선(지역정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역을 다 털어 보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도 통구가 움직임에서 스공구동강화동진 스남강 스남원이 스공강화동진 스동미주출발 스동미주출발로 바뀌었다. 국회는 획정의 안을 수정할 권한은 없고 찬성 또는 반대만 할 수 있다. 개정은 4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088 기자 won@hani.co.kr

서울 8배 면적 '괴물선거구'에 의원 딱 1명... 강원도가 빨났다

선거구획정안 최종안에 가변변별

기존 8배 유지하며 춘천 불로초계 생활권 무인한 채 지역 갈라붙이기 여야 불분 '불용-출신보이콧' 격양

국회미래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강원도 춘천을 분구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괴물'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자 강원도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순히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생활권과 군호,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영서-영동 6개 시·군을 혼재형 선거구로 묶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강원도 국회의원 선거를 수행함에 있어 유지할 상태에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춘천을 분구하는 '제1차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하원 선은 13만6667-27만3570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 28만7400명이 춘천은 갑·을로 분구했다. 인구 하한선을 넘긴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소속 여의위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집선실에서 '강원도 선거구 획정안 제1차 강원도 6개 지역 재획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속초·고성·양양(13만6667명)은 양양읍·양양읍·양양읍으로 묶고, 영동권인 속초·고성군·명사군인 철원·화천·양구·인제와 춘 선거구가 됐다. 서울 8배 면적의 약 40%로, 서울 면적 60%에 이르게 된다.

다른 지역은 철원·태백·삼척, 춘천·횡

성·양양·평강·정선 등으로 묶었다. 의석을 늘리지 않고 현행 8개 의석을 전제로 춘천을 분구하면서 나온 결과다. 도내에서는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강원도의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문화와 정서, 생활권을 무시한 것으로 그

고통은 고스란히 강원도민이 피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구 재획정에 간헐되지 않으면 4·15 총선을 보아엿 할만큼 혼란과 불신에 휩싸일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1차 국회 의원선출 4명(후보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

고 오직 인구수만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지역별 균형은 무너지고 발전은 불가능이 될 게 자명하다"며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우월한 위치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선거구 획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역적 여건, 교통,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획정돼야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구 획정은 넓고 생활권화권이 다른 지역 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도민들이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해당지역을 사이도, 개구, 사화, 안화, 강계다 다른 풍사를 지닌 영서-영동 6개 시군을 합하는 우무선거구가 만들어지지 않게 됐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은 도민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도정의 힘을 20여 차례만 차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서울신문 기자 apoo@kmb.co.kr

여야 "선거구 획정안 다시 짜야" vs 획정위 "헌재 판결 따랐다"(종합)

4일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한다며 재의 요청 '노원 합구'·'공용선거구' 등 문제 지적, 영안위 의결 김세환 "획정기준 준수하면 어쩔 수 없어"

특파원 2020-03-04 오후 5:41 PM
주요 2020-03-04 오후 5:41 PM
대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미래통합당 김세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본청 로렌스홀에서 열린 선거구획정안 관련 3일 원내대표 공술기자회견 전 만나고 있다. 왼쪽은 민주통합당 유성민 원내대표(사진-김철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에 비호(거부권)를 보았다. 공직선거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으며 여야간 합의가 존중되지 않았으며 획정안 재의를 요구했다. 획정위가 안을 제출한 지 하루만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민 민생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로렌스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에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발맞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열린 본회의의

를 의결했다. 선거법상 법적 오류가 있을지 국회는 한 회에 한해 재검토를

법상 제25조 1항 1호인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날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 규정인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으며 △인구비례 2:1을 벗어남이 아니하는 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에도 6개의 시군을 하나의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3일 교섭단체 대표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표적했다.

이정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세환 원내대표에게 "현실성을 완전히 무시한 획정안"이라며, 김기 회선, 강을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쪼개 선거구를 강일 전남 4곳에서는 통폐합에 선거구를 줄이는 과정이 애그립지 못하다는 노원구가 강남구와 비교해 인구가 더 많음에도 합구가 됐다. 현, 강원과 전 기 하나로 지역구로 편성돼 '공용지역구'가 나오게 된 이유 등을 물었다.

소 판결을 근거로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김세환 원내장은 2014년 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 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한 것을 기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청구권자 범위와 공직선거법 개정된 획정기준을 준수해 선거구 변동으로 '해고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강남구가 아닌 노원구를 합구한 데에도 "서울에서 한 찍은 참여하여야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양구 모두 합구 후보군이었던"며 "노원구가 현재 인구가 많으나 강남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 종합 성재원, 사진: 이태원, 사진: 김철호, 사진: 김철호

여야, 선거구 확정안 뒤집어 "세종 분구, 군포 통합"

선관위에 '3당 합의안' 제출하며
검토시간 앞두고 오늘 제출 요구
총선 40여일 남겨놓고 혼란 키워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확정 일정이 벅장 끝에 돌린 상황에서,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선거구 확정안을 뒤집었다. 4일 여야는 전날 선관위가 보낸 '지역구 4곳 분할, 4곳 통합' 확정안 대신 3곳 분할, 1곳 통합' 내용을 담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

의 선관위에 보냈다. 선거일 전 1년째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준수논쟁. 총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하루 만에 확정안을 뒤바꾼 것이다. 자일피일 미루며 세야 할 일에 손을 놓았던 여야가 결과적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제출한 2대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안과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또 이

날 저녁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별도안을 선관위에 보내면서 5일 오전 9시까지 확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불과 12시간 남짓의 '발생 검토'시간을 주면서, 사실상 여야 합의를 그대로 가져오라고 재촉한 셈이다.

교섭단체 3당의 새 합의안을 보면, 세종시를 2개의 지역구로 쪼개고, 대신 군포와 군포읍을 합치는 내용을 담았다. 나머지 지역구는 별도의 구역 조정을 통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확정안은 세종·화성·충천·순천의 지역구를 하나의 늘리고, 서울·노원·안산·강원·전남에서 지역구를 하나의 줄이는 방안이었다. 하지만 강원도 내 6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묶이고, 서울·노원구 선거구를 3개에서 2개로 병합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강원도의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설했다'며 '교섭단체 3당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축소 조정'과 '구역 조정의 최소화'라는 합의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문으로 이어받기
이문 사정지 기가 www.han-gil.com

THE FACT

[TF초점] 선거구 확정 1년 몽갓 여야, '밥그릇' 앞에선 한목소리

목소리 높이고 이르며 '확정안 수정' 압박

입력: 2020.03.05 05:00 / 수정: 2020.03.05 05: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4일 선거구 확정안에 전날 제출한 확정안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정 제출시간이 1년을 넘긴 녹장 대응이면서 오히려 확정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문용 민주당 심재철 대외총괄팀장·유성업 민주총합리팀장원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선거구 확정안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스시스

목소리 높이고 이르며 '확정안 수정' 압박

[더팩트 | 국회=박숙현 기자] 4·15 총선을 40여일 남겨둔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확정위원회(확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확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인구기준이 적절치 않고, 농어촌 등의 지역 대표성 배려가 없는 기계적 관료적인 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선거구 확정 법정 시간(지난해 3월 15일)을 1년 넘게 미뤄오던 정치권이 선거가 막자 확정위를 달달하고 급조하듯 확정기준을 마련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영터리 선거구' "굉장히 무책임" 확정위 압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위에 확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과 2항을 어겼다는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확정안이 공직선거법상 정한 인구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검토를 요청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선거구 확정안 뒤집어

▶1면에서 이어짐

여야가 총선 40여일 전까지 기본적인 ‘물’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 것도 나쁜 선례로 남게 됐다. 여야는 지역구 의석을 253석으로 정한 개정 선거법이 통과된 뒤에도 지역구 확정기준이 될 인구상하한선과 시·도별 의원정수를 합의하지 못했다. 확정시킨 마감을 코앞에 두고 확정위에 ‘공’을 떠넘겨놓고, 정작 확정안이 제출되니 하루 만에 ‘퇴짜’를 놓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문화일보 정치

기사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05일

선거구획정위 “국회가 통보한 기준 따라 새 확정안 마련”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기존 안, 선거법 위반 아냐” ... 7일 국회 제출 전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4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구획정안을 새롭게 마련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장이 통보한 확정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전남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를 1곳씩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에서 4곳을 통합하는 확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 기준 하한은 13만6565명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안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재확정을 요구했다.

선거법은 지역구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확정하고, 인구 편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획정위 제출안에 대해 강원 지역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법 규정을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연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새로운 확정 기준을 합의해 획정위에 넘겼다. 이들은 인구 기준 하한을 13만9000명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세종을 2개로 쪼개고 경기 군포의 강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마련했다.

획정위는 이에 대해 “획정위가 전남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선거법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지 않지만, 선거법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새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행안위가 이날 획정위에 보낸 재확정 요구서에 선거법 위반 부분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특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획정위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면 이르면 7일쯤 새로운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아 기자

획정위 산하 시·도별 공직선거법은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후 선거구 획정안을 정하도록 했다. 법 개정의 뜻을 반영해 선거구를 정비하는 데 이번엔 여야가 의견을 내지 않자 자체 기준을 적용해 확정안 마련을 목적으로 획정위의 첫 시도이며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

순천 선거구 분구하라...지역 정치권 반발 거세

일렉: 2020-03-05 10:40 | 수정: 2020-03-05 16:40



▲ 순천은 순천시의회 제장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합의로 이뤄진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순천지역 분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대로 순천은 반드시 '분구'가 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5월 순천 선거구를 분구하는 대신 일부 지역을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속하게 하는 방안이 알려지자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허석 시장과 순천지역 도·시의원, 예비후보들은 "순천 시민들을 우롱하는 저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순천시 도시의원은 이날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 합의로 이뤄진 선거구획정안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순천지역 분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순천은 인구 상한선을 초과해 분구 대상인데도 일부 읍면동을 떼어내 다른 시군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은 위헌적인 방법이다"고 했다. 의원들은 "특정 후보에 유리

매일경제

2020년 03월 06일 금요일 A12면 정치

무능하고 게으른 국회... 차일피일 미룬 선거구 '발등의 불'

총선 40일 전까지도 결정 안돼
여야 끝까지 바그릇 계산 몰두

4·15 총선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1년 전 일찌감치 이뤄졌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국회의 무능과 게으름 때문에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유권자는 우리 지역구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획정위는 여야 정당이 내는 의견을 듣는다. 전체 지역구 의원 수와 시도별 의원 정수를 국회에서 전달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구획에 나서는 것이다.

VIEW POINT

이재희
정치부 기자



2019년 1월 14일, 획정위는 국회에 300명 중 지역구 의원 수를 몇 명으로 할지, 시도별 의원 수는 몇 명으로 할지 등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을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획정안 제출시한을 지키기 위해 늦어도 2월 15일까지는 확정안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3월 18일, 획정안의 국회 제출시한이 지나자 획정위는 확정시한인 4월 15일까지라도 기준을 전달해달라고 두 번째로 요청했다. 12월 17일, 획정위의 두 번째 요청이 있고도 9개월이 지났지만 결국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획정위가 두 번이나

정수 기준을 요청하는 동안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이를 미뤘다. 같은 달 27일 4·1 협약체의 표결 강행 속에 선거법이 통과되자 30일 획정위는 세 번째로 정수 기준을 요청했다. 해가 바뀌어 2020년 2월 28일, 3개월이 지나도 국회가 정수 기준을 제시하지 않자 보다 못한 획정위는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여야는 그제야 이달 1일 부랴부랴 원내대표가 회동하며 획정 논의에 나섰다. 3일 획정위는 세종, 춘천 등 4곳을 분구하고 노원, 안산 등 4곳을 통합할하는 자체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껏 아무런 응답이 없던 여야는 손익계산서를 두드러본 뒤 하루 만에 획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획정안을

다시 만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이마저도 끝수로 얼룩졌다. 여야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읍·면·동까지 쪼개는 예외 조항을 넣었고 했다. 이는 혼란 최소화를 가장한 현역 의원들의 뒷받 지키기다. 획정위가 4곳의 분구·통합합안을 제시한 것은 여야가 개정된 선거법상 그제 획정이었기 때문이다.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으로 고정한 탓에 읍·면·동 분할 없이는 기존 선거구를 대폭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획정을 1년 남게 미루면서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이재와 읍·면·동 분할이라는 끝수로 이를 덮자는 행태다. 20대 국회의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을 기록한 이유가 이제 보니 무능과 게으름 때문이었다.

획정위 "총선 지역구 재획정 전례 없어...다신 반복 안 되길"

"총선 획정안, 선거법 위반됐다 판단 안 해"
 "구체적 획정기준 기한 준수 방안 마련 필요"
 "농·어촌 지역대표성 구체적 기준 규정해야"

등록 2020-03-07 00:17:06



세계일보

2020년 03월 09일 월요일 008면 정치

'세종 분구·군포 통합' 선거구 획정안 확정

강원·전남·경북·인천도 구역조정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 없어

이취진 기자 fre5922@segye.com

국회가 4·15 총선을 39일 앞둔 7일 새총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 6일을 하루 넘겨 처리했다. 다만, 선관위가 오는 16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이의신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재외선거는 무난히 시행될 전망이다.

획정안은 세종 분구와 군포 통합과 함께 강원, 전남, 경북, 인천 지역의 선

거구를 조정했다. 네 지역 모두 전체 선거구 숫자에는 변동이 없다.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선거구는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평창·영월·평창으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전남은 순천, 광양·곡성·구례 선거구를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인천 미추홀 갑·을, 중·동·강화·옹진 지역구는 미추홀 도화·주안동 등과 동구를 묶어 동·미추홀 갑으로, 미추홀 송의·용인·학이동 등을 동·미추홀 을 선거구로 조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조정 내역

현행	변경
세종	세종 갑·을로 분구
경기 군포 갑·을	경기 군포로 통합
강원 춘천, 동해·삼척,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속초·고성·양양,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춘천 갑, 철원·화천·양구·순천·을, 동해·태백·삼척·정선, 속초·인제·고성·양양, 홍천·평창·영월·평창으로 조정
전남 순천, 광양·곡성·구례	순천 갑, 광양·곡성·구례·순천·을로 조정
경북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평양·영덕·봉화·울진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으로 조정
인천 중·동·강화·옹진, 미추홀 갑·을	인천 중·강화·옹진, 인천 동·미추홀 갑, 미추홀 을로 조정
부산 남·북 갑·을, 인천 서갑·을, 경기 광명 갑·을, 평택 갑·을, 고양 갑·을, 용인을·병·청·화성 갑·을, 병,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부산 남갑·을, 인천 서갑·을, 경기 광명 갑·을, 평택 갑·을, 고양 갑·을, 용인 을·병·청, 화성 갑·을, 병,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경북은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를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했다.

부산 남갑·을, 인천 서갑·을, 경기 광명 갑·을, 평택 갑·을, 고양 갑·을, 용인 을·병·청, 화성 갑·을·병, 전북 익산 갑·을, 전남 여수 갑·을 지역구는 구·시·군내 경계를 조정했다.

자료: 국회

경북 북부 선거구 재편 확정...통합당 공천 변화 오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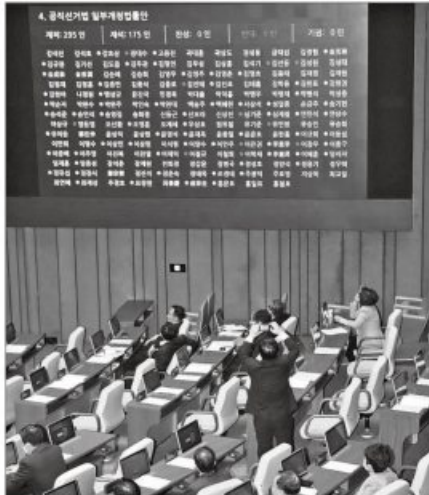
김희국 전 의원 “재공모면 없음”
김재원 무소속 출마 여부 변수

경북 북부권 4개 선거구가 생활권에 따라 크게 재편되는 내용을 포함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7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TK) 지역 공천 구도도 일부 달라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차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선거구 인구 편차 하한선은 13만9천명, 상한선은 27만8천명으로 설정됐다.

경북 북부권에선 기존의 △안동 △영주-문경-예천 △상주-군위-의성-청송 △영양-영덕-봉화-울진 등 4개 선거구가 △안동-예천 △영주-영양-봉화-울진 △상주-문경-의성-청송-영덕 선거구로 조정됐다.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을 공유하고 있고, 상주와 문경, 영주와 봉화도 각각 같은 생활권이어서 이번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합당 공천원은 선거구가 바뀐 지



지난 7일 오전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세종 분구-군위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찬성 141, 반대 21, 기권 13으로 통과돼 미래통합당 김광림 의원이 전경환을 출정하고 있다.

어갈 전망이다. 김형오 공천위원장은 지난 6일 TK 23개 선거구 공천 심사

구가 바뀌면 (공천자들) 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석호-김재원 의원)이 동시에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된 군위-의성-청송-영덕에선 의성 출신으로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과 가까운 김희국 전 의원의 공천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은 8일 통화에서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 재공모가 있으면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수는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의 ‘유턴’ 가능성이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 공천 발표 다음 날인 7일 서울 중랑구에서 문상일 전 의원과 정선 주자로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 평가에선 김 의원이 경선에서 응하지 않고 군-의성-청송-영덕에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라는 풍문이 나돌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사설 확인을 위한 영남일보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상주-문경의 경우, 앞서 상주-군위-의성-청송에 단수 공천을 받은 임이자 의원이 수평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선 영주-문경-예천에서 단수 공천을 받은 영주 출신 황현 전 MBC 영덕과 영양-영덕-봉화-울진의 경선 주자(박형수 전 대구고교 부장검사 vs 이귀영 미국언론 공민권촉사) 중 누가 간 재경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2020년 03월 12일 목요일 X13면 지방

춘천 선거구 획정 ‘역대 최악 누더기’… 유권자 냉소 부채질

춘천 19개 읍면동 주민 뿐인데 명칭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감홍선 출마자도 설명하느라 전담

사람 소유의 누더기 선거구가 확정된 강원 춘천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원과의 이해 못할 선거구 분할에 이어 유권자들이 전혀 관계없는 선거구 이름 때문이다. 이를 재해 무효화 못이 나지 않는 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춘천철원화천양구-감’ 선거구는 춘천시내 25개 읍면동 7

만대 19개동 이뤄져 있다. 춘천지역 만으로 이뤄진 선거구 압축도 철원과 화천 양구가 들어가 있다. 춘천 외 4개 지역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 신북-사북-북산-사천-신사우동-문동 등 춘천 북부지역 6개 읍면 주민과 철원, 화천, 양구 주민들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감’ 유권자다. “춘천 입장에서 일부 읍면동을 인접 지역에 넣어야 하겠지만, 획정위는 춘천과 철원, 화천, 양구를 하나의 영토로 인식해 같을 뿐 아니라”라는 게 지역장과의 반응이다.

때문에 출마자들도 감을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치면서 전황을 빼고 있다는 후문

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감” 선거구를 ‘춘천-감’으로 줄여 쓰자는 의견이 북돋을 이르는 이유다.

한편 이 지역구에 출마할 예야 후보가 하나, 둘 출마선언을 하며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춘천에서 3선에 도전하는 김진태 의원은 이날 “사회주의 정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춘천-감’ 선거구에서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마스크 5부제를 하는 나라,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나라를 만들었다”며 “환경부 장관이 얼마 전 신천어축제 비하 발언을 했다”며 “대형 잔재청과도 정 책실장이 (경원도 만해) 마스크만 썼

다”며 경정심판문을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도당위원장과 유동한 전 강원 연구위원장의 경선을 통해 김 의원의 상대를 결정한다. 강원지사 비서실장 등을 지낸 허 위원장은 세 번째 도전 만에 여론도 임종을 노리고 있다. 권보 출신인 육 전 위원장은 경선을 아는 전문자를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가 채택된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춘천에서 당선에 도전한다.

정의당 영재철 예비후보는 국회의원 국 민소환제와 그린뉴딜형 벤처기업 육성 특별회차 추진, 미래인재생활유해물질 등 환경유해물질 구획 등을 공약으로 내놓고 일찌감치 표방 갈아나섰다. 박은성 기자

“선거구 쪼개기도 서러운데...” 광양에 편입된 순천 해룡면

선관위 '광양시 해룡면' 표기에 주민 반발
관할도 광양선관위로 배정돼 형평성 논란

“국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 순천을 무시하고 홀대해 너무 화가 납니다.”

전남 순천 시민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단단히 뿔났다. 순천시 인구는 2월 기준 28만 1347명으로 선거구 상한선 기준(27만명)을 넘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개 선거구로 쪼개기로 했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인구 5만 5000명의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분리해 인근 광양시 등으로 편입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런 와중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순천시 해룡면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순천시 선관위 대신 광양시 선관위로 포함시켜 시민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7일 관할 선거위원회를 표기하면서 광양시 해룡면,

곡성군, 구례군으로 분류해 해룡면이 광양시 행정구역처럼 보이게 됐다.

순천시가 이에 항의하자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광양시 해룡면(순천시)-곡성군-구례군으로 수정했다. 그러나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으로 구분해야 정확하다는 게 순천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앞서 강원 춘천시의 경우 갑과 을 2개의 선거구로 분구하면서도 관할 선관위를 모두 춘천시 선관위로 배정한 것과 대조된다. 순천과 춘천시 모두 인구 28만명으로 조건이 같은 데도 '순천을'만 관할 선관위를 다른 도시인 광양시로 배정해 형평성 위반 논란까지 일고 있다.

더욱이 광양시 해룡면(순천시)으로 유지될 경우 순천시 해룡면 주민들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공문을 순천이 아닌 광양시 선관위이나 광양시장이 보낸 것으로 받게 된다. 각 지역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개표, 선거록 작성, 당선인 결정 등 업무에 관여하며 선관위원장과 지자체장 등이 주민에게 보내는 각종 공문도 해당 선관위가 보낸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jp@seoul.co.kr

아시아투데이 | <http://me2.do/xdm7fC5h>



김인호 문경시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문경·상주확정 환영”

문경/아시아투데이 장성훈 기자 = 김인호 경북 문경시의회 의장은 7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 영주·문경·예천 선거구가 상주·문경으로 확정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문경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2일 경북도청 기자회견과 18일 상주문화회관에서 경북북부권 선거구 재획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또 28일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경북북부권 의장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방문해 김세환 위원장님께 드리는 서한문'을 통해 문경과 상주는 지금도 법원, 검찰 세무영정서비스를 동일한 관할구역을 두고 있어 문경과 상주는 반드시 동일한 선거구로 확정돼야 한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시사한 바 있다.

김인호 의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안 확정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것을 계기로 그동안 만연했던 상호불신과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화합해 문경과 상주

Leader



엄정중립
공장관리

중 박스인등 등 선안을 위한 위원회를 세우
할 계획이다. 발의와 기밀 등이 있는 선안을
대상으로 불신할 분야에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
기초소 운영한다. 선거의 스스로 야당을
확립하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하고 있다.

Q: 야당을 지지 할려면 투표가 불가능한지
다소 어렵게 접근안을 제안한다는 것 아니다.
다만 야당을 지지하는 내적인 행동 수
칙을 위반해 투표는 금지된 것인 제도를 꾸준
히 할 계획이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으로 규제를 완화해 선거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청년-후보자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판단을 재확인하는
방법과 출제선언은 철저히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가 가능하다. 본인이 가우이는 평소에서 가우
표로 할 수 있는 일.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대역이 필요할 것 같다
많은 이런 의견사항에 대한 제정적 대안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공생한다. 야당 선관위에서나
야당 당내에서도 법 제정을 장려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개적으로 입
표제제를 구축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
양한 해를 하겠다.

Q: 최근 선거 규제를 어떻게 제정, 가감 여
차별은 무분별
선거구획정의 관례적인 조율도 의원행수 등
특정지역이 지면의 선거구획정 제정이 높아
였다. 앞으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2018년 4월 11일 수요당 의원 연



Q: 선거 현행기에서 제2차 회고에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보니
선관위에는 각 국가가 역사-문화, 정치체제, 사
회적 풍속 등이 총합된 결과로 인식 하라는 어
였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Q: 야당에서 투표하는 투표권이 가능하다고
했다.

선거를 실시한다 보니 행정 사무상에서 인원을
했다. 행정관 하-로 스티프를 높고 목적을
했다. 투표 심의를 올리 물론 자민이 사였어
다. 행정적인 만큼 기계를 많이 넣어 예산도 사
역사 그대 4000을 많이 한다.
결정된 예산도 법의 원칙에 따라 국외의 최선
을 다하는 선배 동료들을 보면서 매우 감동
하고 느꼈던 기억이 생겼다.

Q: 대차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당

부록 5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공직선거법(2020. 1. 14. 개정)

공직선거법(2020. 3. 11. 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획정위 위원 윤리강령 포함)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부록 5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



공직선거법

[시행 2020.1.14.][법률 제16864호, 2020.1.14., 일부개정]

-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개정 2016.3.3.))**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개정 2016.3.3., 2020.1.14.>
-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개정 2016.3.3.>

-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3.3.>
-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
-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개정 2016.3.3.>)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3.3.>

-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3.3.>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국회법」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3.3.>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국회법」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6.19.]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개정 2016.3.3.>)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6.3.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3.3.>
-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6864호, 2020.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추천절차 제출에 관한 특례)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후보자 추천절차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당헌·당규 및 그 밖의 내부 규약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1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1. 30석

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연동배분의석수} = & [(\text{국회의원정수} - \text{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times \text{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 \text{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div 2 \end{aligned}$$

나.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정수)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begin{aligned} \text{잔여배분의석수} = & (30 -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times \text{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end{aligned}$$

다. 가목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30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나목 후단을 준용한다.

$$\begin{aligned} \text{조정의석수} = & 30 \times \text{연동배분의석수} \\ & \div \text{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end{aligned}$$

2.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 각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30석을 뺀 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정수)의 의석을 해당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 ②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제189조제6항, 제194조제4항, 제197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0.3.11.][법률 제17070호, 2020.3.11., 일부개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개정 2016.3.3.))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개정 2016.3.3., 2020.1.14.>

②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개정 2016.3.3.>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3.3.>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6.3.3.>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6.19.]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개정 2016.3.3.>) ①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3.3.>

② 국회의장은 제24조제11항에 따라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회부받은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사하여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선거구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그대로 반영하되, 선거구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한 차례만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3.3.>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구획정안의 위원회 회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해서는「국회법」제86조에 따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3.3.>

⑥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는「국회법」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법률안 또는 선거구법률안이 포함된 법률안을 수정 없이 바로 표결한다.

[본조신설 2015.6.19.]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개정 2016.3.3.>)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개정 2016.3.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주민등록법」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3.3.>
- ③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칙 <제17070호, 2020.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춘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강원도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전라남도 순천시의 일부를 분할하여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을 분할하여 각각 경기도 화성시갑국회의원지역구와 화성시병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사퇴하거나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된 예비후보자에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5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요청 등에 관한 특례)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제57조의8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이 법 시행일 후 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전송횟수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종전 국회의원지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국회의원지역구 중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제7조(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새로 선택한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그 국회의원지역구에 발송한 수량을 뺀 수량의 범위에서만 발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예비후보자는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의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있게 된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 10일까지 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를 해당 국회의원지역구로 이전하고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정당선거사무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하나의 구·시·군이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된 경우 종전에 설치하였던 정당선거사무소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정당선거사무소로 본다.

제10조(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는 제63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제6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선임할 수 있다.

제11조(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새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본다.

제12조(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국회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 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제120조제10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5. 6.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28호, 2015. 6. 19,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직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 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소관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승낙 및 비당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이 국회의원 또는 당원이 된 때에는 해촉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항의 해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③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위원회가 위원 선정을 요청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① 확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확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확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 ③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대우) 위원이 확정위원회의 회의(이하 “위원회의”라 한다)에 출석한 때 또는 확정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일비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확정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새로이 구성된 확정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1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① 확정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 ④ 사무국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제3장 지원 조직

제10조(지원 조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확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인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국에 팀을 둘 수 있다.

제11조(사무국의 직무)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거구획정 관련 자료의 수집·검토에 관한 사무
- 2. 확정위원회 지원 및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무
- 3.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 4.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 5. 그 밖에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사무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법 제24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 받은 관계 국가기관은 이에 따라야 하며,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확정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파견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보 칙

제13조(자료요청 등) 확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무처리 등) 확정위원회의 조직·인사(법 제24조제12항에 따라 위원장이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감사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제15조(위임규정) 확정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확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28호, 2015.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제24조 및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
2.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등을 기재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장 호선공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호선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 ② 의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 전 2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에 배부할 수 있다.
- ③ 의결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 ④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⑤ 회의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속기록을 첨부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회의록 등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정당의 의견진술) 위원회는 법 제24조제10항에 따라 정당이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진술 방법·순서 및 발언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되, 정당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진술인의 선정과 진술인 및 위원의 발언시간 등 공청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④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등은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공청회를 방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공청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언론관계자와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그 밖의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하거나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윤리강령) 위원회는 위원이 선거구획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윤리강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강령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정당의 의견진술에 참석한 진술인
2. 제8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3. 제9조에 따른 토론자 또는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등

제12조(운영 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정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에 한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별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윤리강령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공정하게 획정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이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윤리강령 준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2조(품위 유지) 위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정치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4조(청렴성, 공정성) ①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성실하게 직무에 임하며,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① 위원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상 비밀의 유지) 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한다.

제7조(직무 외의 활동) 위원은 개인의 자격으로 언론 인터뷰, 토론 참여, 신문 기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견으로 비추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선거구획정
백서

부록 6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4. 10. 30. 선고)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부록 6

헌법재판소 결정문 (2014. 10. 30. 선고)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12헌마190, 192, 211, 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 (병합)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위헌확인 2012헌마262(병합)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선	고	일
		별지1 명단과 같음 2014. 10. 30.

주 문

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1. 사건개요

가. 2012헌마190 사건

청구인 윤○만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로, 2012. 2. 당시 ‘새누리당 대전시당 선거구 증설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이하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라 한다)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의 인구수가 251,875명으로, 울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에 속한 다른 선거구들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12. 2. 29.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2헌마192 사건

이 사건 청구인들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의 인구수가 252,494명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다른 선거구들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권선구청이 소재하는 권선구 서둔동을 행정구역과 생활여건 등이 다른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2. 29.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2헌마211 사건

이 사건 청구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동백동 및 수지구 상현2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와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의 인구수가 각각 304,730명, 305,482명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다른 선거구들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생활여건,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 여러 면에서 역사적·전통적 일체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과 용인시 처인구 일원을 묶어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2동을 용인시 기흥구 중 동백동과 마북동을 제외한 다른 지역과 묶어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3. 6.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례 6

라. 2012헌마262 사건

이 사건 청구인들은 천안시 서북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로,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이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자치구의 분할만을 금지하여 행정구는 그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구로 통합·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을 천안시 서북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지역 선거구인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가 아닌 천안시 동남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로 편입한 것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2. 3. 14.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중 “자치구” 부분 및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12헌마325 사건

청구인 박○돈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3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이면서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청구인 봉○춘은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와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의 인구수가 각각 296,343명, 276,229명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다른 선거구들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을 천안시 서북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지역 선거구인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가 아닌 천안시 동남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로 편입시킨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평등권 및 청구인 박○돈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12. 3. 29.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2013헌마781 사건

청구인 정○택은 현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국회의원으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중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의 인구수가 241,665명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다른 선거구들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인구가 더 많은 충청권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수가 호남권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수보다 적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2013. 11. 14.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2014헌마53 사건

청구인 고○철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청구인 전○호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청구인 남○현은 서울 강서구 등촌2동, 청구인 강○모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청구인 강○희, 서○애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들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의 인구수가 각각 258,851명, 303,618명, 304,609명으로,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의 다른 선거구들에 비해 인구수가 많아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4. 1. 23.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2헌마190, 192, 211, 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 사건

이 사건 청구인들은 모두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 중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각 선거구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나. 2012헌마262 사건

이 사건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과 함께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이 사건 선거구 구역표 중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이므로, 심판대상을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선거구 부분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2012헌마190),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2012헌마192),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2012헌마211),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2012헌마262, 2012헌마32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부분

(2013헌마78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2014헌마53)(이하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전체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 심판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부분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단서 생략)
- ②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지역구 : 246)

선거구명	선거구역
서울특별시 (지역구 : 48)	
강서구갑선거구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1동, 화곡제2동, 화곡제3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화곡제8동, 우장산동, 발산제1동
강남구갑선거구	신사동, 논현1동, 논현2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1동, 삼성2동, 역삼1동, 역삼2동, 도곡1동, 도곡2동
인천광역시 (지역구 : 12)	
남동구갑선거구	구월1동, 구월2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1동, 간석2동, 간석4동, 남촌도림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대전광역시 (지역구 : 6)	
동구선거구	동구 일원
경기도 (지역구 : 52)	
수원시병선거구	행궁동, 지동, 우만1동, 우만2동, 인계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동, 화서2동, 서둔동
용인시갑선거구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마북동, 동백동
용인시을선거구	신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기흥동, 서농동, 구성동, 상하동, 보정동, 상현2동
충청북도 (지역구 : 8)	
청주시상당구 선거구	청주시 상당구 일원
충청남도 (지역구 : 10)	
천안시갑선거구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복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쌍용2동
천안시을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3동, 백석동, 부성동

3.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가. 헌법재판소는 2001. 10. 25. 선고한 2000헌마92등 결정에서, 국회의원의 선거에 있어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50% 편차(이 기준을 준수할 경우 전국 선거구 중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3:1을 넘지 아니한다)를 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헌법상의 요청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의 인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 상하 33⅓%(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하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편차를 따지는 방식은 ‘인구편차 상하 00%’, 전국 선거구의 최대인구수와 최소인구수의 비율을 따지는 방식을 ‘인구비례 0:0’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위 결정이 선고된 지 벌써 13년이 경과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함에 있어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최소한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의 기준에 따라 편성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선거구 간의 인구의 균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따르지 아니한 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생활여건과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 여러 면에서 수원시 팔달구와는 전혀 상이한 지역인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에,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및 수지구 상현2동을 각각 성산을 중심으로 교통, 생활권이 분리되어 생활여건과 지역여건, 인구구성 등이 완전히 상이한 지역과 합구하여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와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에,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을 기존의 선거구였던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에서 분리하여 위 지역과 생활여건, 지역여건 및 정치적 정서가 다른 천안시 동남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에 편입시켰다. 특히,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을 기존의 서북구가 속한 선거구에서 분구하여 천안시 동남구 일원이 속한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서북구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을 합쳐 “천안시 제7선거구”로 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일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자의적인 것으로 위 지역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구뿐만 아니라 행정구도 그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구와 통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자치구의 분할만을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리 및 선거구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인구수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행정구와 자치구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법령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란 법령에 의하여 직접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헌재 2006. 11. 30. 2004헌마431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행정구역 단위 중 자치구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로 편입하는 것만을 명시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행정구의 분구 및 통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법률 조항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행정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로 편입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국회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를 편성한 이후에야 비로소 2012헌마262 사건의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가 분할되어 다른 선거구와 통합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처럼 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 아니라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이상,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 1) 이 사건에서는 첫째, 헌법재판소가 2000헌마92 등 결정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있어 기준으로 삼았던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의 기준이 현재의 시점에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이하 ‘문제된 4개 선거구’라 한다)이 행정구의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선거구에 편입시키고 있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 2) 2012헌마190 사건의 청구인 윤○만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편성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로 인하여 정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신의 정당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는 단순히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후보자 선택을 제한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보장하거나 봉쇄한 것이 아니며, 가사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로 인해 지역별로 선거구의 수가 달리 정해지고 이로 인해 정당별로 사실상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는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고자 하는 위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또한, 2012헌마325 사건의 청구인들 중 박○돈과 2013헌마781 사건의 청구인 정○택은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획정으로 인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된 특정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서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거나 본인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특정 선거구의 투표가치가 다른 선거구에 비하여 낮아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 위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활동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1) 선례

헌법재판소는 2001. 10. 25.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에 대하여 판단한 바가 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당시 법정의견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함에 있어, 인구편차 상하 33⅓%(인구비례 2: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 또는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선택 가능한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상하 33⅓% 편차 기준이 선거권 평등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방안임은 말할 필요도 없으나, 위 기준에 의할 때 행정구역 및 국회의원정수를 비롯한 인구비례의 원칙 이외의 요소를 고려

함에 있어 적지 않은 난점이 예상된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 편차를 헌법상 허용되는 인구편차의 한계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법정의견은 헌법상의 요청인 평등선거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지역선거구획정에 따른 선거구 간의 인구의 편차는 적어도 최대선거구의 인구가 최소선거구의 인구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2) 인구편차의 허용기준

- ㉠ 우선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함에 있어 최소선거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우리 재판소는 이미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관련하여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5. 12. 27. 95헌마22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투표가치의 평등을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인구편차 상하 0%, 인구비례 1:1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위 기준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입법자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입법자로서는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최대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대적 상황, 정치적 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여 국민 개개인의 투표가치를 합리적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는 헌법상 허용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인구편차 상하 50%, 인구비례 3:1로 제시하면서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인구편차 상하 33⅓%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는바(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위 결정으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헌법적 허용한계로서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도입하여야 할 것인지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위 2000헌마92 결정에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이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는 점,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

의 개발불균형이 현저한 현실 등을 근거로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있어 인구편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나 도농 간의 인구격차, 불균형한 개발 등은 더 이상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넘어 인구편차를 완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에 임하게 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득표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만일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권자의 수가 차이나게 되면 선거권자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가급적 그 편차를 줄이는 것이 헌법적 요청에 부합한다. 그런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단원제 및 소선거구제에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인구편차 상하 50%의 기준을 따를 경우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획득한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된 후보자가 획득한 투표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 ②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구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이어야 한다는 원리는 이미 논쟁의 단계를 넘어선 확립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국민주권주의의 출발점인 투표가치의 평등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다.

더구나,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헌법상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을 현저히 완화할 필요성 또한 예전에 비해 크지 않다.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가지는 지역대표성으로 상당부분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중대한 당면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빈곤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전체적인 소득 불균형의 해소, 노년층의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제는 국회의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특정 지역 내에서의 편의시설 마련이나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문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권의 평등을 희생하기 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③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복수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지역구를 획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면 할수록 시·도별 지역구 의석수와 시·

도별 인구가 비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과대대표되는 지역과 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살펴보면, 지역대립 의식이 상대적으로 크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영·호남지역이 수도권이나 충청지역에 비하여 각각 과대하게 대표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지역정당구조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예컨대, 2012. 1. 31.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106,086명인데 비해,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선거구”의 인구수는 303,516명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는 “전라남도 순천시 곡성군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보다 약 2.86배 크다. 같은 농·어촌 지역 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불균형은 농·어촌 지역의 합리적인 변화를 저해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④ 인구편차 상하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획정할 당시 고려한 2012. 1. 31.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총 246개의 선거구 중 56개의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되며, 선거 이후의 인구변화를 고려하여도 2013. 7. 31.을 기준으로 총 60개의 선거구가 분구·통합대상이 된다. 선거구의 분구·통합 과정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엄격해진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다음 선거까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비록 상설기관은 아니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공직선거법 제24조),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역시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은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동일한 인구수를 요구하면서 절대적 평등인 0에 가깝도록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있고, 독일은 원칙적으로 상하 편차 15%를 허용한도로 하되, 상하 편차 25%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대허용한도로 함으로써 탄력적인 입법을 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94. 2. 4. 법률 제3호로 제정된 중의원의원선거구획정심의회설치법 제3조 제1항에서 “각 선거구의 인구 중 가장 많은 것을 가장 적은 것으로 나누어 얻은 숫자가 2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함을 기본으로 하고, 행정구획, 지세,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인구비례 2.3:1인 선거구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33⅓%, 인구비례 2: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의 위헌여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획정함에 있어 국회가 고려한 전국 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 제외, 당시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정부기관의 이전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세종시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평균인구수의 계산에서 제외하였다)의 평균인구수는 206,304명이다. 그리고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및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는 +22%,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는 +47.7%,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는 +43.6%,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는 +33.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는 +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는 +48.6%,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선거구”는 +28.67%,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47.6%의 인구편차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서지 않는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갑선거구” 부분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나, 그 기준을 넘어서는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은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문제된 4개 선거구가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제정경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11. 11. 25.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인구비례 3:1)로 하고, 분구 선거구 8곳(수원시 권선구, 파주시, 이천·여주시, 용인시 기흥, 수지, 강원 원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산 기장군), 통합 선거구 5곳(서울 성동구 갑을→성동구, 노원구 갑을병→노원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남구, 대구 달서구 갑을병→달서구 갑을, 전남 여수시 갑을→여수시), 선거구 증감 없이 경계를 조정하는 선거구 4곳(서울 강남구 갑을, 대구 북구 갑을, 인천 남동구 갑을, 광주 북구갑을)으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총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248개로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위 획정안과 그 이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위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국회의결을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수는 현행 245석으로 유지하되, 선거 후인 2012. 7. 1. 세종시가 출범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지역구 정수를 246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정수는 현행 54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국회는 2012. 2. 29. 신설 선거구 1곳(세종시), 분구 선거구 2곳(강원 원주, 경기 파주), 통합 선거구 2곳(경남 남해하동, 전남 담양곡성구례), 경계 조정 선거구 7곳(용인시 처인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팔달구, 천안시 갑, 천안시 을)으로 하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확정하였다.

2) 문제된 4개 선거구의 위헌 여부

- ㉓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지역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멘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8.11. 26. 96헌마7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회적·지리적·역사적·경제적·행정적 연관성 및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역이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였는지 여부가 원칙적인 기준이 된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 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2012. 2. 기준으로 인구수가 43,836명에 이르는 큰 지역으로, 권선구의 행정타운과 권선구 청사, 향토유적 제1호인 향미정이 위치해 있는 권선구의 중추지역이다. 권선구 서둔동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는 수원시 권선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지역선거구인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선거구”에 속하였다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개정되면서 인접한 수원시 팔달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로 편입되었다.

국회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을 분구하여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에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2012. 2. 기준으로 수원시의 인구는 권선구 329,580명, 장안구 295,876명, 팔달구 220,550명, 영통구 274,879명이었는데, 팔달구에 인접한 동종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서둔동을 분리시켜 팔달구와 합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수원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4개로 유지하면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권선구 서둔동은 행정구역도상으

로 팔달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국회가 권선구 서둔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권선구 서둔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 ㉔ 용인시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각 구별로 1개씩의 선거구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개정에 따라 기흥구 마북동, 동백동이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로, 수지구 상현2동이 인접한 용인시 기흥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로 각 편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상현2동을 제외한 나머지 수지구 내 지역이 “경기도 용인시 병선거구”로 확정되었다.

2012. 2. 기준으로 용인시의 인구는 기흥구 368,727명, 수지구 319,019명, 처인구 209,215명이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수를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농촌지역인 처인구 대상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기흥구와 수지구 지역을 분구하여 각 2개의 선거구를 둘 것(용인시 전체 5개의 선거구)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합의에 실패하였고, 용인시에 3개의 지역선거구를 그대로 두는 전제 하에서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해, 각 선거구에 인접한 동 중에서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동들을 분리시켜, 처인구, 기흥구와 합구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행정구역도상으로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은 처인구 지역에,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 지역에 인접해 있고, 위 지역들이 편입되는 지역들과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사정도 없으며, 달리 국회가 기흥구 동백동, 마북동, 수지구 상현2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기흥구 동백동과 마북동, 수지구 상현2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항은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에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헌재 2012. 2. 23. 2010헌마282 참조),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 ㉔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천안시 서북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에 속해 있다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개정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선거구인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로 편입되었다.

2012. 2. 기준으로 천안시 서북구의 인구는 326,251명, 동남구의 인구는 259,336명이고 서북구 쌍용2동의 인구수는 43,087명으로 서북구에 속한 읍·면·동 중 세 번째로 많다. 국회가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을 분구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로 편입시킨 주된 이유는 동남구에 인접한 동 중 상당한 인구수를 가진 쌍용2동을 분리시켜 동남구와 합구함으로써, 천안시 내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서북구 쌍용2동은 행정구역도상으로 동남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서북구 쌍용2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서북구 쌍용2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

2013헌마325 사건 청구인들 중 청구인 봉○춘은 국회가 천안시 서북구 중 쌍용2동만을 분리시킨 결과,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이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선거제도와 지방의회의원선거제도의 제도적 취지가 다르고, 투표가치 평등의 헌법적 의미 역시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 두 선거구구역표 사이에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나아가 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서는 서북구 쌍용2동을 동남구 신방동과 묶어 “천안시 제4선거구”로 획정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볼 수 없다.

라. 선거구구역표의 불가분성과 위헌선언의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판대상 선거구 구역표 중 인구편차 33⅓%, 인구비례 2:1의 기준을 벗어난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이지만, 선거구구역표는 각 선거구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가짐으로써 한 부분에서의 변동은 다른 부분에서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에 대하여만 인구과다를 이유로 위헌선언을 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적용 때문에 당해 선거구보다 인구의 불균형이 더 심한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선거구구역표의 전부에 관하여 위헌선언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헌재 1995. 12. 27. 95헌마 224등;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참조).

마. 헌법불합치 결정의 필요성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관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단순위헌의 결정을 하게 되면,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수많은 고려요소를 조정하여야 하는 선거구구역표의 성격상 그 개정입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법의 공백이 생기게 될 우려가 큰 점 및 국회의 동질성 유지나 선거구구역표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재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입법자가 2015. 12. 31.을 시한으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개정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의 잠정적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 부분은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실시한 불가분성에 따라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에 대하여 위헌선언을 하되, 201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아래7.과 같은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7.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우리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상 각 선거구 사이의 인구편차가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33⅓%(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가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에 반대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므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우리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대의제민주주의에서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제도도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나 이해가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때 국민 개개인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가 수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성과에 있어서도 동일하여야 한다는 평등선거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하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고,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시대에 따른 정치적 안정의 요청이나 역사적·사회적·정치적 상황 등과 같은 그 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제도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 헌법은 제41조 제1항의 위와 같은 평등선거원칙과 더불어 제3항에서 선거구 등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국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이에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전문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한다.”고 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는 선거구간 인구의 균형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여러 가지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4 참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의 위헌성 문제를 판단할 때는 인구비례를 중요 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인구 외적인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현실적 필요성

이 있을 경우에는 인구비례의 엄격성 정도를 완화하여 판단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2) 우리나라의 경우 각 지역이 국가에 대하여 원하는 시책은 선거구의 지역적 특수성, 특히 도농 사이의 인구 밀도나 개발 정도의 격차 등으로 인해 현저한 차이가 있고, 국회의원의 선거가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의 요구를 대변해줄 대표자를 뽑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의 기능을 상당 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인구의 도시집중은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도시 위주의 개발은 여러 분야에서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심한 개발 불균형을 낳았고, 그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농간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해관계의 상반 속에서 인구의 현격한 차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2000헌마92등 결정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선거구간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대해 기존의 허용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60% 기준(인구비례 4:1)을 위헌으로 선언하고, 새로운 기준으로 상하 50% 기준(인구비례 3:1)을 제시한 바 있다. 그 당시 헌법재판소는 상하 50% 기준을 채택하면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법리상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는 점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한 점, 그리고 당시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구·시·군의 행정구역을 분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수를 일정수로 한정하고 있어 선거구 조정이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상하 33⅓% 기준을 당장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 들었다(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즉 상하 33⅓% 기준과 상하 50% 기준 중 상하 33⅓% 기준이 평등선거의 이상에 보다 접근하는 안임에는 틀림없으나, 인구비례를 엄격히 요구할 현실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선거구 획정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2001년 제시되었던 33⅓% 기준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인구외적 다른 요소들이 해소됨을 전제로 장래에 가능한 기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2001년 당시 상하 50% 기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모두 해소되어 상하 33⅓%의 기준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도농간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한 지역 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며, 선거구 획정에 있어 행정구역의 분리 금지 및 국회의원정수의 고정과 같은 선거구 조정에 관한 공직선거법상의 장애 요소 역시 2001년과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다수의견에서는 지금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는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 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여전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 7. 31.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수는 51,064,841명, 선거구수는 246곳, 선거구 평균인구수는 207,581명, 인구수 최다선거구의 인구는 338,807명, 최소선거구 인구는 101,085명이며,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상하 33⅓%를 벗어나는 선거구는 모두 60곳(초과 35, 미달 25)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하 50%의 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기준인 상하 33⅓%를 적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행정구역의 분구나 통합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상의 제약이 존재하여 원활한 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인구비례를 맞추면서 행정구역 분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선거구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선거구수를 늘리는 문제는 이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정서나 예산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법률을 개정하여 의석수를 늘리는 방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시를 대표하는 의원수만 증가할 뿐이며, 지역대표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는 감소할 것이 자명하다. 이 경우 다수결원칙이 통용되는 국회 내에서 지역의 이익이 대표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33⅓% 이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 4) 다수의견은 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인구비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다른 나라들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를 더욱 엄격히 하고 있음을 상하 33⅓% 인구편차 기준 채택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정치 선진국의 최근 판례나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인구편차의 허용한계가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인구비례를 중시하여 선거구 인구편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아울러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하 양원제를 취하면서 각 연방이나 지방을 대표하는 일정수의 대표자를 인구수에 상관없이 상원의원으로 선출하여 해당 지역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하거나(미국, 스위스는 각 주마다 2인, 스페인은 각 지방마다 4인의 각 상원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상하원 국회의원 선거구에 인구편차 허용 정도를 달리 적용하여 지역이익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상원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

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하원적인 중의원은 2대1 이내의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상원적인 참의원은 인구비례 5대1 이내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원화되어 있는 의회에서 지역이익도 함께 대표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거구 인구편차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단원제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선출시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것은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5) 이상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재판소가 2000헌마92등 사건에서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 인구편차 상하 50%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였던 상황과 크게 달라진 바 없는 현 시점에서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상하 50% 편차 이내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위헌성 여부도 이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대상 선거구구역표 중 다수의견이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선거구들을 살펴보면,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및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는 각 +47.7%,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는 +43.6%,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는 +33.8%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선거구”는 +48.6%, “인천광역시 남동구 갑선거구”는 +47.6%로서, 모두 인구편차 상하 50% 이내에 있다.

그렇다면 위 선거구들은 모두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달리 위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거구구역표 전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장	재판관	박한철	박	한	철
	재판관	이정미	이	정	미
	재판관	김이수	김	이	수
	재판관	이진성	이	진	성
	재판관	김창중	김	창	중
	재판관	안창호	안	창	호
	재판관	강일원	강	일	원
	재판관	서기석	서	기	석
	재판관	조용호	조	용	호

[별지 1]

청구인 명단

(2012헌마190)

1. 윤○만
대리인 변호사 김귀덕, 김평수, 이효상

(2012헌마192)

2. 김○규 외 123인
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2012헌마211)

126. 홍○구 외 21인
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이성규, 이상훈, 김강균, 김영환

(2012헌마262)

148. 김○미 외 9인
대리인 변호사 임상구

(2012헌마325)

158. 박○돈 외 1인
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이문우, 황영명

(2013헌마781)

160. 정○택
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2014헌마53)

161. 고○철 외 5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이상훈, 김진, 이상희, 이은우, 김수정, 류신환, 박갑주, 김주혜, 신장식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국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각각 둔다.
-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⑥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⑩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⑦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당해 국회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제1항 본문 후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구획정
백서

부록 7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기준

National Assembly Election Boundary Delimitation Commission



부록 7

역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기준



구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제20대 (16)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53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위원회('15. 7. 15. 구성)에서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적용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16. 2. 28.) <p>[선거구획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국회의원 253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함. -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현재로 함. - (인구편차 허용범위) 하나의 지역선거구의 인구수는 140,000명 이상 280,000명 이하로 함. -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함. -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시·도</th> <th>정수</th> </tr> </thead> <tbody> <tr><td>서울</td><td>49</td></tr> <tr><td>부산</td><td>18</td></tr> <tr><td>대구</td><td>12</td></tr> <tr><td>인천</td><td>13</td></tr> <tr><td>광주</td><td>8</td></tr> <tr><td>대전</td><td>7</td></tr> <tr><td>울산</td><td>6</td></tr> <tr><td>세종</td><td>1</td></tr> <tr><td>경기</td><td>60</td></tr> <tr><td>강원</td><td>8</td></tr> <tr><td>충북</td><td>8</td></tr> <tr><td>충남</td><td>11</td></tr> <tr><td>전북</td><td>10</td></tr> <tr><td>전남</td><td>10</td></tr> <tr><td>경북</td><td>13</td></tr> <tr><td>경남</td><td>16</td></tr> <tr><td>제주</td><td>3</td></tr> </tbody> </table>	시·도	정수	서울	49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1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시·도	정수																																							
서울	49																																							
부산	18																																							
대구	12																																							
인천	13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1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																																							

구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제19대 ('12)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46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11. 9. 6. 구성)에서는 하한 104,342명 (남해군하동군), 상한 304,107명(강서구갑)을 기준 (인구편차 2.9:1)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의장에게 제출('11. 11. 25.)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를선거구(부산) ③ 서구강화군을선거구(인천) ④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경북)
제18대 ('08)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45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획정위원회('08. 1. 18. 구성)에서는 2개의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08. 2. 15.)하였고, 하한 104,000명, 상한 312,00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획정(인구편차 3.0:1)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를선거구(부산) ③ 서구강화군을선거구(인천)
제17대 ('04)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43 (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가 지역구 획정에 관하여 인구하한 10만 5000명, 인구상한 31만 5000명의 기준을 설정하여 획정위원회에 통지 • 획정위원회에서는 하한 105,892명, 상한 295,916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획정(인구편차 2.8:1)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을선거구(부산) ③ 서구강화군을선거구(인천)
제16대 ('00)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27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하한 9만, 상한 35만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을선거구(부산) ③ 서구·강화군을선거구(인천)
제15대 ('96)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53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하한 7.5만, 상한 30만을 기준으로 통·폐합 및 분구하고,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7.5만 이상~30만 미만 : 1개 선거구 - 인구 30만 이상~60만 미만 : 2개 선거구 - 인구 60만 이상 : 3개 선거구 ※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둠.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해운대구·기장군을선거구(부산) ② 북구·강서구을선거구(부산) ③ 계양구·강화군을선거구(인천) ④ 목포시·신안군을선거구(전남)

구분	국회구성	선거구제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구획정기준
제14대 ('92)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37 (62)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 약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13대 ('88)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224 (75)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 ※ 약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12대 ('85)	단원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84 (92)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선 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11대 ('81)	단원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84 (92)	·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선 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10대 ('78)	단원제	중선거구제 유 정 회	154 (77)	·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획정하되, 선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9대 ('73)	단원제	중선거구제 유 정 회	146 (73)	· 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의 조건을 고려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획정하되, 선거구당 2인 선출 ※ 약 인구 40만명당 2인 선출
제8대 ('71)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53 (51)	·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7대 ('67)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31 (44)	·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6대 ('63)	단원제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131 (44)	· 인구 20만명당 1인 선출
제5대 ('60)	양원제	소선거구제 (민 233인) (참 58인)	233	·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민의원선거의 경우 4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일)
제4대 ('58)	단원제	소선거구제	233	· 인구 15만 초과시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 선거구를 증설하되 인구가 비등하도록 획정
제3대 ('54)	단원제	소선거구제	203	· 인구 15만 초과시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의 선거구 증설 ※ 15만 미만 : 1개, 15만~25만 : 2개, 25만~35만 : 3개, 35만~45만 : 4개
제2대 ('50)	단원제	소선거구제	210	· 인구 15만 초과시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의 선거구 증설 ※ 15만 미만 : 1개, 15만~25만 : 2개, 25만~35만 : 3개, 35만~45만 : 4개
제1대 ('48)	단원제	소선거구제	200	· 인구 15만 초과시 그 초과하는 인구 10만마다 1개의 선거구 증설 ※ 15만 미만 : 1개, 15만~25만 : 2개, 25만~35만 : 3개, 35만~45만 : 4개

인쇄일 2020년 11월 05일
발행일 2020년 11월 05일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
☎ 02)503-2190
인쇄 티엔엘커뮤니케이션

